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5. 3.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발 간 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투자사업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발, 공공투자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월 KDI 조직으로 출범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2014년에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이후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약 900여 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 시작한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40여 건을 수행하였고, 공공투자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약 151여 건을 수행하여 2014년 현재 약 155조원의 재정 절감 및 총 99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적 조사과정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그 조사 방법론과 규율을 공공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장시켜 우리나라의 공공투자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 추진된 주요 업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적격성조사, 실시협약, 국제협력,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업무실적과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당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문장(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세금의 값어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데 진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의 개발과 확립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똑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믿음직한 수문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 강 수

목 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 I 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1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1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2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4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8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8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12
3. 수행절차	14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8
1. 총사업비 관리제도	18
2. 타당성재조사 제도	22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7
1. 도입배경	27
2. 조세지출의 개요	28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29
4. 추진체계	34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35
제 I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3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37
1. 1999~2014년 수행 실적	37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44
제2절 타당성재조사	51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51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54
제IV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60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61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61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64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69
4. 세부 추진절차	70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80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0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81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81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82
5. 자금재조달	83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83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84
제V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85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85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5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6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8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3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6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00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0
2. 타당성분석 검토(BTO)	100

3. 타당성분석 검토(BTL)	101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101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03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103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103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04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04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104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105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106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07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107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07
제VI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09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09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09
2. 추진 근거	111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12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112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13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13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114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15
1. 조사의 수행절차	115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16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17
1. 2011~2014년 수행 실적	117
2. 2014년도 수행 실적	120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22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22
1. 지침 연구	123
2. 일반 연구	126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129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30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130
2. 국제협력 업무	130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131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 I 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39
<예비타당성조사>	
1. 국가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39
2. 국립아트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40
3.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41
4.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142
5.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3
6. 서울대병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44
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5
8.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46
9. 용사의 집 재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47
10.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48
11.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49
12.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0
13.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1
14.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152

15.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예비타당성조사	153
16.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4
1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5
1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6
19.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7
20.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58
21.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9
22. 상무지구~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0
23.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1
24. 서울외곽순환도로(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2
25.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3
26.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64
27. 광양(I)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5
28.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6
29.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Tetra) 예비타당성조사	167
30.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Wibro) 예비타당성조사	168
3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9
3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0
3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1
34. 원주~강릉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2
35.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 예비타당성조사	173
36.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5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6
3. 주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7
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8
5.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9
6.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0
7.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1

8.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2
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3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4

제2절 타당성 재조사	185
-------------------	-----

< 타당성 재조사 >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5
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6
3.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7
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8
5.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9
6.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0
7.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1
8.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2
9.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193
10. 광주~완도1단계(광주~해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4
11.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5
1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덕천동~아시아드) 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6
13.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7
14. 장고항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8
1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과주) 건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199
16.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00
17.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01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2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3
3. 강남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4
4. 광진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5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학습모듈 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6
6. 자활연수원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7

7.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8
8.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9
9.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0
10. 행정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1
11. 오송~청주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2

< 수요예측재조사 >

1. 국도79호선(군북~가야)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3
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4
3.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5
4.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6
5.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7
6. 제주도 구국도대체육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218
7. 국도21호선(인계~쌍치)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219

제II 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223
--------------------------------	-----

< BTO(타당성분석 검토) >

1.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3
2. K-POP 공연장(전용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4

< BTO (적격성조사) >

1.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25
2.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26

< BTO (민간제안서검토) >

1.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27
2. 안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28
3. 거가대교 관광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29
4. 포항시 남구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30

5. 중량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31
6. 김해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32

<BTL (타당성분석 검토)>

1. 김포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3
2. 시흥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4
3. 부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5
4. 국방부 관사(양주, 파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6
5. 국방부 관사(여주, 원주, 성남)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	237
6. 국립대학교 기숙사(강원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8
7. 국립대학교 기숙사(교통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39
8. 국립대학교 기숙사(목포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40
9. 국립대학교 기숙사(제주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41
10. 국립대학교 기숙사(부산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	242
11. 국립대학교 기숙사(한밭대 외 1)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	243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	244

<수요예측재조사>

1.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45
2. 수도권북부(파주)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46

<적격성재조사>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247
2.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248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차 제안공고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249
2.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250
3. 부산광역시(수민분구)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251
4.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252
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전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253

6.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I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54
---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

1.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55
2.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56
3.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57
4.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58
5.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59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60
2.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61
3. 부산항 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262
4.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263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67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69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71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73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275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277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279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281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83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285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287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288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291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91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292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293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295
제2절 국제협력	297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97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98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99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301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303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304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305
참고문헌	306

표 목 차

<표 I -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
<표 I -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5
<표 I -3>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6
<표 II-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7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11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7
<표 II-4> 총사업비관리제도 연혁	20
<표 II-5> 조세지출현황	27
<표 II-6>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3~2015)	29
<표 II-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29
<표 II-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34
<표 II-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35
<표 II-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36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38
<표 III-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38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39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0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41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42
<표 III-7>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3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3
<표 III-9>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44
<표 III-10>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46
<표 III-11>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6
<표 III-12>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47

<표 III-13>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47
<표 III-14>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	48
<표 III-15>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48
<표 III-16>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49
<표 III-17>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9
<표 III-18>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50
<표 III-1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51
<표 III-2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52
<표 III-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52
<표 III-22>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53
<표 III-23>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53
<표 III-2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54
<표 III-25>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54
<표 III-26>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5
<표 III-27>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56
<표 III-28>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56
<표 III-29>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6
<표 III-30>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57
<표 III-31>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 ·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57
<표 III-32>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57
<표 III-33>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8
<표 III-34>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9
<표 IV-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60
<표 IV-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63
<표 IV-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64
<표 IV-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66
<표 IV-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67
<표 IV-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69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6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6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7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8
<표 V-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0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1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2
<표 V-8>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3
<표 V-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4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5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6
<표 V-12>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표 V-1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8
<표 V-15>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9
<표 V-16>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9
<표 V-17> 2014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0
<표 V-18> 2014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	101
<표 V-19> 2014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101
<표 V-20>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102
<표 V-21>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03
<표 V-22> 2014년도 BTO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03
<표 V-23>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04
<표 V-24> 2014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4
<표 V-25>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5
<표 V-26> 2014년도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06
<표 V-27> 2014년도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수행 실적	106
<표 V-28> 2014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수행 실적	107
<표 V-29> 2014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107
<표 V-30> 2014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08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10

<표 VI-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114
<표 VI-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116
<표 VI-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수행 사업 수	118
<표 VI-5> 2011~2014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18
<표 VI-6> 2011~2014년 부문별 · 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19
<표 VI-7> 2011~2014년 부문별 · 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119
<표 VI-8>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국내사업)	120
<표 VI-9>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20
<표 VI-10> 2014년 부문별 · 연도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21
<표 VI-11> 2014년 부문별 · 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21
<표 VI-12> 2014년 부문별 · 연도별 타당성 분석 종합 결과	121
<표 VII-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2
<표 VII-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23
<표 VII-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24
<표 VII-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25
<표 VII-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25
<표 VII-6>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26
<표 VII-7>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27
<표 VI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28
<표 VII-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9
<표 VII-10>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9
<표 VII-11>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수행 실적	130
<표 VII-12> 201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130
<표 VII-13>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132
<표 VII-14> 시스템 관리내역	133
<표 VII-15>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	133

그림 목차

[그림 I -1]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5
[그림 II-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14
[그림 II-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16
[그림 II-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26
[그림 II-4]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36
[그림 IV-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68
[그림 IV-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70
[그림 IV-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71
[그림 IV-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75
[그림 IV-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76
[그림 IV-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	77
[그림 IV-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78
[그림 IV-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79
[그림 V-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89
[그림 V-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89
[그림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115

제 1 부

주요 업무 및 실적

- 제 I 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 제 I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 제 I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 제 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 제 VI 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 제 VII 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 I 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등)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관리하고 관련 제도 및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공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자금제조달 검토, 협상지원 및 분쟁조정 검토 등 주무부처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 사업추진의 세부요령 및 정책개발 연구 등을 통하여 사업 주무부처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1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1) 본 절은 한국개발연구원(2012), 『KDI 2012 연차보고서』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내용을 참조함.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조사 방법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제도 및 정책관련 포럼과 대내외 홍보·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전단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가와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1월 KDI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KDI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됨과 동시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1998년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과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 이후 1999년 4월 국토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총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 (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 대책 수립 ·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 ·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 4월, 초대 이규방 소장 취임 (초대, 제2대 연임)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당성조사 법제화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1월, 초대 김재형 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민간투자지원단 구성 (관계부처, 민간투자지원센터, 금융기관, 민간업계, 학계 등)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타당성재검증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마련 (민간투자법 개정)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제2대 심상달 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제3대 김홍수 소장 취임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 사업 착수(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PPP(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및 절차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통합(법률 제7386호)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1월,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1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추가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12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국제회의 개최 (IMF, World Bank, ADB, Partnerships UK)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제2대 김재형 소장 취임(제3대, 제4대 연임)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법정 제도화 10월, 200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12월, 자금제조달 검토 도입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2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명칭 변경)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아시아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식공유 국제회의 (ADB, ADBI, WBI)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8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회의 (IMF, World Bank)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제5대 박현 소장 취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제6대 김강수 소장 취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관한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5년 신규건 부터 조사 수행 예정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1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12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및 동 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근거하여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근거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총괄 지원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 3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실 체계와 별도로 소장실과 2013년 3월 1일부로 신설된 법률팀이 있다.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은 별도의 세부 팀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실별 세부 팀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투자평가실은 예비타당성조사1팀, 예비타당성조사2팀, 타당성재조사팀, 민간투자지원실은 민자제도팀, 민자사업팀, 민자금융팀, 공공투자정책실은 공공투자정책팀, 공공기관사업팀, 조세지출평가팀의 세부 팀을 갖추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도 및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 [그림 I-1], <표 I-3>과 같다.

[그림 1-1]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주: 2014년 8월 12일부로 국제협력팀이 폐지되고, 조세지출평가팀이 신설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총원 96명으로 경제, 경영, 회계, 통계 및 공학 분야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전문분야	인원 수	전문분야	인원 수
경제/경영/회계/통계	45명	법률	7명
도시계획/교통/지리/부동산	20명	기타(관광학 등)	1명
토목/건축/환경공학 등	15명	행정원	5명
국제관계/국제협력	3명	합계	96명

주: 2015년 1월 기준임.

〈표 1-3〉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소장	소장실	· 공공투자사업(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법률팀	·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관련 법률연구 및 자문 ·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쟁점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업무
재정투자평가실	예비타당성조사 1팀	· 교통부문 등 정형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예비타당성조사 2팀	· 건축·정보화·문화·R&D부문 등 비정형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타당성재조사팀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및 관리
민간투자지원실	민자제도팀	· 민간제안 검토 및 적격성조사(타당성 분석) 수행·관리 및 관련 방법론 연구 · 민간투자사업 수행과정 중 제기되는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
	민자사업팀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공고문 검토 및 작성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 및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 기타업무
	민자금융팀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제조달 검토 등 금융업무 지원 및 방법론 연구
공공투자정책실	공공투자정책팀	·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조사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및 관리 · 사후평가 등 공공투자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DB구축·관리 · 공공투자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분석
	공공기관사업팀	·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조세지출평가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및 관리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지침작성, 자료 축적 및 DB구축

제II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투자평가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②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재조사”의 체계로 구성된다.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수행 실적을 조사완료 사업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1999	20				
2000	30				
2001	41				
2002	30				
2003	32		6		
2004	55		6		
2005	30		9		
2006	52		19		
2007	46	4	14		1
2008	38	7	21		1
2009	63	9	31		3
2010	48	6	31	3	1
2011	43	2	15	5	0
2012	35	6	11	4	1
2013	13	4	9	6	3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2014	36	10	17	11	7
합계	612	48	189	29	17

- 주: 1) 각 연도별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도입 초기 기획예산처 직접 발주 수행 건수를 포함, KISTEP에서 수행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한 실적임.
 3)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총 53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및 의의²⁾

1) 면밀한 사전검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전검토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는 그만큼의 예산 낭비를 의미한다. 설사 다소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 재정은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사업

2) 한국개발연구원(1999),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의 내용을 참조함.

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의 중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사전검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 혹은 예상치 못한 현장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의 폭은 훨씬 작을 것이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사전검토의 결여는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중도에 취소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혹은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설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안 건설된 시설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의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그 당시까지의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예비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적 검토 이전에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해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 이전 단계에서 전체 및 사업부문별 재정운용과 상위계획, 기존의 추진사업의 큰 틀 속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 시기, 대안에 대한 검토, 자원조달계획의 실

현성 및 구체성, 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 자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999년 3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순서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대상 사업간의 우선순위가 비교 가능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통계·정보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개발된 타당성 평가모형이나 평가기준, 각종 계수의 기준치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필요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즉 보다 폭 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사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타당성조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법적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 추진경위

(舊)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각 단계마다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품질의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9년도 「예산회계법 시행령」법·제도 정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연도	주요 추진경위
1998년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1999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 ·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2000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2001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2004년	· 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착수(3개 사업)
2007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 사업) · 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법정 제도화
2008년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0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 복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 의무화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명칭 변경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가.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³⁾

1)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3) 기획재정부(210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내용을 참조함.

-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나.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앞서 살펴본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외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장기 계획 중 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들 수 있다.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3)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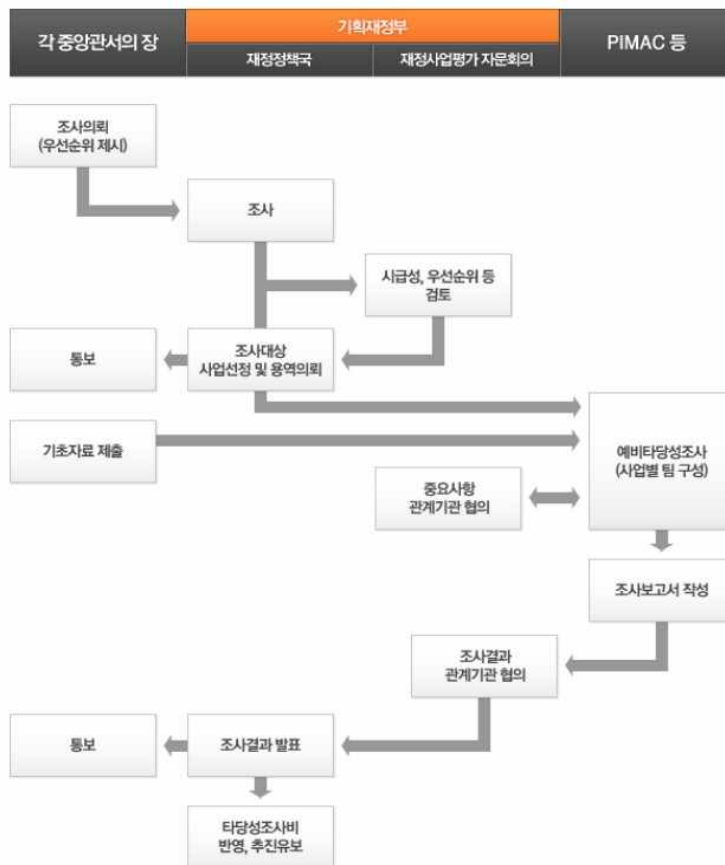
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수행절차

가.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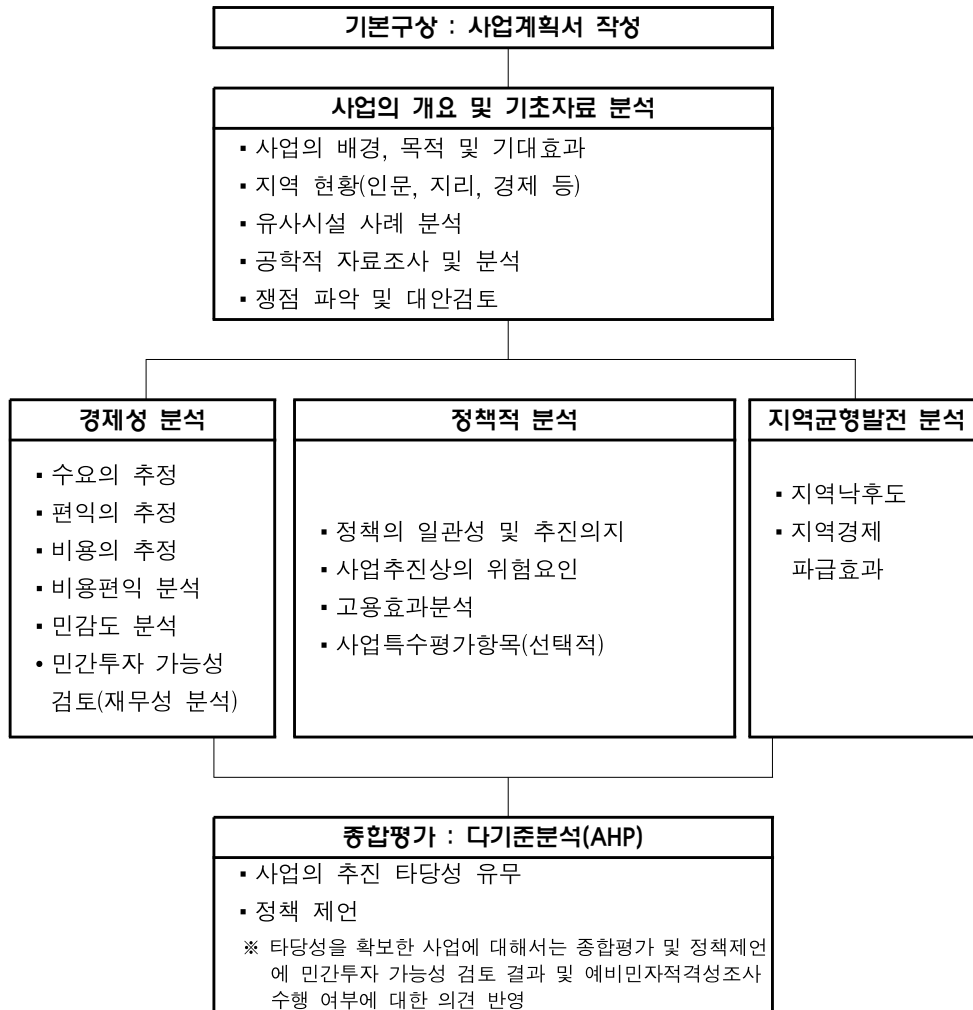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하며,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의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정책적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토대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기준 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⁴⁾.

4)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을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11-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 주: 1)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나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대상사업, 수행절차 및 체계 등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구분	개요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조사 수행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정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전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운영
대상사업	<input type="checkbox"/> 대 상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상호연계성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면 제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규모 검토
수행절차 및 체계	<input type="checkbox"/> 수 행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장관 검토,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획재정부장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input type="checkbox"/> 조사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 편익, 비용 등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B/C)수행 (필요시 재무성분석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장래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나눈 비율 · 정책적 분석: 타당성평가의 중요항목 정성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평가 항목 등 · 종합평가(AHP):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HP: 분석요소간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정량적 결론 도출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공사완료단계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변경도 총사업비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⁵⁾

198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94년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에는 총사업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연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추진과정 중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0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국가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5) 한국개발연구원(2012),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SOC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은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재검증 제도는 199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당시 타당성재검증의 수행시점을 실시설계단계로 한정하고,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가할 때에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사업비 증가 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당성재검증을 하지 않는 등 타당성재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99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타당성재검증 대상 사업의 기준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건축사업은 기준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1997년, 1998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타당성재검증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타당성재검증 수행규정의 구속력이 없어 타당성재검증이 선언적인 효력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99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등 공공투자사업의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타당성재검증 규정을 다시 명문화하였으며, 대상은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총사업비 대비 20%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총사업비 변경의 기준 설정 시 기존의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별로 타당성재검증 대상과 수행주체, 분석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시공단계에서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007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기존 타당성재검증의 명칭이 타당성재조사로 변경되었으며,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2009.3.18)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중앙관서의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던 수행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임하였다. 또한 제4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간이타당성재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표 II-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1989	• 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1994	•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개시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수립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기준 수립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주요투자사업과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가 특히 필요한 사업) • 실시설계단계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조사설계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함.
1995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준 변경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1996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준 세분화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1997	•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대상으로 포함
1999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1	•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수준을 초과하여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수행함.
2002	•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증 수행 (KDI, 2003)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요건 추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2004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적용 •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단계
2005	•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시공단계 등 각 사업추진단계별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타당성 재검증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일반지침, 부문별지침) 제정

〈표 II-4〉의 계속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분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KDI, 2006) • 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 중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수행(KDI, 2006)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근거법령이 「국가재정법」으로 수정됨(「예산회계법」이 폐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조문화 • 타당성재검증, 수요예측재검증 명칭변경 →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 타당성재조사 수행 요건 신설: 국회의결이 있을 경우 • 수요예측재조사 수행대상 확대: 모든 SOC 분야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조정(토목사업: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 100억원 이상)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이 폐지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요건 변경 •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설됨. • 간이 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타당성재조사 미시행 사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조정(토목 및 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간이 타당성 재조사 외 4건 수행(KDI, 2010) • 정보화 부문 세부조정기준 수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 추가 신설: 예타면제사업,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분야의 총사업비 정의 추가: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비용 포함 • 수요예측재조사 기준시점 변경: 이전단계 예측치 → 최초 사업추진단계 예측치 • 기타부대비 항목 변경: 시설부대경비 → 공사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가.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요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3.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물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서는 동 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타당성재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에서는 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에서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 변경내역 및 타당성재조사의 수행근거를 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의 쟁점 파악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과 관련된 쟁점,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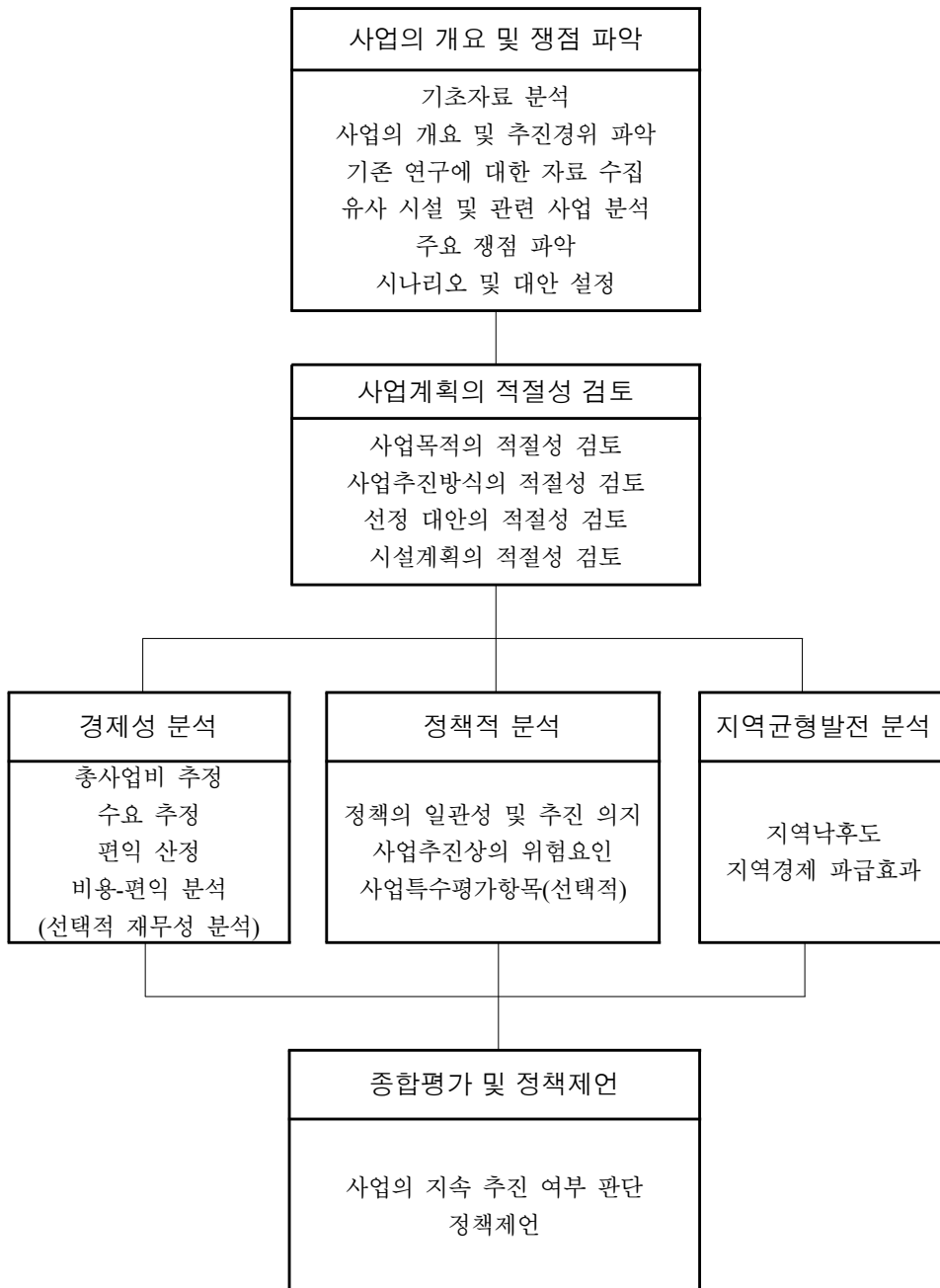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선정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총사업비는 공중별로 물량 및 적정 단가 산정을 통해 추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단계의 타당성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착수 전년도를 분석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할인율 및 분석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한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되,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의 분석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가에는 사업추진 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을 산정하고 바람직한 사업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11-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요인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편, 재정여력은 재정지출 억제나 세입증대를 통해서만 확충이 가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출 억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입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8년 이후 약 3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유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5〉 조세지출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2000	13.3	92.9	12.5
2001	13.7	95.8	12.5
2002	14.7	104.0	12.4
2003	17.5	114.7	13.2
2004	18.3	117.8	13.4
2005	20.0	127.5	13.6
2006	21.3	138.0	13.4
2007	23.0	161.5	12.5
2008	28.8	167.3	14.7
2009	31.1	164.5	15.8
2010	30.0	177.7	14.4
2011	29.6	192.4	13.3
2012	30.1	203.0	12.9
2013	33.8	201.9	14.3
2014(잠정)	33.0	216.5	13.2
2015(전망)	33.0	221.5	13.0

주: 1)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00~2013년 수치는 실적기준, 2014년은 잠정치, 2015년은 전망치

3) 2012년 이후로는 신규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를 위하여 2011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조세지출의 개요

조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세입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인 지출행위로 간주되는 정부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국세감면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단, 중과제도 혹은 납세자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와 국가세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에서 제외된다.

조세지출은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은 영구적인 세부담 경감(혹은 세수 감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감면은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으로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직전, 당해 및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이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였다.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33조 8,350억원, 2014년 32조 9,810억원(잠정), 2015년 33조 548억원(전망)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33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조세지출의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보험료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한 입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의 감소 등 영향으로 2013년 대비 국세감면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6〉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3~2015)

(단위: 억원, %)

구분	2013년 (실적)		2014년 (잡정)		2015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 국세감면액(A)	338,350	100.0	329,810	100.0	330,548	100.0
조특법상조세지출	184,392	54.5	175,732	53.3	186,049	56.0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50,173	44.4	151,591	46.0	144,678	43.8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3,786	1.1	2,488	0.7	822	0.2
• 국세수입총액(B)	2,019,065		2,164,529		2,215,222	
• 국세감면율(A/(A+B))	14.3		13.2		13.0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4.7		14.4	

주: 1)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로부터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된 농·수산물 의 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국세감면규모 변동효과가 포함되었음.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단, 직전 3년 중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감면율이 아닌 법정한도로 계산하고 항목 추가 등 국세감면액 변동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2014.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평가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p>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p>

조항	내용
	<p>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p> <p>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전문개정 2010.1.1.]</p>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p>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p>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조항	내용
	<p>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p> <p>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p> <p>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p>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p>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p> <p>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p>

조항	내용
	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	<p>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p>[본조신설 2014.9.11.]</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신규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하며,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둘째,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⁶⁾로서 기존 조세특례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개별 세법의 고세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지난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하였고 각 부처 및

6)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성·시급성 등이 높은 2건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로서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연번	사업명	내용	주무부처	평가담당기관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특례 	금융위원회	KDI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상생결제시스템*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KIPF

4. 추진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작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연구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1~2명의 연구자 및 다수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매년 1월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6~7월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 수정이 이루어지며 8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서는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9월에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기재부에서는 예타 신청서

검토를 통해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10월초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표 II-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기타
1~5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조사수행 기간: 5개월
6월	평가결과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7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9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신청서 검토 및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 선정	
10월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 개최, 다음연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정	
11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 - 기관선정, TF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12월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은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각 항목별 분석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정책성 분석: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분석
- 경제성 분석: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형평성 분석: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종합평가: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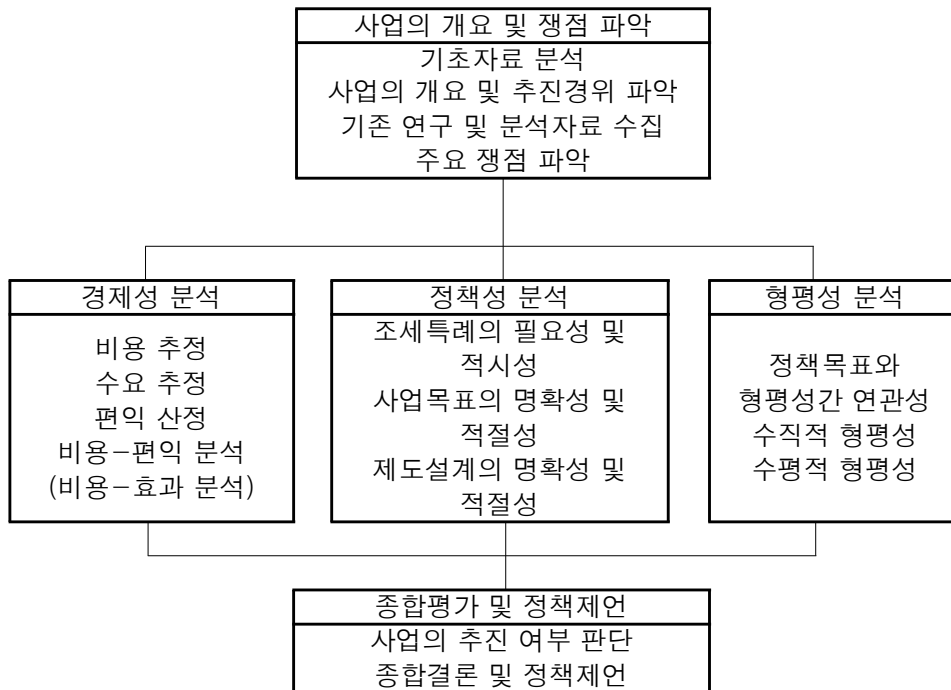
〈표 II-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분석 유형	경제성 항목	정책성 항목	형평성 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14.11

- 정책제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제언의 내용: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

[그림 II-4]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1999~2014년까지 총 612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제외)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사업이 각각 220건 및 109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반 이상(약 54%)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건축 사업을 포함한 기타 비정형 사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표 Ⅲ-1 참조).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의 수행을 기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2007~2014년까지 총 48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부문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5	-	1	2	1	4	13
2014	8	4	2	12	2	8	36
계	220	109	39	65	49	130	612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건축부문은 2011년부터 별도 구분되며 기존 사업은 기타 실적으로 구분됨.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표 III-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2	-	-	-	-	2	4
2008	5	-	-	-	-	2	7
2009	3	-	1	-	-	5	9
2010	2	-	-	-	2	2	6
2011	-	-	1	-	-	1	2
2012	2	1	-	1	1	1	6
2013	1	-	1	1	-	1	4
2014	2	-	-	7	1	-	10
계	17	1	3	9	4	14	48

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연구(사업계획 검토,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등)를 수행한 모든 사업을 포함한 수치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1999~201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전체 총사업비 318.6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되는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는 해마다 약 8~46조원 수준이며,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체의 약 62.7% 정도를 차지(예비타당성조사 기준)하고 있다.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합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건축	수자원 (댐)	기타	소계		
1999	14.9	2.0	0.1	0.3	0.6	0.7	18.7	-	18.7
2000	4.9	4.6	0.8	1.5	0.0	0.5	12.4	-	12.4
2001	6.1	12.1	0.1	1.4	-	0.1	19.7	-	19.7
2002	5.9	6.2	0.3	0.5	1.1	0.7	14.7	-	14.7
2003	5.3	5.4	1.9	1.0	1.3	0.8	15.7	-	15.7
2004	7.1	6.4	1.0	1.0	0.2	2.5	18.3	-	18.3
2005	3.5	4.6	0.4	1.4	0.4	1.7	12.1	-	12.1
2006	7.7	7.3	1.3	0.6	0.1	1.1	18.1	-	18.1
2007	6.8	4.2	2.0	0.2	0.1	7.6	20.9	1.0	21.9
2008	2.6	1.1	1.0	0.3	0.4	5.0	10.4	0.3	10.7
2009	13.1	7.7	0.4	0.3	3.4	9.5	34.4	11.2	45.6
2010	5.7	17.9	0.5	0.1	0.5	9.3	34	5.3	39.3
2011	1.3	6.1	0.6	1.9	2.0	3.7	15.6	0.7	16.3
2012	1.8	10.3	2.1	1.1	0.8	1.7	17.8	4.5	22.3
2013	0.8	-	0.1	0.1	0.4	1.3	2.7	5.8	8.5
2014	2.8	13.7	0.6	2.0	0.5	3.1	22.6	1.7	24.3
계	90.3	109.6	13.2	13.7	11.8	49.3	288.1	30.5	318.6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의 사업계획(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기타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조사를 포함함.

사업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업이 411건으로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건설교통부	철도청 ¹⁾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²⁾	과학기술부	교육부			
1999	12	1	2	1	-	-	-	3	1	-
2000	12	7	5	1	-	1	-	2	-	2
2001	27	8	2	-	-	-	-	2	-	2
2002	19	4	3	2	-	-	-	2	-	-
2003	17	4	7	-	-	-	1	1	-	2
2004	26	1	4	-	9	1	-	2	2	10
2005	20	-	3	-	-	-	2	-	2	3
2006	33	-	10	-	2	2	-	-	1	4
2007	25	-	2	2	1	-	1	1	1	13
2008	21			7		1		1	1	7
2009	42			8		3		2	3	5
2010	26			9		5		2	2	4
2011	19			5		2		2	1	14
2012	22			2		4		2	2	3
2013	10			1		1		-	-	1
2014	12		5	2		3		4	1	9
계	411 (67.2%)			52 (8.5%)		27 (4.4%)		26 (4.2%)	17 (2.8%)	79 (12.9%)

주: 1) 2005년 1월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
 2) 2008년도 정부조직 개편 이전 재정경제부 소관 사업 분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으며,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이관받음.
 3)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타로 분류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율($B/C \geq 1$ 비율)을 살펴보면 약 4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게 확보(66.7%)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문 사업은 39~53%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B/C≥1 (%)
1999	36.4	50.0	100.0	25.0	100.0	100.0	45.0
2000	45.5	71.4	80.0	0.0	100.0	50.0	56.7
2001	30.0	50.0	0.0	20.0	-	0.0	34.1
2002	33.3	87.5	50.0	0.0	0.0	75.0	46.7
2003	50.0	71.4	100.0	0.0	60.0	50.0	53.1
2004	50.0	53.8	100.0	0.0	33.3	58.3	50.9
2005	45.5	33.3	100.0	0.0	66.7	71.4	53.3
2006	48.1	20.0	40.0	60.0	0.0	75.0	44.2
2007	53.3	0.0	0.0	50.0	100.0	28.6	43.5
2008	41.7	50.0	75.0	66.7	50.0	26.7	42.1
2009	27.3	20.0	50.0	50.0	66.7	45.0	41.3
2010	42.9	21.4	100.0	100.0	100.0	54.5	47.9
2011	83.3	0.0	50.0	54.5	20.0	42.9	44.2
2012	85.7	0.0	60.0	16.7	60.0	80.0	48.6
2013	60.0	0.0	100.0	0.0	100.0	75.0	61.5
2014	50.0	50.0	50.0	83.3	50.0	50.0	61.1
사업건수	220	109	39	65	49	130	612
B/C≥1 건수	101	43	26	27	26	66	289
B/C≥1 (%)	45.9	39.4	66.7	41.5	53.1	50.8	47.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은 평균 6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부문(76.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부문이 56.0%로 가장 낮은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타당성 확보율
1999	45.5	50.0	100.0	100.0	100.0	100.0	65.0
2000	27.3	71.4	80.0	0.0	100.0	75.0	53.3
2001	30.0	35.7	100.0	40.0	-	0.0	34.1
2002	33.3	75.0	50.0	0.0	0.0	75.0	43.3
2003	70.0	71.4	100.0	0.0	60.0	50.0	59.4
2004	87.5	53.8	100.0	100.0	66.7	66.7	74.5
2005	36.4	83.3	100.0	100.0	66.7	71.4	63.3
2006	63.0	40.0	40.0	40.0	100.0	50.0	53.8
2007	63.3	20.0	100.0	50.0	100.0	42.9	56.5
2008	75.0	100.0	100.0	100.0	50.0	46.7	68.4
2009	50.0	80.0	50.0	0.0	91.7	80.0	68.3
2010	71.4	64.3	100.0	100.0	100.0	77.3	75.0
2011	83.3	50.0	50.0	90.0	80.0	71.4	74.4
2012	100.0	28.6	80.0	42.9	80.0	100.0	69.4
2013	80.0	-	100.0	50.0	100.0	75.0	76.9
2014	62.5	75.0	50.0	91.7	50.0	75.0	75.0
사업건수	220	109	39	65	49	130	612
통과건수	131	61	30	40	35	90	387
타당성 확보율(%)	59.5	56.0	76.9	61.5	71.4	69.2	63.2

주: 1999~2002년 조사결과는 (舊)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발표 기준이며,
2003년 이후 조사결과는 AHP≥0.5 기준임.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하여 총 668건의 토목, 건축, 정보화, 기타 재정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약 12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분석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정 사업규모 및 효율적 대안 등의 제시와 이의 분석을 통해 약 1조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7〉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¹⁾	사업수 (건)	전체 사업비 ²⁾	총사업비 절감액 ⁵⁾
1999	20	271,559	197,956
2000	30	152,439	57,753
2001	41	198,401	105,823
2002	30	162,059	73,120
2003	32	176,278	39,885
2004	55	185,740	52,697
2005	30	123,561	39,569
2006	52	193,531	101,401
2007	46	189,476	82,947
2008	38	90,471	39,685
2009	63	303,290	91,362
2010	48	279,831	112,091
2011 ³⁾	99	228,262	107,606
2012	35	206,434	75,150
2013	13	24,360	2,099
2014	36	127,261	35,627
총합계 ⁴⁾	668	2,912,953	1,214,771

주: 1) AHP를 수행하지 않았던 1999년~2002년간 사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사업추진, 중장기 검토)를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분석된 제주정 사업비 기준이며, 국고 및 지방비 등이 포함됨.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56건)을 포함한 수치임.

4)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AHP<0.5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합계임.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¹⁾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건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적정성	절감액
		총사업비 (A)	검토 총사업비 (B)	
		(A)	(B)	(A-B)
2007	4	9,790	9,705	85
2008	7	3,167	2,723	444
2009	9	111,521	123,200	- 11,679
2010	6	52,969	44,925	8,044
2011	2	7,467	5,275	2,192
2012	6	45,080	35,650	9,430
2013	4	57,822	56,763	1,059
2014	10	17,176	13,485	3,691
총합계 ²⁾	48	304,992	291,726	13,266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간이예비타당성조사의 변경된 명칭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도에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36건으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사업계획이 22조 6,32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2조 7,261억원으로 조사에 의해 약 9조 9,059억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9〉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1	국가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	468	480	12	1.00	0.512
2	국립 아트센터 건립	건축	974	1,009	35	1.06	0.501
3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	건축	1,359	1,165	-194	1.17	0.623
4	부산공동 어시장 현대화	건축	3,035	2,751	-284	2.37	0.622
5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건축	3,674	6,294	2,620	1.03	0.516
6	서울대병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	건축	1,174	975	-199	0.56	0.227
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사업	건축	2,677	2,844	167	0.94	0.537
8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건축	1,264	1,229	-35	1.00	0.514
9	용사의 집 재건립	건축	1,297	1,936	639	1.09	0.551
10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건축	1,027	989	-38	1.21	0.644
11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건축	800	884	84	1.29	0.697
12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	건축	2,091	2,805	714	1.98	0.654
13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기타	3,045	853	-2,192	-	0.617
14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1단계)	기타	699	634	-65	1.99	0.770
15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기타	500	508	8	0.88	0.605
16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기타	7,345	7,345	0	0.27	0.539
1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타	2,396	2,952	556	-	0.512
1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기타	2,516	2,211	-305	2.45	0.680
19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도로	1,419	1,164	-255	1.21	0.609
20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	도로	2,820	2,976	156	0.43	0.293
21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	680	954	274	1.54	0.672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22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사업	도로	1,956	1,645	-311	1.10	0.567
23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 사업	도로	10,777	9,190	-1,587	0.92	0.586
24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도로	6,176	6,612	436	0.80	0.335
25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	도로	3,284	3,264	-20	1.30	0.605
26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	746	710	-36	0.94	0.463
27	광양(I)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수자원	2,031	1,684	-347	0.70	0.354
28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자원	2,757	2,522	-235	1.28	0.579
29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Tetra)	정보화	7,301	7,402	101	0.77	0.295
30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Wibro)	정보화	6,590	7,290	700	0.54	0.230
31	2018평창동계 올림픽 지원 기존선 고속 화사업	철도	1,431	1,539	108	1.42	0.639
3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철도	2,277	2,789	512	0.95	0.505
3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철도	130,638	30,639	-99,999	1.33	0.595
34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망 구축사업	철도	2,998	4,626	1,628	0.11	0.413
35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	항만	5,264	3,352	-1,912	0.08	0.354
36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도 투기장(2구역) 호안 축조사업	항만	834	1,039	205	1.07	0.568
합계			226,320	127,261	-99,059	-	-

주: 1) 조사결과는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Tetra와 Wibro를 별건의 사업으로 구분함.

3) “제천~평창 국지도 개량사업”,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지원사업” 등 3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2014년 조사 진행 중 철회됨.

부문별 수행 건수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은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8건, 철도부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 4건, 항만부문은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 등 2건, 문화·관광·건축은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 등 12건, 수자원부문은 “광양(I)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등 2건, 기타부문(기타 및 정보화)은 8건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철도부문의 총사업비가 3조 9,593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3,535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고, 부문별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철도부문이 9,898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합계	
수행 건수		8	4	2	12	2	8	36	
총사업비	사업계획(A)	소계	27,858	137,344	6,098	19,840	4,788	30,392	226,320
		평균	3,482	34,336	3,049	1,653	2,394	3,799	6,287
	예타(B)	소계	26,515	39,593	4,391	23,361	4,206	29,195	127,261
		평균	3,314	9,898	2,196	1,947	2,103	3,649	3,535
	차액(B-A)	소계	-1,343	-97,751	-1,707	3,521	-582	-1,197	-99,059
		평균	-168	-24,438	-854	293	-291	-150	-2,752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이 12건으로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약 33% 가량을 차지한다. 총사업비 규모를 보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조 7,885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참조).

사업이 수행된 권역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영남권 사업이 전체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조 1,659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참조).

<표 III-11>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타	계	
수행 건수		12	5	4	3	2	2	2	6	36	
총사업비	사업계획(A)	소계	167,650	10,992	3,718	7,525	8,764	5,441	13,891	8,339	226,320
		평균	13,971	2,198	930	2,508	4,382	2,721	6,946	1,390	6,287
	예타(B)	소계	67,885	8,815	4,076	10,113	8,509	3,805	14,692	9,366	127,261
		평균	5,657	1,763	1,019	3,371	4,255	1,903	7,346	1,561	3,535
	차액(B-A)	소계	-99,765	-2,177	358	2,588	-255	-1,636	801	1,027	-99,059
		평균	-8,314	-435	90	863	-128	-818	401	171	-2,752

주: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나뉘었음.

〈표 III-12〉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	합계	
수행 건수		8	4	2	6	9	7	36	
총 사 업 비	사업계획(A)	소계	148,253	7,625	5,497	21,754	15,214	27,977	226,320
		평균	18,532	1,906	2,749	3,626	1,690	3,997	6,287
	예타(B)	소계	51,659	9,330	5,820	17,494	15,724	27,234	127,261
		평균	6,457	2,333	2,910	2,916	1,747	3,891	3,535

주: 기타 권역은 기타 재정사업과 정보화, 해외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B/C \geq 1$)의 비율은 약 61.1%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부문에서 각각 50%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관광·건축부문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8	4	2	12	2	8	36
$B/C \geq 1$	건수	4	2	1	10	1	4	22
	비율	50.0	50.0	50.0	83.3	50.0	50.0	61.1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타당성 확보율은 75.0%이다. 부문별로는 문화·관광·건축부문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9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각 부문별로 도로는 62.5%, 철도는 75%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건축부문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사유는 지속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중도 철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4〉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8	4	2	12	2	8	36
AHP≥0.5	건수	5	3	1	11	1	27
	비율	62.5	75.0	50.0	91.7	50.0	75.0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4년도에 완료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총 10건으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사업계획이 1조 7,176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1조 3,485억원으로 3,691억원 가량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5〉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번호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억원)		
			사업계획(A)	적정성 검토(B)	차액(B-A)
1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건설사업	도로	689	718	29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	도로	2,585	2,056	-529
3	주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수자원	1,765	1,641	-124
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건축	960	632	-328
5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사업	건축	3,385	1,799	-1,586
6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건축	967	605	-362
7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건축	474	221	-253
8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건축	767	474	-293
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건축	4,662	4,395	-267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이전	건축	922	944	22
합계			17,176	13,485	-3,691

주: 1) 대안이 있는 경우 예산 집행계획 또는 연구진이 최적으로 언급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14년 조사 진행 중 철회됨.

부문별 수행 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부문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등 7건, 도로부문은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건설사업” 등 2건, 수자원부문은 “주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1건을 수행하였다. 부문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건축부문의 총사업비가 9,070억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축	도로	수자원	합계
수행 건수		7	2	1	10
총사업비	사업계획(A)	12,137	3,274	1,765	17,176
	적정성 검토(B)	9,070	2,774	1,641	13,485
	차액(B-A)	-3,067	-500	-124	-3,691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2건, 국회사무처 1건, 농촌진흥청 1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보건복지부 1건, 안전행정부 3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이 수행되었다.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4,395억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계
수행 건수		2	1	1	1	1	3	1	10
총사업비	사업계획(A)	4,350	960	922	3,385	4,662	2,208	689	17,176
	적정성 검토(B)	3,697	632	944	1,799	4,395	1,300	718	13,485
	차액(B-A)	-653	-328	22	-1,586	-267	-908	29	-3,691

주: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나뉘었음.

사업이 수행된 권역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2건, 강원권

과 영남권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7,300억 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합계
수행 건수		4	1	2	2	1	10
총사업비	사업계획(A)	9,774	2,585	1,163	2,687	967	17,176
	적정성 검토(B)	7,300	2,056	939	2,585	605	13,485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002~2014년까지 총 189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제외)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사업이 118건으로 전체 타당성재조사의 절반 이상(약 62%)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건축 부문 30건, 수자원 부문 14건, 철도 부문 9건, 항만 부문 11건, 기타 7건의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였다(표 III-19 참조).

2002년 이후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착수일 기준 209건의 타당성재조사 중에서 현행 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51건, 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경우가 46건, 22.0%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20 참조).

〈표 III-1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3	3	-	-	3	-	-	6
2004	2	1	-	2	-	1	6
2005	6	-	-	3	-	-	9
2006	10	-	-	2	5	2	19
2007	9	2	2	1	-	-	14
2008	10	1	2	6	2	-	21
2009	25	-	2	1	2	1	31
2010	17	3	-	5	4	2	31
2011	12	-	-	2	-	1	15
2012	6	1	1	2	1	-	11
2013	3	1	2	3	-	-	9
2014	15	-	2	-	-	-	17
계	118	9	11	30	14	7	189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정보화, R&D 부문 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표 III-2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단위: 건)

연도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예측 (30%이상) 증가	예산낭비 신고	감사원 및 국회요구	기타	합계
2002	-	-	1	-	-	-	-	1
2003	3	1	1	-	-	-	1	6
2004	2	2	5	-	-	-	-	9
2005	3	4	9	-	-	-	-	16
2006	3	4	8	-	1	-	4	20
2007	3	4	2	1	1	-	6	17
2008	4	1	6	1	-	-	6	18
2009	4	2	3	3	-	14	10	36
2010	2	8	6	1	-	6	4	27
2011	2	5	2	-	-	-	-	9
2012	2	2	3	1	-	-	1	9
2013	1	8	2	1	-	2	7	21
2014	2	5	3	7			3	20
계	31	46	51	15	2	22	42	209

주: 1) 사업 착수일(공문 접수일) 기준임.

2) 2014년 12월말 기준임.

한편 2007년 이후 수요예측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수행되었으며, 2007~2014년까지 수요예측재조사는 총 17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 29건이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수요예측재조사는 주로 도로부문 15건과 항만부문 2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도로부문 6건, 철도부문 3건, 항만부문 2건, 문화·관광·건축부문 13건, 수자원 2건, 기타 3건에 대해 검토가 수행되었다.

〈표 III-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0	1	-	1	1	-	-	3
2011	1	3	-	1	-	-	5
2012	1	-	-	1	1	1	4
2013	1	-	-	4	-	1	6
2014	2	-	1	6	1	1	11
계	6	3	2	13	2	3	29

주: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22〉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	-	1	-	-	-	1
2008	1	-	-	-	-	-	1
2009	2	-	1	-	-	-	3
2010	1	-	-	-	-	-	1
2011	-	-	-	-	-	-	0
2012	1	-	-	-	-	-	1
2013	3	-	-	-	-	-	3
2014	7	-	-	-	-	-	7
계	15	-	2	-	-	-	17

주: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23〉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건,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조사 총사업비 ¹⁾²⁾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조사 총사업비	
2003	6	47,987	42,328	5,659
2004	6	13,977	13,928	49
2005	9	72,976	47,375	26,847
2006	19	49,126	44,357	4,769
2007	14	40,650	43,684	-1,915
2008	21	166,919	155,070	29,306
2009	31	98,162	81,191	30,541
2010	31	148,006	132,340	34,250
2011 ³⁾	48	121,438	108,690	96,584
2012	11	48,657	48,598	34,987
2013	9	10,420	10,069	5,948
2014	17	79,244	75,186	19,411
계 ⁴⁾	222	897,562	802,816	286,436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AHP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합산하여 집계함.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33건)을 포함한 수치임.

4)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03년 타당성재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12월 말까지 총 222건의 토목, 건축, 정보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재조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약 28조 6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약 3조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2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단위: 천,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검토 총사업비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검토 총사업비	
2010	5	83,021	77,217	5,804
2011	3	14,959	11,241	3,718
2012	4	47,117	30,532	16,585
2013	6	8,429	7,294	1,135
2014	11	12,490	9,871	2,619
계	29	166,016	136,155	29,861

주: 1) 2014년 12월말 기준 조사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 사업 대상임.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가.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타 대상사업임에도 예타 미실시”가 5건, “수요 30% 이상 감소”가 3건,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가 2건, “예타대상규모로 증가”가 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 30%이상 감소	기타	합계
타당성재조사	1	5	2	3	6	17

2014년도에 수행한 타당성재조사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총 17건이다. 각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조사결과		
		현행안 (A)	요구안 (B)	타재 (C)	절감액 (B-C) 또는 (B)	B/C	AHP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	25,329	25,220	109	0.95	0.507
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	560	592	560	0.61	0.389
3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	4,202	4,170	4,202	0.40	0.416
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3,408	4,265	4,268	4,265	0.28	0.354
5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921	504	402	504	0.67	0.424
6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	1,707	1,685	1,707	0.40	0.383
7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	1,273	1,046	227	1.06	0.507
8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	1,050	989	1,050	0.52	0.403
9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사업	589	1,338	1,037	1,338	0.75	0.383
10	광주~완도1단계(광주~해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21,922	14,565	14,247	318	0.87	0.509
11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	2,294	1,816	478	1.16	0.569
1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덕천동~아시아드) 개설사업	-	1,383	1,686	-303	1.13	0.513
13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679	905	475	905	0.52	0.481
14	장고항 건설사업	477	785	782	3	0.91	0.519
1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공사	12,676	17,423	15,036	2,387	1.36	0.595
16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2,251	795	884	795	0.84	0.413
17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841	866	851	866	0.20	0.382
계		43,764	79,244	75,186	19,411	-	-

- 주: 1) 조사결과는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타당성재조사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기준연도가 상이함.
 3)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4)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2014년도 조사완료 사업 기준
 6)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재조사가 2014년 조사 진행 중 철회됨.

타당성재조사의 부문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도로부문 사업 14건, 항만부문 2건, 철도부문 1건의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도로	항만	철도	합계
타당성재조사	14	2	1	17

2014년도 수행된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7조 9,244억원이며,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7조 5,186억원으로 절감액은 약 1조 9,411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절감액
타당성재조사	17	79,244	75,186	19,411

주: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이 14건, 해양수산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이 1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29〉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계
타당성재조사	14	2	1	17

권역별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사업과 호남권 사업이 각각 6건, 이어서 영남권 3건, 충청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계
타당성재조사	6	2	6	3	17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및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은 23.5% 수준이었으며,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4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단위: %)

구분		경제적 타당성 확보($B/C \geq 1$)	종합적 타당성 확보($AHP \geq 0.5$)
총건수		17	
타당성 확보	건수	4	7
	비율	23.5%	41.2%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4년도에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총 11건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요구안이 1조 2,490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9,871억원으로 절감액이 약 2,61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감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1	12,490	9,871	2,619

〈표 III-33〉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현행안 (A)	요구안 (B)	재검토 (C)	절감액 (B-C)
1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71	376	238	138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사업	-	5,216	4,131	1,085
3	강남경찰서 신축사업	329	573	450	123
4	광진경찰서 신축사업	299	492	426	66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학습모듈 개발)	528	759	587	172
6	자활연수원 건립사업	204	256	253	3
7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	1,256	560	696
8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590	806	766	40
9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398	472	476	-4
10	행정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480	815	558	257
11	오송~청주 도로건설공사	780	1,469	1,426	43
합계		3,679	12,490	9,871	2,619

주: 1)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기준연도가 상이함.

2)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4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다. 수요예측재조사

2014년도에 수행한 수요예측재조사는 “국도79호선(군북~가야) 건설사업” 등 총 7건이 수행되었다.

〈표 III-34〉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번호	사업명
1	국도79호선(군북~가야) 건설사업
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3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4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5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7	국도21호선(인계~쌍치) 건설공사

주: 1) 2014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2) “국지도84호선(초지대교~인천1)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가 2014년 조사 진행 중 철회됨.

제IV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검토, 타당성분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제3자 제안공고(안)검토, 사업계획 평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협약(안) 검토, 자문 등 기타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수행한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수행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단위: 건)

업무 유형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사	적격성조사	-	-	-	-	-	4	1	12	10	25	5	3	5	2	2	
	제안서검토	5	23	19	22	39	15	11	12	11	15	14	10	5	7	6	
	타당성분석(BTO)	-	-	-	-	-	-	-	-	-	-	-	-	-	-	1	2
	타당성분석(BTL)	4	8	10	-	4	4	-	-	-	-	68	17	14	20	15	12
	수요예측재조사	-	-	-	-	-	-	-	-	-	-	-	-	-	-	-	2
	적격성재조사	-	-	-	-	-	-	-	-	-	-	-	-	-	-	-	2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등	7	7	9	7	12	11	48	57	62	42	42	35	18	14	12	11	
사업계획 평가	1	2	8	7	-	7	16	8	17	5	1	7	4	2	-	-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3	32	23	25	29	20	6	8	6	8	4	4	3	3	-	4	
자문 등 기타							39	76	71	98	58	65	90	173	147	196	
실시협약(안) 검토	3	5	3	2	2	7	2	41	78	80	72	45	25	20	13	16	
BTO	3	5	3	2	2	7	2	1	5	4	5	4	7	6	5	4	
BTL	-	-	-	-	-	-	-	40	73	76	67	41	18	14	8	12	
자금재조달 협상 및 사전검토	-	-	-	-	-	-	-	-	4	12	14	9	16	22	28	54	
사업시행조건조정	-	-	-	-	-	-	-	-	-	-	-	-	-	-	-	2	
분쟁조정검토	-	-	-	-	-	-	-	-	-	-	-	-	-	3	1	2	
합 계	23	77	72	63	86	64	126	203	261	270	298	200	183	267	225	313	

주: 조사, 검토, 분석, 평가, 협상 등은 년도 말의 과제완료기준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 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전력·용수·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지방화·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급증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1) 추진경위

1994년 8월에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익형 사업(BTO)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1999년 12월)하였고, 개정내용은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민간제안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고, 학교시설 및 군주거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사업(BTL) 방식 도입과 더불어 공모 형태의 인프라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시행령 개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금의 민간투자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임대형 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사전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논란이 되어온 MRG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민간투자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던 시기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제2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1999년 3월까지이다. 제3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며 제4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기간별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구분	기간	특성
제1기	1968~1994	· 개별 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제2기	1994~1998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도모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의 경우 BTO방식으로, 제2종의 경우 BOO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제3기	1999~2004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 폐지하여 사업추진방식 다각화
제4기	2005~현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BTL방식 도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무화 ·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주: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2) 법적근거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는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업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감독·제재 조치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적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각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서, 법·시행령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방향

이 외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참고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세부요령 등이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유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투자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유형이다.

〈표 IV-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교육(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치원 및 학교
국방(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 중 주거, 복지 및 체육시설 등
국토교통(15)	도로법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	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항공법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
	하천법	하천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문화체육관광(6)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도서관법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표 IV-3〉의 계속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미래창조과학(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 기본법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보건복지(4)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산림(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산업통상자원(5)	전원개발촉진법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기반시설
안전행정(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전거 이용시설
여성가족(1)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해양수산(3)	항만법	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배후간선망 연결시설 및 기반시설
환경(6)	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법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사회기반시설 유형

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나. 추진 절차 및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재정투자사업 중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부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둘째,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 제안사업이 그것이다.

〈표 IV-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주로 BTO방식과 BTL방식이 있으며, 기타 BOT, BOO 방식 등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BTO 및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10가지 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표 IV-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7.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8.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9.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10. 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

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1호와 제2호를 혼합한 방식(이하 “혼합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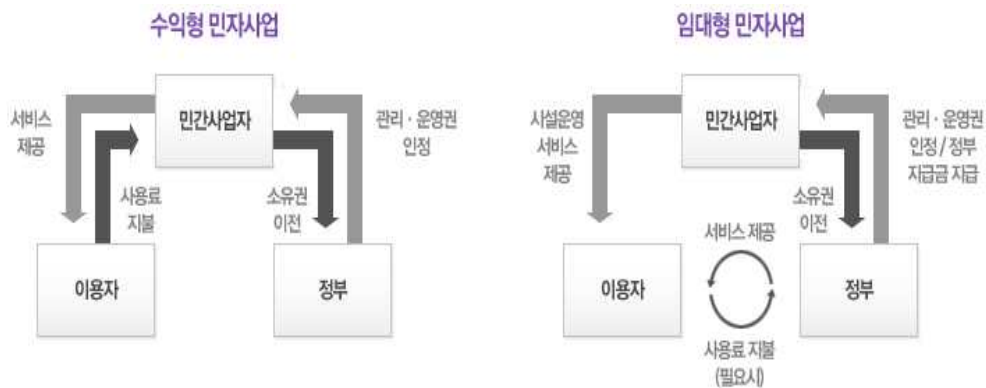
11.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형인 BTO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도로 및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임대형인 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학교 및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혼합형 방식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수요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BTO방식, 제2호의 BTL방식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의 추진방식이 아니라, BTO방식 및 BTL 방식의 병행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수요위험을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수익률을 인하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사용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IV-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 (<http://pimac.kdi.re.kr>)

BTO와 BTL방식의 대상시설 성격 및 투자비 회수, 사업 리스크 등의 주요 항목별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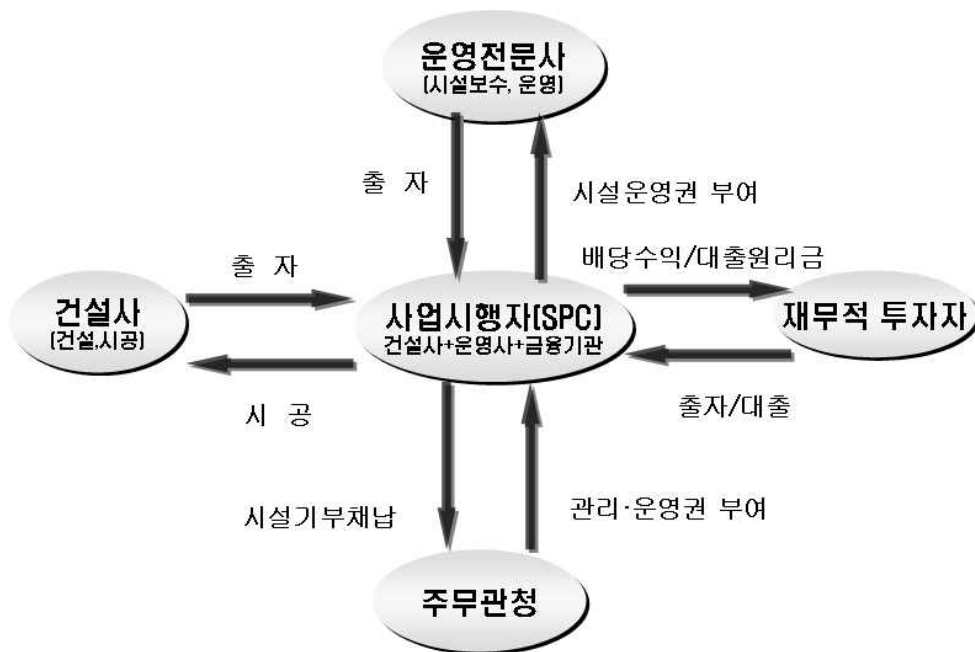
〈표 IV-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추진방식	BTO (수익형 민자사업)	BTL (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 민자사업
대상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수익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나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수익형+서비스구입형)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도로, 철도, 항만 등 (예상)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	최종사용자의 사용료와 정부보상금 (수익자부담+정부보상금)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수요에 따라 수익률 변동)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정부와 민간이 수요위험 분담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BTO와 BTL의 중간 수준
사업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BTL(Build-Transfer-Lease)	혼합형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Public Sector)와 민간(Private Sector)의 실시협약에 의해 성립 되는데, 사업시행자(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그림 IV-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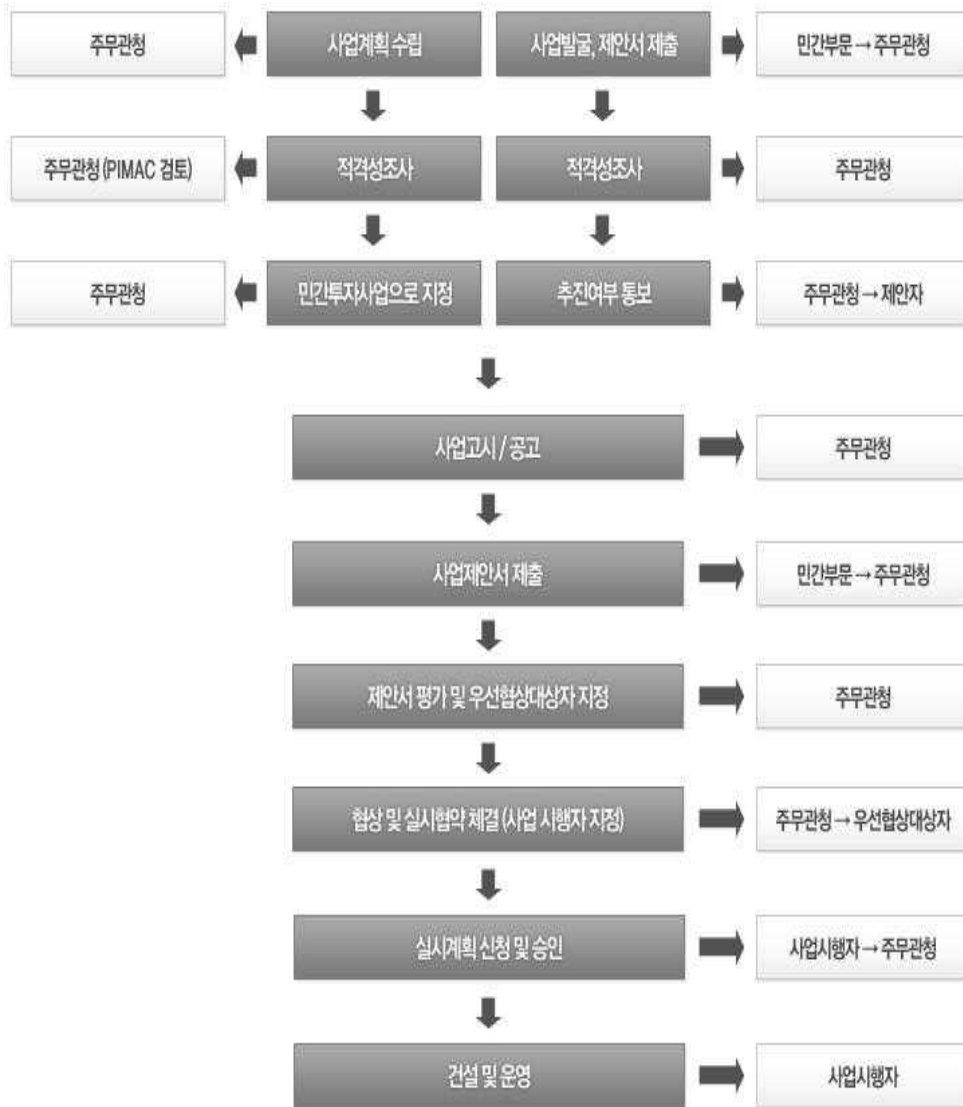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설계회사, 건설회사, 재무적 투자자,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 건설, 재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주무관청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된다.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4. 세부 추진절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할 수 있다.

[그림 IV-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가. 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

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나.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요건을 충족 및 사업내용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경우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시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최근 대부분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업 추진의 절차는 앞에서 서술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 절차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을 주로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은 법적적합성,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한다.

첫째, 법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과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①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③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④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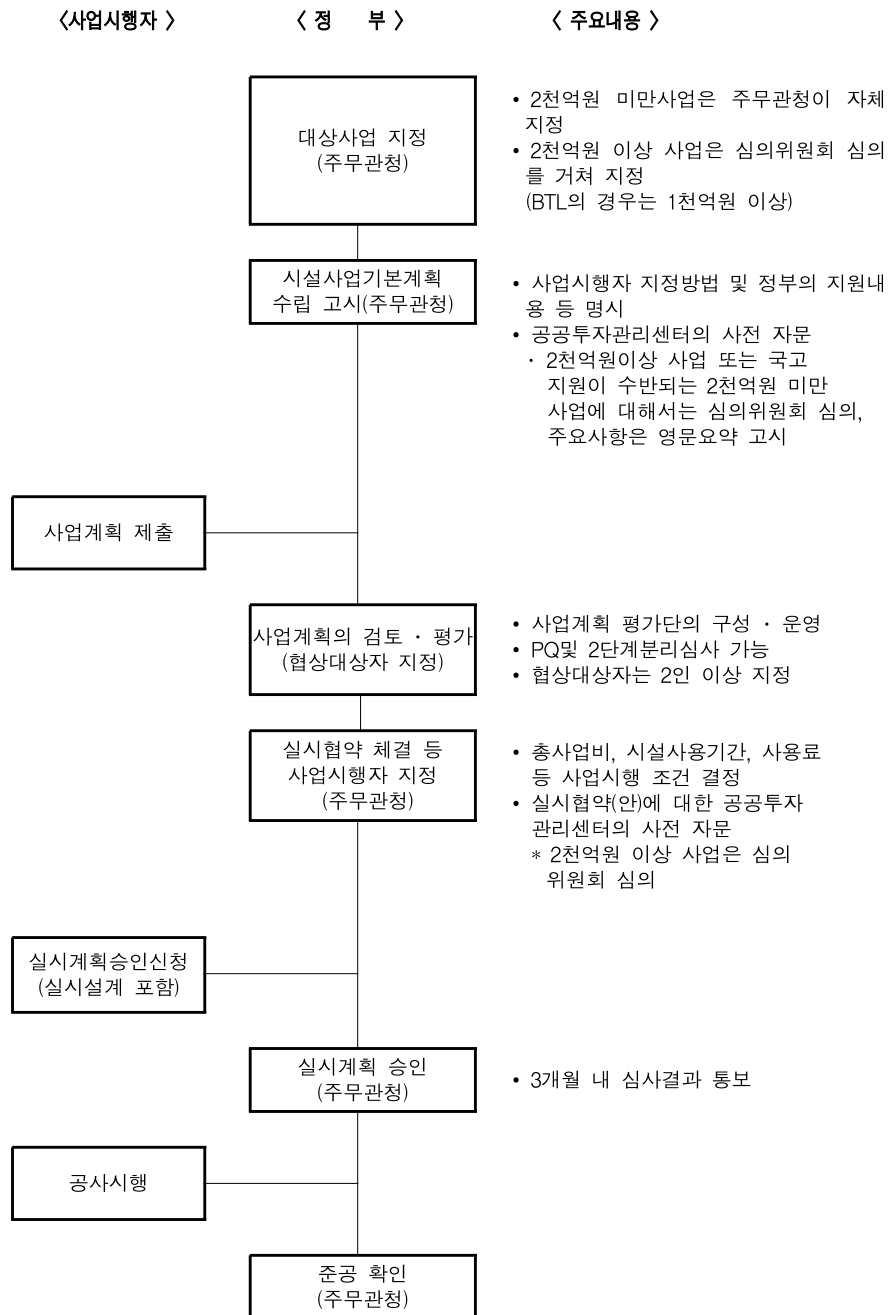
셋째,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으로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③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

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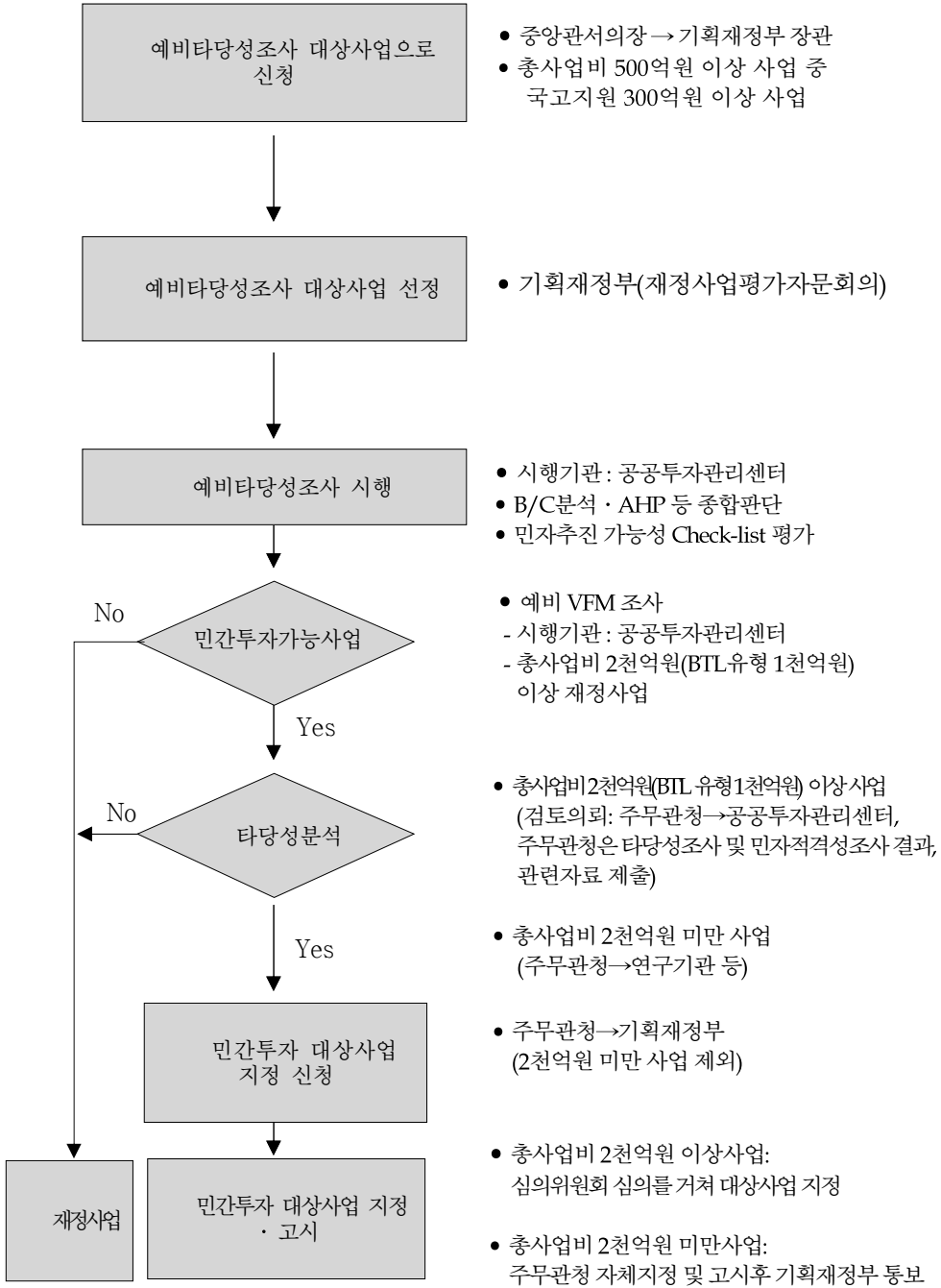
- ①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 ②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 ③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④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그림 IV-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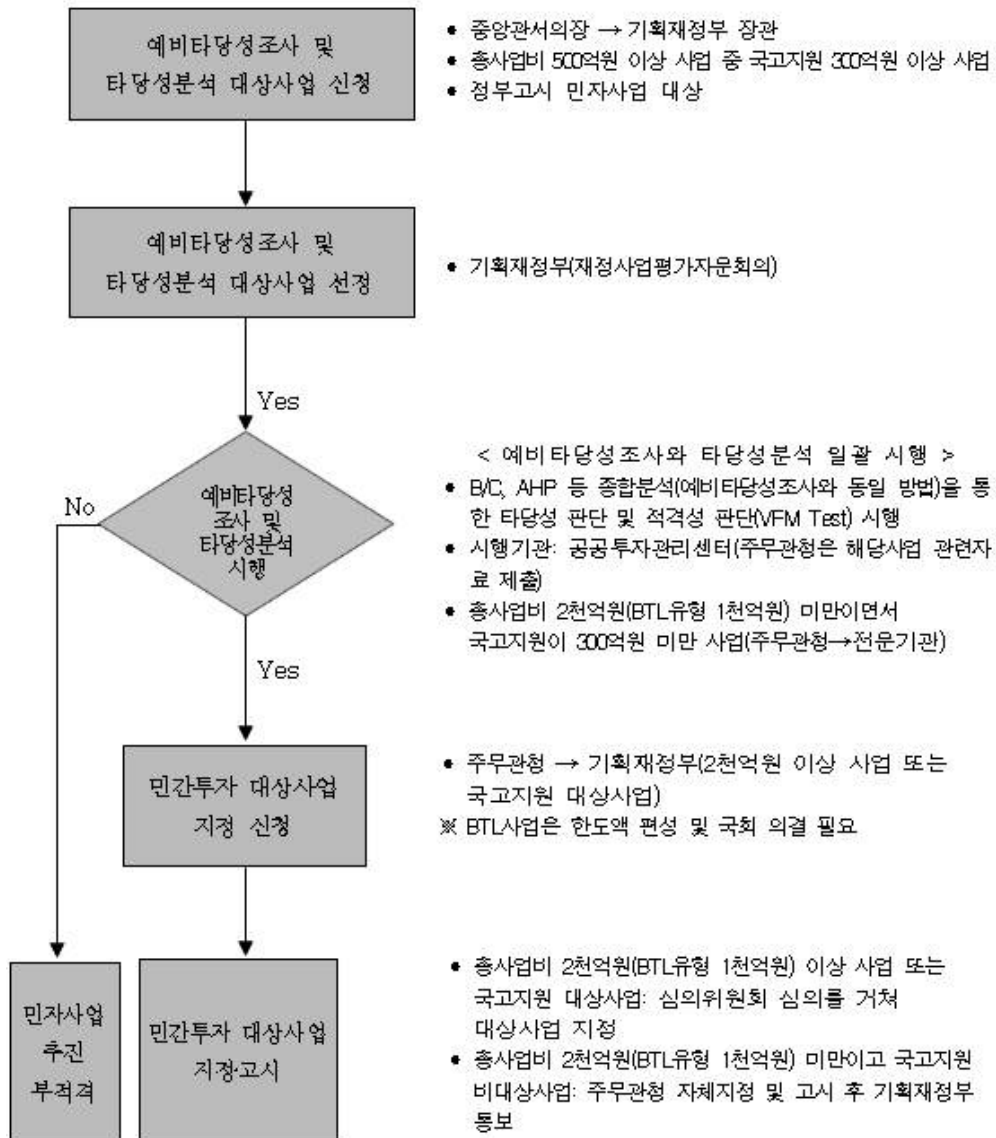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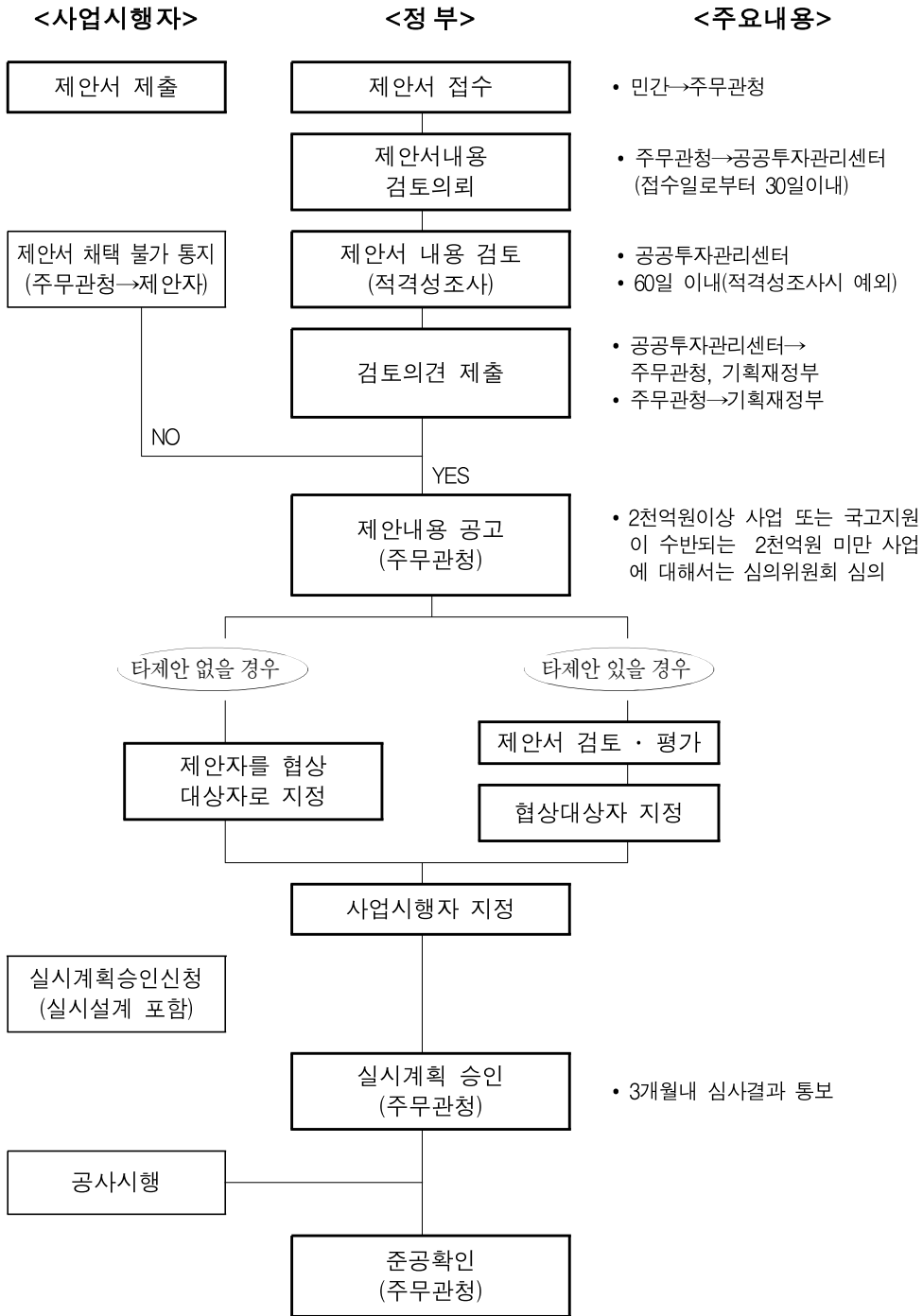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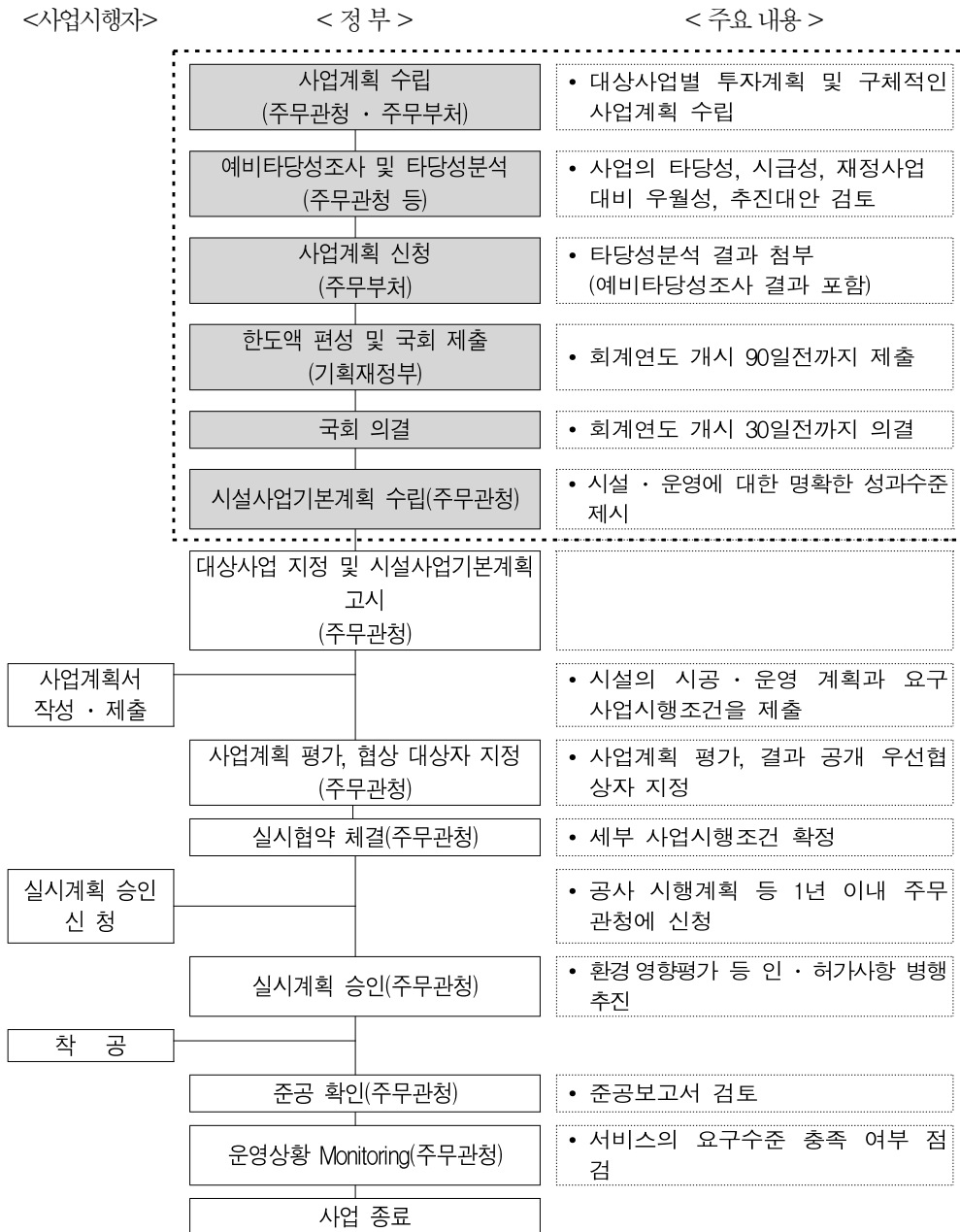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가.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성조사를,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격성조사 내지 제안서검토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인 타당성 판단의 단계에서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2단계인 민간제안 적격성판단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단계인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수행한 민간제안서 내용의 적격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무성분석 등을 통해 정부측 입장에서의 적정 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한다.

나.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모든 BTL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하며 재정사업 추진시와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있는지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⁷⁾.

7)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정부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주로 수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와 대응되는 업무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 분석 결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 때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러한 검토 업무를 관장하며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종 요령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⁸⁾

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민간제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제3자 제안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공고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기법을 통하여

8)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일정 기간 동안의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상의 내용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걸치게 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을 지원하고, 협상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협상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상 업무는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협상점검위원회가 협상단이 수행한 협상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나. 실시협약(안)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입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협약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⁹⁾. 따라서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를 관장하여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각종 요령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9)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입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5. 자금재조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단계에 접어드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자금재조달(Refinancing)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 일반지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04년 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의 정의와 공유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자금재조달 이익산정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최소 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7년에는 자금재조달의 범위를 출자자 변경까지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의무를 주요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자금재조달 규정을 개정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요령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공유이익규모 측정 등 자금재조달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대행 업무, 주무관청의 자문 업무, 출자자 변경 등 자금재조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2014년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MRG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사업재구조화 기법을 운영부실 및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등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본계획 제33조의2(사업 시행조건 조정) 조항이 개정되었다. 대상사업에는 MRG보장 하한규정(50%)으로 MRG를 지급하지 않으나 적자규모가 심각한 사업, 해지시지급금 발생으로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 등이며,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통해 주무관청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경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가. 분쟁조정 검토 업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다툼을 조정·심사하기 위해 2012년 3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되는 법률적·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앞서 기술한 업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및 일반국민이 웹사이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시로 제기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있다.

제V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2014년 12월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62개 사업, 총투자비¹⁰⁾는 99.4조원이다.

추진방식별로 살펴보면, BTO방식은 211개 사업, 69.8조원이고, BOT·BOO방식은 11개 사업, 1.9조원이며, BTL방식은 440개 사업, 27.7조원이다.

대상시설을 총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도로사업이 42.4조원(4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7.3조원(17.4%), 환경사업 12.9조원(13.0%), 교육사업 9.7조원(9.8%), 항만사업 6.9조원(7.0%) 순이다.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규정에 따라 BTO, BOT,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BTO와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수는 BTL 방식이 66.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투자금액은 BTO방식이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BTL방식이 440개, BTO방식이 211개, BOO방식이 7개, BOT방식이 4개 순이다.

10) 총투자비 = ① 건설보조(경상) + 타인자본(경상) + 자기자본(경상)

②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BTO방식이 69.8조원, BTL방식이 27.7조원 순이다.
추진방식별로 평균투자금액을 비교하면, BTO방식의 평균 투자비가 3,307억원으로 BTL방식의 평균 투자비 630억원의 약 5.25배 수준이다.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BTO	211	31.9%	697,853	70.2%	3,307
	BOT	4	0.6%	6,580	0.7%	1,645
	BOO	7	1.1%	12,318	1.2%	1,760
	소계	222	33.5%	716,751	72.1%	3,229
임대형	BTL	440	66.5%	277,370	27.9%	630
합계	662	100.0%	994,121	100.0%	1,50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수익형의 경우 사업수와 총투자비 모두 민간제안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고시	102	45.9%	299,832	41.8%	2,940
	제안	120	54.1%	416,919	58.2%	3,474
	소계	222	100.0%	716,751	100.0%	3,229
임대형	고시	440		277,370		630
합계	662		994,121		1,502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대상시설별로 구분하면, 사업 수는 교육사업(223개)과 환경사업(176개), 투자비는 도로사업(42.4조원)과 철도사업(17.3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사업은 223개 사업, 총투자비 9.7조원으로, 사업당 평균투자비

는 437억원 수준이다. 도로사업은 84개 사업, 총투자비 42.4조원으로,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5,046억원 수준이다. 사업당 평균투자비가 가장 큰 사업은 철도사업으로 1.3조원 수준이다.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교육	223	33.7%	97,401	437
환경	176	26.6%	128,742	731
도로	84	12.7%	423,894	5,046
국방	71	10.7%	55,833	786
문화관광	41	6.2%	19,079	465
항만	18	2.7%	69,454	3,859
철도	13	2.0%	173,121	13,317
공항	13	2.0%	7,104	546
복지	12	1.8%	3,490	291
유통	6	0.9%	12,605	2,101
정보통신	5	0.8%	3,398	680
총합계	662	100.0%	994,121	1,502

추진방식별로 대상시설을 구분하면 사업 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BTO사업의 경우 도로사업(84개) 및 환경사업(81개)이 전체 BTO사업의 78.2%를 차지하고, BTL사업의 경우 교육사업(222개) 및 환경사업(95개)이 전체 BTL사업의 72.0%를 차지한다. BOO와 BOT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문화관광,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1개 사업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로사업이 전체 BTO사업의 60.7% (42.4조원)를 차지하고, 교육사업(9.7조원)이 전체 BTL사업의 35.0%를 차지한다.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BTO	도로	84	39.8%	423,894	60.7%	5,046
	환경	81	38.4%	60,471	8.7%	747
	항만	18	8.5%	69,454	10.0%	3,859
	공항	13	6.2%	7,104	1.0%	546
	철도	9	4.3%	133,065	19.1%	14,785
	문화관광	4	1.9%	2,666	0.4%	666
	교육	1	0.5%	195	0.0%	195
	정보통신	1	0.5%	1,004	0.1%	1,004
	소계	211	100.0%	697,853	100.0%	3,307
BOT	문화관광	3	75.0%	3,439	52.3%	1,146
	유통	1	25.0%	3,141	47.7%	3,141
	소계	4	100.0%	6,580	100.0%	1,645
BOO	유통	5	71.4%	9,464	76.8%	1,893
	문화관광	2	28.6%	2,854	23.2%	1,427
	소계	7	100.0%	12,318	100.0%	1,760
BTL	교육	222	50.5%	97,206	35.0%	438
	환경	95	21.6%	68,271	24.6%	719
	국방	71	16.1%	55,833	20.1%	786
	문화관광	32	7.3%	10,120	3.6%	316
	복지	12	2.7%	3,490	1.3%	291
	정보통신	4	0.9%	2,394	0.9%	598
	철도	4	0.9%	40,056	14.4%	10,014
	소계	440	100.0%	277,370	100.0%	630
합계	662	-	994,121	-	1,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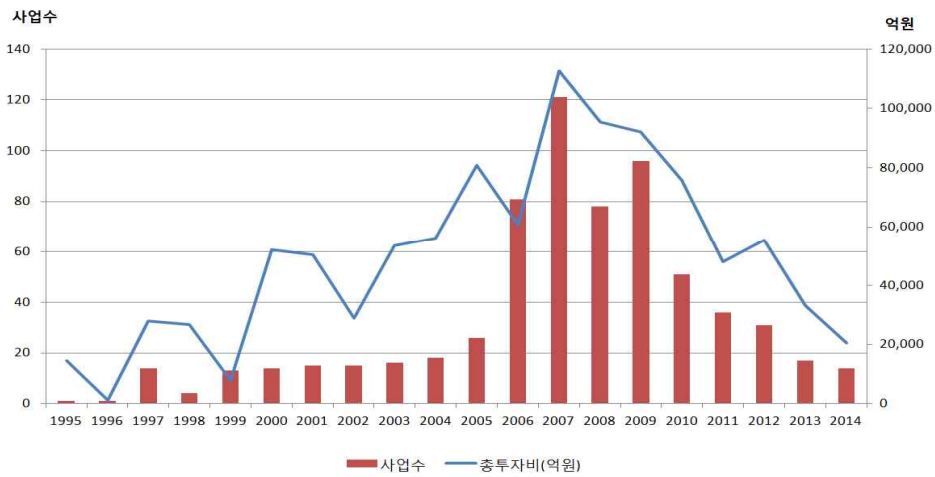
주: 비중은 추진방식별로 구분됨.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9년 민간제안방식과 MRG가 도입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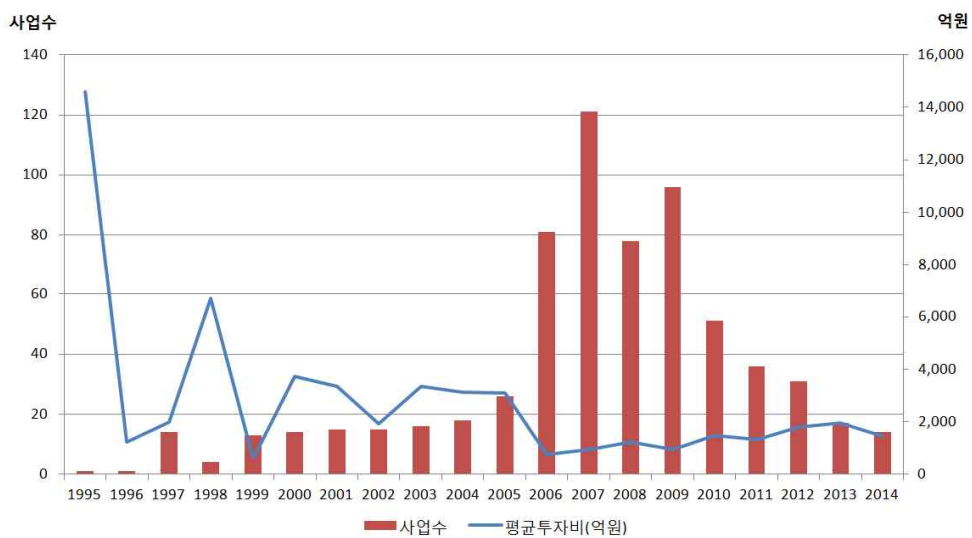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에 사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 사업 수(121개)와 투자금액(11.3조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V-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2000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도입과 MRG 활용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임대형 사업 도입의 영향으로 사업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투자비 규모는 감소되었다.

[그림 V-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연도별로 추진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V-5>와 같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약 71.7조원 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약 27.7조원에 이르고 있다. 만약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민간이 투자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재정부담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편익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다.

<표 V-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사업 수	총 투자비	평균 투자비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4,602	14,602	1	14,602	-	-
1996	1	1,220	1,220	1	1,220	-	-
1997	14	27,911	1,994	14	27,911	-	-
1998	4	26,730	6,683	4	26,730	-	-
1999	13	7,895	607	13	7,895	-	-
2000	14	52,125	3,723	14	52,125	-	-
2001	15	50,358	3,357	15	50,358	-	-
2002	15	28,996	1,933	15	28,996	-	-
2003	16	53,521	3,345	16	53,521	-	-
2004	18	56,148	3,119	18	56,148	-	-
2005	26	80,852	3,110	18	77,019	8	3,833
2006	81	60,812	751	11	31,283	70	29,529
2007	121	112,611	931	18	51,992	103	60,619
2008	78	95,449	1,224	14	65,466	64	29,984
2009	96	92,187	960	11	37,776	85	54,411
2010	51	75,686	1,484	3	29,344	48	46,342
2011	36	47,948	1,332	12	34,279	24	13,669
2012	31	55,491	1,790	8	39,320	23	16,171
2013	17	33,078	1,946	9	15,380	8	17,698
2014	14	20,501	1,464	7	15,387	7	5,114
합 계	662	994,121	1,502	222	716,751	440	277,370

연도별로 추진 주체를 비교하면, 임대형 사업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수가 국가관리, 국가보조지자체관리 사업보다 사업수는 더 많지만 총투자비는 더 적다.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사업수	총투자비	국가관리		국가보조 지자체관리		지자체관리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1995	1	14,602	1	14,602	-	-	-	-
1996	1	1,220	-	-	-	-	1	1,220
1997	14	27,911	11	22,124	1	2,948	2	2,839
1998	4	26,730	1	24,772	1	1,791	2	167
1999	13	7,895	4	4,335	-	-	9	3,560
2000	14	52,125	2	45,929	-	-	12	6,196
2001	15	50,358	4	42,211	-	-	11	8,147
2002	15	28,996	-	-	2	23,448	13	5,548
2003	16	53,521	4	19,928	3	28,591	9	5,003
2004	18	56,148	4	27,504	4	24,284	10	4,360
2005	26	80,852	10	55,312	6	20,684	10	4,856
2006	81	60,812	17	26,291	18	20,275	46	14,246
2007	121	112,611	15	53,336	38	32,243	68	27,032
2008	78	95,449	12	61,158	27	16,291	39	18,001
2009	96	92,187	34	41,285	29	35,724	33	15,178
2010	51	75,686	23	60,501	13	7,747	15	7,438
2011	36	47,948	10	30,771	8	6,887	18	10,290
2012	31	55,491	10	40,449	11	9,010	10	6,032
2013	17	33,078	7	24,154	2	2,831	8	6,093
2014	14	20,501	4	10,152	5	6,130	5	4,219
합계	662	994,121	173	604,814	168	238,882	321	150,425

연도별로 발주방식을 비교하면, 정부고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이후로 급감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아, 수익형의 경우 정부고시보다는 민간제안의 발주방식이 선호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사업 수	총투자비	정부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4,602	1	14,602	-	-	-	-
1996	1	1,220	1	1,220	-	-	-	-
1997	14	27,911	14	27,911	-	-	-	-
1998	4	26,730	4	26,730	-	-	-	-
1999	13	7,895	12	7,545	-	-	1	350
2000	14	52,125	11	50,016	-	-	3	2,109
2001	15	50,358	10	45,153	-	-	5	5,204
2002	15	28,996	11	16,068	-	-	4	12,928
2003	16	53,521	7	28,856	-	-	9	24,665
2004	18	56,148	9	26,141	-	-	9	30,007
2005	26	80,852	6	25,841	8	3,833	12	51,178
2006	81	60,812	8	26,849	70	29,529	3	4,434
2007	121	112,611	5	918	103	60,619	13	51,075
2008	78	95,449	1	159	64	29,984	13	65,307
2009	96	92,187	-	-	85	54,411	11	37,776
2010	51	75,686	1	722	48	46,342	2	28,622
2011	36	47,948	-	-	24	13,669	12	34,279
2012	31	55,491	-	-	23	16,171	8	39,320
2013	17	33,078	1	1,101	8	17,698	8	14,279
2014	14	20,501	-	-	7	5,114	7	15,387
합 계	662	994,121	102	299,832	440	277,370	120	416,919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비교하면, 사업수 측면에서는 지자체사업(321개)이 국가사업(173개)의 약 2배 수준이지만, 총투자비는 국가사업(60.5조원)이 지자체사업(15.0조원)보다 규모가 크다. 국가사업의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3,496억원이며, 지자체사업의 평균투자비는 469억원이다.

〈표 V-8〉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	173	26.1%	60.8%	3,496
국가보조지자체	168	25.4%	24.0%	1,422
지방자치단체	321	48.5%	15.1%	469
총합계	662	100.0%	100.0%	1,502

추진주체별 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과 국가보조지자체관리사업의 경우 사업 수는 BTL방식, 투자금액은 BTO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수와 투자금액 모두 BTO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관리사업은 BTO방식이 사업 수의 35.8%, 투자금액의 78.2%, 국가보조지자체관리사업은 BTL방식이 사업 수의 79.8%, 투자금액의 33.1%, 지자체사업은 BTL방식이 사업 수의 62.3%, 투자금액의 51.7%를 차지한다.

〈표 V-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방식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BTO	62	35.8%	472,908	7,628
	BOT	1	0.6%	3,141	3,141
	BOO	4	2.3%	8,244	2,061
	BTL	106	61.3%	120,520	1,137
	소계	173	100.0%	604,814	3,496
국가보조 지자체관리	BTO	34	20.2%	159,810	4,700
	BTL	134	79.8%	79,072	590
	소계	168	100.0%	238,882	1,422
지자체관리	BTO	115	35.8%	65,134	566
	BOT	3	0.9%	3,439	1,146
	BOO	3	0.9%	4,074	1,358
	BTL	200	62.3%	77,778	389
	소계	321	100.0%	150,425	469
합계		662		994,121	1,502

추진주체별 대상 사업은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사업(173건)은 국방, 교육, 도로, 항만 순이며, 국가보조지자체관리 사업(168건)은 환경사업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관리사업(321건)은 교육 사업이 19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사업은 도로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은 환경사업이, 지자체사업은 교육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체별로 추진된 대상시설 유형이 서로 상이하다.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분야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 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 관리	국방	71	41.0%	55,833	9.2%	786
	교육	27	15.6%	20,485	3.4%	759
	도로	23	13.3%	308,077	50.9%	13,395
	항만	18	10.4%	69,454	11.5%	3,859
	공항	13	7.5%	7,104	1.2%	546
	철도	8	4.6%	124,807	20.6%	15,601
	유통	5	2.9%	11,385	1.9%	2,277
	환경	3	1.7%	2,519	0.4%	840
	정보통신	2	1.2%	2,929	0.5%	1,465
	문화관광	2	1.2%	1,657	0.3%	829
	복지	1	0.6%	563	0.1%	563
	소계	173	100.0%	604,814	100.0%	3,496
국가 관리 지자체	환경	108	64.3%	95,323	39.9%	883
	문화관광	27	16.1%	7,788	3.3%	288
	도로	16	9.5%	84,444	35.3%	5,278
	복지	11	6.5%	2,927	1.2%	266
	철도	5	3.0%	48,315	20.2%	9,663
	교육	1	0.6%	86	0.0%	86
	소계	168	100.0%	238,882	100.0%	1,422
지자체관리	교육	195	60.7%	76,829	51.1%	394
	환경	65	20.2%	30,900	20.5%	475
	도로	45	14.0%	31,374	20.9%	697
	문화관광	12	3.7%	9,634	6.4%	803
	정보통신	3	0.9%	468	0.3%	156
	유통	1	0.3%	1,220	0.8%	1,220
	소계	321	100.0%	150,425	100.0%	469
합계		662		994,121		1,502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발주방식별로 구분하면, 사업수와 총투자비 모두 정부고시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평균 투자비는 민간제안방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542개 사업, 총투자비는 577.7조원으로 사업당 평균 1,065억원이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120개 사업, 총투자비는 41.7조원으로 사업당 평균 3,474억원이다.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정부고시사업	542	81.9%	58.1%	1,065
수익형	102			2,940
임대형	440			630
민간제안사업	120	18.1%	41.9%	3,474
합계	662	100.0%	100.0%	1,502

발주방식을 대상시설별로 구분할 경우 사업수를 기준으로 정부고시사업은 교육사업(223건), 환경사업(117건), 국방사업(71건), 도로사업(43건) 등의 순서이며, 민간제안사업은 환경사업(59건)과 도로사업(41건) 순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정부고시사업은 도로사업이 14.4조원과 철도사업 12.0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민간제안사업은 도로사업이 28.0조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2〉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정부 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교육	223	97,401	1	195	222	97,206	-	-
환경	117	75,518	22	7,247	95	68,271	59	53,224
국방	71	55,833	-	-	71	55,833	-	-
도로	43	144,179	43	144,179	-	-	41	279,715
문화관광	34	11,363	2	1,243	32	10,120	7	7,716
항만	13	52,933	13	52,933	-	-	5	16,522
공항	12	6,602	12	6,602	-	-	1	502
복지	12	3,490	-	-	12	3,490	4	53,146
철도	9	119,975	5	79,919	4	40,056	-	-
정보통신	4	2,394	-	-	4	2,394	1	1,004
유통	4	7,515	4	7,515	-	-	2	5,091
합 계	542	577,202	102	299,832	440	277,370	120	416,919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단계별로 보면, 전체 662개 사업중에서 운영중인 사업은 552개 사업으로 83.4% 수준이다.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중	552	83.4%	65.0%	1,171
시공중	55	8.3%	21.4%	3,870
시공준비중	55	8.3%	13.6%	2,450
합계	662	100.0%	100.0%	1,502

각 추진단계별로 대상시설을 구분하면 운영중인 사업은 교육사업 216건과 환경사업 139건이 사업수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도로사업 22.5조원과 철도사업 10.6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공중인 사업은 환경사업 23건과 도로사업 20건으로 사업수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기준으로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총 55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표 V-1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전체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교육	216	92,556	3	1,547	4	3,299	223	97,401
환경	139	95,165	23	21,764	14	11,813	176	128,742
도로	54	224,749	20	141,946	10	57,200	84	423,894
국방	56	40,169	1	1,150	14	14,514	71	55,833
문화관광	35	14,079	2	1,970	4	3,030	41	19,079
항만	14	51,340	2	3,802	2	14,312	18	69,454
철도	8	105,562	3	40,129	2	27,431	13	173,121
공항	13	7,104	-	-	-	-	13	7,104
복지	7	1,702	1	563	4	1,225	12	3,490
유통	5	10,656	-	-	1	1,950	6	12,605
정보통신	5	3,398	-	-	-	-	5	3,398
합계	552	646,478	55	212,871	55	134,772	662	994,121

수익형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구분하면, 운영중인 사업은 159개 사업 43.3조원, 시공중인 사업은 40개 사업 18.9조원, 시공준비중인 사업은 23개 사업 9.5조원 규모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운영중인 사업은 60.4%, 시공중인 사업은 26.3%, 시공준비중인 사업은 13.2%를 차지한다.

〈표 V-15〉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중	159	71.6%	433,184	2,724
시공중	40	18.0%	188,762	4,719
시공준비중	23	10.4%	94,806	4,122
합 계	222	100.0%	716,751	3,229

임대형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구분하면, 운영중인 사업은 393개 사업 21.3조원, 시공중인 사업은 15개 사업 2.4조원, 그리고 시공준비중인 사업은 32개 사업 4.0조원 규모이며, 총투자비 기준으로 운영중인 사업은 76.9%, 시공중인 사업은 8.7%, 시공준비중인 사업은 14.4%를 차지한다.

〈표 V-16〉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중	393	89.3%	213,294	543
시공중	15	3.4%	24,109	1,607
시공준비중	32	7.3%	39,967	1,249
합 계	440	100.0%	277,370	630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014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는 도로, 에너지, 문화·관광,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총 8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3건, 대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3건,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2건이다.

〈표 V-17〉 2014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적격성조사	1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시	대안에 따라 추진 가능
	2	서부내륙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추진 가능
민간제안서 검토	1	군산시 자원에너지화시설	군산시	대안에 따라 추진 가능
	2	안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안성시	추진 가능
	3	거가대교 관광지	거제시	추진 가능성 낮음
	4	포항시 남구통합정수장	포항시	추진 가능
	5	중랑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서울시 중랑구	추진 가능성 낮음
	6	김해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김해시	대안에 따라 추진 가능

2. 타당성분석 검토(BTO)

2014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는 철도 및 문화·관광 등 총 2건이 수행되었으며, 조사결과는 2건 모두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V-18〉 2014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타당성분석 검토	1	광고~호매실 복선전철	국토교통부	추진 가능성 낮음
	2	K-POP 공연장(전용 아레나)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가능성 낮음

3. 타당성분석 검토(BTL)

2014년도 타당성 분석 검토(BTL)은 하수관거, 국방부 관사, 국립대학교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총 12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모든 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무관청은 국방시설본부(2건), 교육부(6건), 미래창조과학부(1건) 및 기타 지자체(3건) 등이다.

〈표 V-19〉 2014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1	김포시 하수관거 정비	김포시	적격성있음
2	시흥시 하수관거 정비	시흥시	적격성있음
3	부산시 하수관거 정비	부산광역시	적격성있음
4	국방부 관사(양주, 파주)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5	국방부 관사(여주, 원주, 성남)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6	국립대학교 기숙사(강원대)	교육부	적격성있음
7	국립대학교 기숙사(교통대)	교육부	적격성있음
8	국립대학교 기숙사(목포대)	교육부	적격성있음
9	국립대학교 기숙사(제주대)	교육부	적격성있음
10	국립대학교 기숙사(부산대)	교육부	적격성있음
11	국립대학교 기숙사(한밭대 외 1)	교육부	적격성있음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 기숙사	미래창조과학부	적격성있음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는 도로, 철도, 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총 4건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3

건이며,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및 실시협약 수요 대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주무관청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V-20〉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수요예측 재조사	1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국토교통부	추진 가능
	2	수도권북부(과주) 내륙물류기지	국토교통부	30% 이상 차이 발생
적격성 재조사	1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울특별시	추진 가능
	2	동북선 경전철	서울특별시	추진 가능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014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총 6건이다. 검토한 사업의 유형은 대학교 생활관, 하수관거정비, 의료원, 컨벤션 사업 등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이다.

〈표 V-21〉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1	순천대의 1교 생활관 신축	교육부
2	경북대 생활관 신축	교육부
3	부산광역시(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부산광역시
4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5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이전신축	경기도 이천시
6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	순천시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2014년도 BTO 사업 제3자 공고(안) 검토는 총 5건을 수행하였다.

〈표 V-22〉 2014년도 BTO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1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평택시
2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평택시
3	동대문구 주차빌딩	동대문구
4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군산시
5	서부내륙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014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여 완료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총 4건이다. 이 중 도로 사업 2건은 협상 후 가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항만 사업 2건의 경우 장기간 협상 중단 이후 일부 사항이 협의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표 V-23〉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협상결과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가협약체결
2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가협약체결
3	부산항 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상	해양수산부	중단
4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상	해양수산부	중단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014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O사업 실시협약(안) 검토는 “광주~원주고속도로 BTO 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등 총 4건이다.

〈표 V-24〉 2014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1	광주~원주고속도로 변경	국토교통부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구미시
3	신분당선(정자-광교) 변경	국토교통부
4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대전광역시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2014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L사업 실시협약(안) 검토는 “공주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등 총 12건이다.

〈표 V-25〉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1	공주의료원 신축이전	충청남도
2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보건복지부
3	부경대 외 1교(한국해양대학교) 생활관 신축	교육부
4	강릉원주대 외 2교 생활관 신축	교육부
5	전북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신축	교육부
6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보건복지부
7	제주대 외 2교 생활관 신축	교육부
8	13년도 부산(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	부산광역시
9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경찰청
10	국방부 병영시설 3개사업	국방부
11	13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포항시
12	13년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함양군

제6절 2014년도 자금제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2014년도 자금제조달과 관련하여 재조달 사전 검토 5건과 자금제조달 협상 1건 사업시행조건 조정 2건을 완료하였다.

2014년도에 공문으로 접수받은 금융재무 관련 질의답변 검토업무는 48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MRG금액 검토가 16건,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질의 23건,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은 9건이었다.

〈표 V-26〉 2014년도 자금제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유형별	건수
자금제조달 사전 검토	5
자금제조달 협상	1
사업 시행조건 조정	2
단기 검토(MRG 검토 등)	48

2014년에 완료된 재조달 사전 검토 5건은 모두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해당한다. 5건의 수익형 민자사업 중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에 따라 자금제조달 사전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출자자 변경, 자본구조 변경 및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에 따라 자금제조달 사전검토가 수행되었다. 또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자금제조달 협상이 수행되었다.

〈표 V-27〉 2014년도 자금제조달 사전 검토 수행 실적

구분	연번	과제명
사전 검토	1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차 자금제조달
	2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3	군포시 대야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4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울속도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상	1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자금제조달 변경 협상

2014년에 완료된 사업시행조건 조정은 2건 모두 MRG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며, 수요 부족으로 인한 발생한 MRG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토가 수행되었다.

〈표 V-28〉 2014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수행 실적

구분	연번	과제명
사전 검토	1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
	2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에서는 2014년도에 총 2건의 분쟁조정 검토를 의뢰받았으며, 2014년 기준 “우이~신설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2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였다.

〈표 V-29〉 2014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연번	분쟁조정명
1	우이~신설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 업무 지원
2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 업무 지원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2014년도에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는 총 196건을 수행하였다.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 37건, 기재부 요청 질의 답변 60건, 홈페이지 질의 99건을 수행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업무는 총 99건으로, BTO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25건(약 25.3%), BTL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40건(약 40.4%), 민간투자사업 공통 또는 재정사업 관련, 현황·제도 및 지침 관련 등 기타 일반사항은 34건(약 34.3%)을 차지하였다.

〈표 V-30〉 2014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구 분	건수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답변	37건
기재부 요청 질의 답변	60건
홈페이지 Q&A	99건
계	196건

제VI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집행업무와 간접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생활 및 후생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2015년 1월 기준 316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공익성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¹¹⁾로 대두되면서 국회는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제도 및 감독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원

11)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 증가율이 현저히 높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국회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회는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관계없이 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전검증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을 훼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2011년 1월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즉, 종전 공공기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토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일 자	추진 경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 - 공공기관 자체 수행
20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보고 - 재정전략회의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타당성검증 강화 내용 포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예산편성지침 심의·의결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등 마련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조치
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
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추진

2. 추진 근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50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공운법 제5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지침 수립권”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운법 제50조 제1항 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운법 제50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에서 신규 투자사업·자본 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 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3. 법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및 근거, 대상사업 및 선정 기준, 수행체계 등의 세부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이러한 사항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이외에도 면제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기타 효율적 제도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¹²⁾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즉,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②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③ 법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다. ③에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

12) 본 절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됨.

여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 정부간 외교 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 및 본 세부시행계획의 “I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¹³⁾를 사업시행 전년도 1월말 또는 6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절차

각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 또는 7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년도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되고 그 승인으로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신청하는 연도를 사업시행 연도로 본다.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공운법 제50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13)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의 (별표1)에 따름.

전문기관은 조사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며, 필요시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의뢰받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특수성 등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제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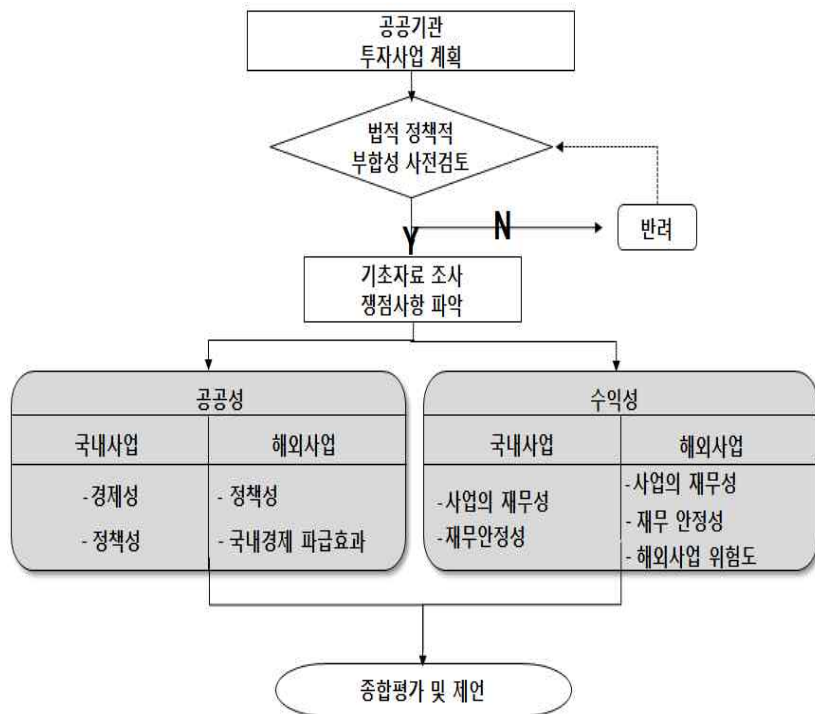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법령 ·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호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각 년도)』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조사 대상 사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의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국가,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절차는 다음 [그림 VI-1]과 같으며,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¹⁴⁾. 다음 <표 VI-3>과 같이 2012년까지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익형과 비수익형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3.

14) 본 절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됨.

〈표 VI-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구분		평가 가중치
기존 (2012년도 이전)	국내사업	공공성 40%, 수익성 60%
	해외사업	공공성 30%, 수익성 70%
현행 (2013년도 이후)	비수익형 국내 사업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 해외사업	공공성 30%, 수익성 7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2012.11.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가. 국내사업의 평가 방법

공공성 평가 방법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틀을 유지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편익/비용(B/C) 비율을 제시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필수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분하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필수 평가항목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환경성 검토’, ‘지역경제발전효과’, ‘지역낙후도’ 등이며, 선택 평가항목은 경제성과 수익성 평가에서 정량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 조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려한다.

수익성 평가 방법은 재무성 평가와 재무안정성 평가로 구분한다. 재무성 평가는 사업의 투자안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며,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을 활용한다. 재무안정성 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 사업수행기관의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적 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나. 해외사업의 평가 방법

해외사업의 평가도 국내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AHP 수행)한다. 단, 국내사업의 평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공공성은 정책성과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국내경제 파급효과’에서는 기관의 사업 수행이 국가 전체의 수출 또는 자원 확보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를 토대로 ‘수출파급/자원확보 효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파악하여 ‘기관경쟁력 제고효과’를 평가한다.

수익성은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과 더불어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특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는 사업수행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한다.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후 총 40건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1년에는 9개 기관의 12개 사업, 2012년에는 7개 기관의 8개 사업, 2013년도에는 8개 기관의 12개 사업, 2014년에는 7개 기관의 8개 사업이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다. 특히, 2014년도에는 2건의 해외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어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부문별 수행 실적 및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 사업 통과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부문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VI-4>와 같다. 발전 및 설비에 대한 조사 수행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부문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수행 사업 수

(단위: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합계
2011	2	2	1	2	-	5	12
2012	4	-	2	-	2	-	8
2013	4	2	-	4	1	1	12
2014	4	-	-	1	2	1	8
계	14	4	3	7	5	7	40

-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
 2) 기타부문에는 연수타운, 특구개발사업, 수자원 등을 포함
 3) 해외사업 6건 포함

2011~2014년 동안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6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2011~2014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 건수	국내	8	4	3	7	5	7	34
	해외	-	-	-	-	-	-	-
B/C≥1	건수	5	4	1	6	2	3	21
	비율	62.5	100.0	33.3	85.7	40.0	42.9	61.8

-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이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은 제외할 수 있음.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재무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3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2011~2014년 부문별·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 건수	국내	8	4	3	7	5	7	34
	해외	6	-	-	-	-	-	6
PI≥1	건수	5	1	2	3	2	1	14
	비율	35.7	25.0	66.7	42.9	40.0	14.3	35.0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앞서 조사된 공공성과 수익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총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7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2011~2014년 부문별·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 건수	국내	8	4	3	7	5	7	34
	해외	6	-	-	-	-	-	6
AHP ≥0.5	건수	9	4	3	4	4	4	28
	비율	64.3	100.0	100.0	57.1	80.0	57.1	70.0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총 34건의 국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종합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8건(AHP<0.5)의 사업비 합계는 2조 2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VI-8〉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국내사업)

(단위: 억원)

연도	사업수(건)	전체 사업비 ¹⁾	총사업비 절감액 ²⁾
2011	12	38,951	4,300
2012	8	46,803	8,100
2013	8	19,043	9,449
2014 ³⁾	6	29,874	0
총합계	34	134,671	21,849

주: 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분석된 재추정 사업비 기준으로, 공공기관 사업비 및 민간 부담분과 국고 및 지자체 사업비도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AHP<0.5인 국내사업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합계임.

3) 2014년도는 AHP<0.5인 국내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총사업비 절감액이 0으로 도출됨.

2. 2014년도 수행 실적

2014년에 수행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8건으로 사업명과 의뢰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9〉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연번	사업명	기관명
1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한국수자원공사
2	주파수 조정용(F/R) ESS 사업	한국전력공사
3	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발전사업	한국중부발전
4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	한국서부발전
5	창원교정시설 이전·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하동화력 제3연료 하역부두 건설사업	한국남부발전
7	하동 SNG 생산설비 건설사업	한국남부발전
8	개포9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무원연금공단

주: 2014년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014년도에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6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2014년 부문별·연도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국내	2	-	1	2	1	6
	해외	-	-	-	-	-	-
B/C≥1	사업건수	2	-	1	0	1	4
	비율	100.0	-	100.0	0	100.0	66.7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을 기준으로 함.

2) 발전 및 설비 사업 중 2개 사업은 해외사업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014년에 수행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익성(재무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2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2014년 부문별·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국내	2	-	1	2	1	6
	해외	2	-	-	-	-	2
PI≥1	사업건수	1	-	1	0	0	2
	비율	25.0	-	100.0	0.0	0.0	25.0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높은 결과값을 기준으로 함.

앞서 조사된 공공성과 수익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총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7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2014년 부문별·연도별 타당성 분석 종합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국내	2	-	1	2	1	6
	해외	2	-	-	-	-	2
AHP≥0.5	사업건수	2	-	1	2	1	6
	비율	50.0	-	100.0	100.0	100.0	75.0

주: 1) 2014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높은 결과값을 기준으로 함.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효율화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투자평가 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지침 및 일반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Ⅶ-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계
1999	3	1	4							3	1	4
2000	6	6	12							6	6	12
2001	6	6	12							6	6	12
2003	1		1							1		1
2004	5	4	9							5	4	9
2005												0
2006				4	17	21				4	17	21
2007		1	1	2	7	9				2	8	10
2008	4		4		11	11				4	11	15
2009		1	1	1	7	8				1	8	9
2010				1	6	7	1		1	2	6	8
2011		4	4	2	2	4				2	6	8
2012	3	2	5		2	2				3	4	7
2013	5	4	9	3	8	11	2	1	3	10	13	23
2014				1	8	9		3	3	1	11	12
소계	33	29	62	14	68	82	3	4	7	50	101	151

주: 1) 각 년도 말의 과제완료 기준임.

2)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총 4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1. 지침 연구

재정투자평가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사업부문별 표준지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지침·요령 등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제 지침의 제정·개정 연구를 일컫는다.

2014년 말 기준 총 50건의 지침 연구가 수행되었고, 3건의 지침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전체 지침의 목록은 다음 <표 VII-2>~<표 VII-6>과 같다.

<표 VII-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6판)	수행 중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6판)	2013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1
	(제3판)	2003
	(제4판)	2008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제1판)	2004
의료시설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2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3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2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연구개발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8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	-	2012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9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2013
산업단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수행 중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수행 중

〈표 VII-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5. 12.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	2009. 6.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2007. 1.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0. 6.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	2007. 12.
(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11. 8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3. 8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4.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2.
	2007. 2.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2007. 10.
-도로사업-	2008. 5.
	2009. 8.
	2010. 4.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2008. 6.
-환경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2007. 3.
-도로부문-	2010. 4.
	2007. 12.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4. 8.

〈표 Ⅶ-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2005. 5.
	2005. 8.
	2006. 9.
	2009. 3.
	2010. 1.
	2011. 4.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2007.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005. 5.
	2005. 8.
	2006. 9.
	2009. 3.
	2010. 1.
	2011. 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05. 11.
	2006. 9.
	2008. 11.
	2009. 3.
	2010. 1.
	2011.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09. 4.

〈표 Ⅶ-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수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2013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3

2. 일반 연구

지침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를 일컫는다. 2014년 말 기준 총 101건의 일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반 연구 과제 목록은 다음 <표 VII-6>~<표 VII-8>과 같다.

<표 VII-6>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1999	총괄백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
200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2000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
2000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00	VE 방법론 및 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
2001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1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
2001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방안 및 평가방법론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II
2001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II)
2004	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	도시철도사업 재원조달 방향 및 민자가능성 검토
2004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I: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7	국가교통DataBase(KTDB)검토 재정투자평가 연구사업
2009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
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2011	시설부대경비 산정의 적정성 비교 연구
2011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재검토
2011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연구
2012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연구
2012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2013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013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2013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2013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표 Ⅷ-7〉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06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2006	BTL사업 평가방안
2006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2006	BTL사업 유지관리방안
2006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평가의 위험반영방안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관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병영막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하수관거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2006	BTL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2006	민자사업(BTL)의 민간 Advisory 도입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BTO 용지보상비 급증 대책에 관한연구
2006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활용 개선방안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공공투자관리센터데이터베이스 구축(I)연구
2007	중장기PPPs 종합계획 및 전략
2007	BTL학교복합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2007	도로·철도·항만(BTO) 표준재무모델 연구
2007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환경분야수익형 민자사업(BTO)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민간투자법령정비방안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의후생효과 분석과 최적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2008	환경기초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방안 연구
2008	동남아민간투자사업 진출환경 연구
2008	도시철도분야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
2008	임대형민자사업(BTL) 성과평가 및 발전전략 연구
2008	일본과 한국의 민자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협상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8	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2008	민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 제세공과금, 부대비용의 산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9	개도국인프라사업에 있어 개발원조와 PPP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9	BTL사업 표준 재무모델 연구

년도	과제명
2009	평가관리 및 평가위원 POOL 관리방안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한 중국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연구
2009	BTL 사업시설관리 운영지침 작성요령 연구
2009	기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수요증대방안 연구
2010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등 3개 요령 개정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에 관한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도로민자사업의 적정통행료 수준 관리방안
20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2010	WTO GPA, FTA체결 국가별 협정 및 민간투자법과의 비교분석 연구
2011	BTL표준실시협약 해설 연구
2011	민자사업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연구
2012	민간투자사업운영비 실태 연구: 최소운영수입보장있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2013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2013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2013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201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2013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2014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2014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2014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2014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표 VII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13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2014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2014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는 다음 <표 VII-9>와 같이 총 12건이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침연구 1건과 일반 연구 8건 등 총 9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반 연구 총 3건이 수행되었다.

<표 VII-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2014	-	-	-	1	8	9	-	3	3	1	11	12

주: 과제기간이 2014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2014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의 목록은 다음 <표 VII-10>과 같다.

<표 VII-10>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연번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1	연구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연구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연구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연구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연구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연구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 분석 연구
9	지침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연구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11	연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연구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주: 과제기간이 2014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014년 민자사업 교육은 주무관청과 민간기업의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 562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민간투자사업 기초교육과 민간기업 대상 민간투자사업 교육을 통합하여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에서 2014년에 실시한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

〈표 VIII-11〉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수행 실적

연번	교육과정명	비고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 교육	전문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정책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2014년 국제협력 및 국제교육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회의·세미나 12회, 개도국 공무원 교육 3회, 방원회의 및 방문교육 총 7회가 아래와 같이 수행되었다. 특히 주된 성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와 민간투자사업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를 주목할 수 있다.

〈표 VIII-12〉 201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비고
KDI 주최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6.3~5, 리마) 및 공동연구 수행	국제세미나
	2	OECD-KDI Workshop 참석(11.26~29, 파리) 및 공동연구 수행	국제세미나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0.30~31, 서울)	국제세미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12.9~10, 서울)	국제세미나

	연번	사 업 명	비고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11.3~4, 아스타나)	개도국 공무원 교육
	6	에멘 재정부 고위공무원 방원(2.26)	개도국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11.18)	개도국 공무원 교육
KDI 방원	1	WBI Singapore 방원(1.16)	방원회의
	2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 방원회의(1.27)	방원회의
	3	도로공사 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관련 방원(3.17)	방원회의
	4	베트남 공무원 교육 강의(10.29)	방문교육
	5	ASEAN 공무원 교육 강의(11.3)	방문교육
	6	미얀마 공무원 교육 강의(11.6)	방문교육
	7	태국 공무원 민자시설 현장방문지원(12.6~14)	방문교육
KDI 참석	8	제7차 OECD 연례 PPP 세미나 참석(2.17~18, 파리)	국제회의
	9	APEC PPP Panel Meeting 참석(2.17, 하이난)	국제회의
	10	베트남 PPP Decree Meeting 참석(4.7~8, 하노이)	국제회의
	11	UNCITRAL PPP 세미나 참석(6.9~10, 송도)	국제회의
	12	APEC 민자 세미나 참석(6.26~27, 대련)	국제회의
	13	가나 Global PPP Conference 컨퍼런스 참석(8.18~23, 아크라)	국제회의
	14	제6차 ADB Knowledge Sharing Platform 세미나 참석(11.24~27, 북경)	국제회의
	15	한중전략대화 관련 세미나 참석(12.16~18, 북경)	국제회의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InfraInfo DB system은 민간투자사업(수익형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업)과 재정투자평가사업(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단계별 주요자료를 대상으로 DB구축을 하였으며,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사업계획과 사업검토 결과를 구분하여 DB구축을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후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제정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 방식이 도입되어 정부고시사업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4년 말까지 총 70415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1999년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받아 총 900여건의 사업을 검토를 해왔다.

이에 대한 자료가 향후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InfraInfo DB system으로 DB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DB 구축대상은 1994년부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자료이며, KDI PIMAC에서 1999년과 2002년부터 검토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사업계획과 검토결과 자료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고 및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704건으로 수익형민자사업이 246건, 임대형민자사업은 458건의 추진단계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총 903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676건, 타당성재조사가 227건의 사업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표 VII-13〉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구분	사업	건수	비고
민간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형민자사업 • 임대형민자사업 	246건 458건	추진단계별 자료 DB화
재정투자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재조사 	676건 227건	사업계획 및 검토결과 DB화

시스템관리는 크게 보안관리, 백업관리, SW 및 웹프로그램 정기 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안은 웹서버 보안, DB 암호화 등으로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고, 백업은 매일 부분백업과 동시에 일주일마다 전체백업을 시행하고 있다. DBMS와 웹프로그램은 1개월마다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여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15) 2014년 12월 기준 제3차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수

〈표 Ⅶ-14〉 시스템 관리내역

구 분	프로그램	보유량	비고
보안	서버보안	2	웹/DB 서버 접근 통제
	DB 암호화	1	개인정보 및 보안 자료
백업	백업	1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DBMS	Oracle 11g	1	-
웹프로그램	웹 서비스	2	-

2014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사이트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받았으며, 웹소스, WAS, 서버 OS 상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관련하여 2015년 상반기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표 Ⅶ-15〉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

구분	보안 취약점	보안 조치
Web 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Info DB system - 경로조작 및 자원삽입 - 부적절한 자원 해제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 하드코어된 비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Info DB system의 Web source를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MAC 평가관리시스템 SSL 적용
W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Web 솔루션(Tomcat)에 대한 보안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솔루션 대체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x OS 취약점 보안 - 계정관리 - 파일시스템 설정 - 네트워크 재설정 및 계정제한 - 주요 서비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 설정파일 재설정

제 2 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 I 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1. 국가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10.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융, 박지영 - 외부 연구진: 김의준(서울대), 임채성(위더스디엠피)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연구부문에 대한 부가가치 편익 산정, 생산시설 및 관광시설에 대한 편익 추정 - 비용추정: 규모 검토 대안에 대한 주무부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비용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¹⁾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양구군	
사업규모	부지면적 총 23.6ha (국가연구거점(영양) 7.0 ha, 영양군 9.0ha, 강원도 양구군 7.6ha)	
총사업비(억원)	468.21	479.88 (473.77)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농림축산식품부 / 경상북도, 영양군	
B/C	-	1.0
AHP	-	0.512

- 주: 1) 최종 사업계획서 기준
 2)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3) 분석은 2011년도 말 기준임.
 4) 용지보상비의 괄호는 국공유지 제외 금액임.
 5) 장비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운영설비비로 운영개시 시점에 반영하였음. 운영비, R&D 비용

2. 국립아트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종연, 이경배 - 외부 연구진: 이주석(호서대), 성기택(디자인문박디엠피)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유사시설 검토 및 수요추정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 검토 - 비용추정: 설계기준의 적정성 및 필요시설 구성 검토, 적정 공사비 단가 적용 필요 -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비용 및 편익의 적정범위 설정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¹⁾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내(구, 하야리아부대)		
사업규모	부지: 29,408㎡ 연면적 19,862㎡	부지: 29,408㎡ 연면적: 19,862㎡	부지: 29,408㎡ 연면적: 20,155㎡
총사업비(억원)	974.44	937.97 (995.32)	951.79 (1,009.14)
사업기간	2013 ~ 2017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 전액 국고		
B/C	-	1.05	1.06
AHP	-	-	0.501

주: 1) 용지는 이미 매입이 이루어져 있어 용지보상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예비비 산정 시에는 제외하였음. 괄호()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3.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신영철(대진대학교), 이관표(업앤이)
주요 논의사항	-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 -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인근지역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특수시설(수증전망대)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지질 및 지형을 고려한 건축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4,379㎡ (조성부지 69,300㎡, 보존녹지 45,079㎡) - 건축 연면적: 12,260㎡ (육상시설 10,000㎡, 해상시설 2,260㎡) - 옥외전시시설 46,730㎡, 기타시설 5,528㎡	- 부지면적: 114,379㎡ (조성부지 69,300㎡, 보존녹지 45,079㎡) - 건축 연면적: 12,260㎡ (육상시설 10,000㎡, 해상시설 2,260㎡) - 옥외전시시설 46,730㎡, 기타시설 6,522㎡
총사업비(억원)	1,359	1,165.27
사업기간	2013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경상북도 / 울진군 (국고 1,202억원(88%), 지방비 157.5억원(12%))	
B/C	-	1.17
AHP	-	0.623

4.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박보영 - 외부 연구진: 남정호(이정회계), 임채성(위더스)
주요 논의사항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편익항목 설정 및 산정 방법론 검토 - 운영계획 및 사업세부시설계획 적정성 검토 - 건설기간 중 부산공동어시장 대체 운영 방안에 대한 부편익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부산공동어시장	
사업규모	- 부지면적 64,247㎡ - 연면적 81,724㎡ (위판장 32,474.52㎡, 업무시설 20,679.06㎡, 판매시설 4,546.08㎡, 냉동공장 5,919.12㎡, 지원시설 4,125.95㎡, 주차장 14,024.52㎡)	- 부지면적 64,247㎡ - 연면적 78,248.16㎡ (위판장 28,666.44㎡, 업무시설 20,932.06㎡, 판매시설 4,546.08㎡, 냉동공장 5,919.12㎡, 지원시설 4,159.94㎡, 주차장 14,024.52㎡)
총사업비(억원)	3,035 (건축비 2,140억원, 부지확보비 895억원)	2,409.05 (국공유지 포함: 2,751.30억원)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국고지원비율 추후협의 예정) (당초 사업계획서 총사업비(건축비) 2,140억원은 국고 70%/지방비 30%로 제시됨)	
B/C	-	2.37
AHP	-	0.622

5.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송인호,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이현(알투코리아), 오현석(해안건축)
주요 논의사항	- 편익추정: 기금사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 - 비용추정: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에 대한 적정 비용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지 활용 재건축	
사업규모	대지면적 3,068평 건물규모 44,253평	
총사업비 (억원)	3,674 (낙찰률 미적용시 6,009.30)	6,294
사업기간	2014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교육부 / 국고 100%(자체부담)	
BC	-	1.03
AHP	0.516	

6. 서울대병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정욱, 조영희 - 외부 연구진: 홍석철(서강대), 김광우(창조건축)
주요 논의사항	- 편익추정: 본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개방형 융합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추정 항목과 방법론 설정이 쟁점. 현재 예타 수행중인 연구중심병원을 포함, 기타 사업간의 중복 없도록 검토 - 비용추정: 연구인력과 연구공간에의 중복성 확인이 필요 - 기타: 사업부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심의 및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학) 내 구간호학과 및 간호기숙사 부지		
사업규모	- 사업부지 면적: 6,492㎡ - 건축연면적: 31,352㎡ (지상: 23,980㎡, 지하: 7,372㎡) - 건축규모: 지상 9층, 지하 2층		
총사업비(억원)	1,174 (시설비: 899억원, 장비구입비: 275억원)	1,085	975
사업기간	2014 ~ 2016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서울대병원 / 국고 30%, 자체 70%		
B/C	1.70	0.52	0.56
AHP	-	-	0.227

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수진, 김희영 - 외부 연구진: 조창익(한림대), 오창식(삼우)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을 위한 진료권 설정 및 인구추계 방법 논의 - 구체적인 건축계획 및 병상수 등 사업계획 명확화 필요 - 임상시험센터(GMP시설 포함) 건립에 따른 임상연구 기능에 대한 편익 산정 여부 검토 - 적정 진료권 설정 및 수요추정을 위한 세종시 인구 설정 논의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세종시 도담동 종합의료시설부지 1-4구역	
사업규모 (지원규모)	- 병상수: 500병상(병상당 면적: 115.7m ²) - 면적 및 시설 규모 · 대지면적: 35,994m ² · 시설연면적: 70,545m ² · 주차대수: 775대(지상 542대, 지하 233대) - 소요인력: 총 939명(병원부 902명, 임상시험센터 37명)	
총사업비(억원)	2,677.22	2844.10
사업기간	2014 ~ 2017년(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교육부(시행처: 충남대학교병원) / 국고 100%	
B/C	1.26	0.94
AHP	-	0.537

8.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형태, 박보영 - 외부 연구진: 황현명(투에이치엠), 남정호(이정회계법인)
주요 논의사항	- 국고지원의 근거 및 적정성 검토 -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편익추정(업무환경개선편익 추정) - 사업시행 및 미시행 대안 선정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일원(올림픽회관 인근)	
사업규모	올림픽회관 리모델링(24,303㎡), 증축(20,330㎡),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25,200㎡), 지하주차장 이설(8,634㎡)	올림픽회관 리모델링(24,303㎡), 증축(20,330㎡),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25,200㎡), 지하주차장 이설(8,634㎡)
총사업비(억원)	1,264(국고(기금) 100%)	1,228.8(국고(기금) 100%)
사업기간	2012 ~ 201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고 100%	
B/C	-	1.00
AHP	-	0.514

9. 용사의 집 재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탁경, 박미수 - 외부 연구진: 이관영(중앙대), 이종찬(간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재건축 사업에 대한 미시행 대안의 설정 - 수요추정: 세부시설별 수요 추정 - 비용추정: 세부시설별 적정 공사비의 산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0-708번지	
사업규모	- 대지면적: 3,168.00㎡ - 건축면적: 1,503.00㎡ - 연면적: 40,436.57㎡	
총사업비(억원)	1,297.90	1,935.86
사업기간	2013 ~ 2015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방부(육군본부) / 군인복지기금 100%	
B/C	-	1.09
AHP	-	0.551

10.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장준경, 김동준, 채수복 - 외부 연구진: 권오상(서울대), 유진근(건일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CVM 설문조사 결과 가구당 WTP는 2,435원으로 추정 - 비용추정: 중복성격의 시설에 대한 기능 통폐합 및 규모 축소 반영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617.6ha	
총사업비(억원)	1,027	989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산림청 / (국고 864.41억원, 지방비 62.33억원)	산림청 / (국고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B/C	1.55	1.21
AHP	-	0.644

11.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이호준, 박혜원 - 외부 연구진: 유승훈(서울과기대), 이기상(CMX 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편익 산정 - 비용추정: 현지 단가와 국내 공사비 단가 비교를 통한 총사업비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43, Bd des Capucines & 24, rue des Capucines 75002 Paris France	
사업규모	- 연면적: 3,000~3,500m ² - 지상6층, 지하1층	- 연면적: 3,000
총사업비(억원)	800	883.9
사업기간	2013 ~ 2015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국고 100%	
B/C	-	1.29
AHP	-	0.697

12.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용, 최지은 - 외부 연구진: 송준혁(한국외대), 윤희석((주)건우기술단), 이용일((주)아이엠디)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미시행 대안 설정, 해군정비창에 위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와 해군정비창을 이용하지 못해 민간위탁이 가능할 경우의 시나리오 검토 - 비용추정: 가덕도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이 본 사업에 이후에 추진될 경우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검토안에 추가적으로 300m 방파제를 연장하는 사업계획 대안 추가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제시1안	제시2안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대교 ~ 장림고개					
사업규모	- 부지: 137,712m ² - 드라이도크 1만톤 및 1천톤급 선거대, 각종 수리공장, 유류 저장시설·본관, 무기고 및 창고시설 등					
총사업비(억원)	2,091.24	2,369.24	2,419.82	2,805.27		
사업기간	2015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국고 100%					
B/C	-		사 _타 외I	사 _타 외II	사 _타 외III	사 _타 외IV
			0.52	0.51	2.32	1.98
AHP	-		0.380	-	-	0.654

13. 고위험 임신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정욱, 조혜정, 위서연 - 외부 연구진: 정완교(한림대), 김정호(아주대)
주요 논의사항	- 사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기준 검토 - 고위험 임신부의 규모 및 추세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지원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임상기준 1) 조산(조기진통): 34주 미만에서 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를 받은 임 산부 2) 분만시 과다출혈: 분만과정에서 과다출혈로 5팩 이상의 수혈을 받은 임신부 * 지원금액: 3백만원 한도내 의료 실비 지원	- 지원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임상기준 1) 조산(조기진통): 34주 미만에서 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를 받은 임 산부 2) 분만시 과다출혈: 분만과정에서 과다출혈로 5팩 이상의 수혈을 받은 임신부 3) 중증 임신중독증: 유의한 단백뇨 를 동반한 임신성고혈압(O14), 자간(O15)의 입원환자 * 지원금액: 3백만원 한도내 의료 실비 지원
총사업비(억원)	3,045	853
지원규모	2014년 기준 19,000명 (주무부처 제시)	2014년 총 15,469명 예상 2018년 총 22,165명 예상
사업기간	2014 ~ 2018년(5년) / 계속사업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국고 48%, 지자체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AHP	-	0.617

14.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도일, 정동호 - 외부 연구진: 조승국(한세대), 최세재(수성)
주요 논의사항	- 생태환경용지 조성에 따른 국민들의 지불의사액 추정 - 사업계획의 확정 및 공사비 세부 근거 불확실성 해소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새만금 간척지내 북부권역 및 복합도시 남측 (변경) 복합도시 남측 일부	
사업규모	복합도시 북측, 남측 총 2.43km ² (변경) 복합도시 남측: 0.81km ²	
총사업비(억원)	3,030 699(변경)	634
사업기간	2011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새만금지방환경청 / 국비 100%	
B/C	-	1.99
AHP	-	0.770

15.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김용성, 차병섭 - 외부 연구진: 이상고(부경대), 정덕수(선박안전기술공단)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익추정: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본 사업에 한정된 편익산정 방법, 계량화된 편익 이외의 편익에 대한 반영 - 비용추정: 조사선의 규모 및 사양의 적정성, 비용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원 · 총톤수: 1,500 ~ 2,000톤급 전기추진 선미트롤형(강선) 1척 · 주요치수: 길이(LOA) 71.00 × 폭 13.5 × 깊이 7.4 × 흘수 4.7m · 추진방식: 전동(Azimuth) 추진기 2기, Transformer, Converter · 추진기관: 디젤발전기 5기, 추진모터 · 항속거리: 약 10,000해리(연속운항: 30일이상) · 항행구역: 동중국해, 대화퇴를 포함한 근해구역 · 승선인원: 총 39명(승무원 24명, 연구원 15명) 	
총사업비 (억원)	500	508
사업기간	2015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립수산과학원 / 국고 100%	
B/C	-	0.88
AHP	0.605	

16.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윤희숙, 이영옥, 권형준, 한영은 - 외부 연구진: 이항용(한양대), 민희철(한성대), 진상현(경북대)
주요 논의사항	- 정책성 검토: 전달체계, 비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 정책성 검토 - 비용효과추정: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액 검토, 지원금액에 대한 효과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	
사업규모	중위소득 50%이하 생계급여 최고재산액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1,427,996가구 추정)	
총사업비 (억원)	10,788 7,345	7,345
사업기간	2015 ~ 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산업통상자원부	
B/C	-	0.27
AHP	0.539	

1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한성민, 조민혜 - 외부 연구진: 유한욱(한림대) - 자문위원: 조창익(한림대)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사업추진주체에서 대상자 기 제시 - 비용추정: 분유 및 기저귀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 - 효과성 분석: 저소득층에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시 소득효과로 인한 출산자녀수 증대 효과 분석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	
지원대상 및 요건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녀: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	
사업규모 (지원규모)	기저귀: 지원대상 전원(100%) 조제분유: 모유수유가 불가능 ¹⁾ 한 경우로 한정(5%)	
총사업비(억원)	2,396 (중앙정부 총사업비)	2,952
사업기간	2014 ~ 2018년(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자체 보조(국고 48%, 지방비 52%)	
B/C	-	0.77% ²⁾
AHP	-	0.512

주: 1) 산모의 암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권장정책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 정책방향임을 고려, 모유수유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산모의 경우에 한해서만 조제분유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설명함.

2) 저소득층 그룹의 월 평균소득액 164.48만원에 대해 12개월동안 매월 7.5만원 규모의 기저귀 지원액(총 90만원)과 5%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의 월간 지원금액 14만원을 감안한 지원액을 합한 98.4만원으로 인해 증가하는 출산자녀 수 비율임.

1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종연, 최승안, 이경배, 박미수 - 외부 연구진: 이현(알투코리아), 유승훈(서울과기대), 임채성(위더스피엠디), 장현우(한국산업경제연구소)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 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조사의 한계 - 비용추정: 총사업비 항목구성의 일관성, 적정 콘텐츠개발사업 비용 추정, 운영비 산정방법 검토 - 수요 및 추정: 적정 수요추정방법론에 대한 검토, 적정 편익추정방법론의 선택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강원도 내 4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사업규모	3개 분야 12개 사업	3개 분야 11개 사업
총사업비(억원)	2,515.91	2,211.09
사업기간	2014 ~ 2018년 다만, 세부사업에 따라 상이함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 대 지방비 비율 70: 30	
B/C	-	2.45
AHP	-	0.680

19.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박용덕 - 외부 연구진: 손영태(명지대), 김성호(동성ENG)
주요 논의사항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에 따른 수단분담율 변화 - 무학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반영 시나리오 설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 하양읍 대조리 일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7.4km, B=35(6차로)				
총사업비(억원)	1,419.00	1,329.39	1,164.26		
사업기간	2015 ~ 2018년(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국고 50%, 지방비 50%				
B/C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0.80	1.08	0.90	1.21
AHP	-	-	-	0.609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검토안은 사업계획의 횡단구성을 준용한 안이며, 대안은 장래 보도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사면부를 제외한 안임.
 3) 시나리오1: 무학택지 개발지구 추진
 4) 시나리오2: 무학택지 개발지구 미추진

20.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김중태 - 외부 연구진: 박동주(서울시립대), 김석태((주)에스티앤씨)
주요 논의사항	- 시점부에서 터널 통과 후 IC와의 짧은 간격에 대한 기술적 검토 - 대안별 검토 요청(안); 원안(전구간 4차로 일괄시행), 대안1(단계별시행(1단계→2단계)), 대안2(1단계만시행(왕복4차로)), 대안3(1단계만시행(왕복2차로))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윗정림)~중구 대사동(보문5거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윗정림)~중구 대사동(보문5거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윗정림)~중구 산성동(사정공원로)		
사업규모	L=7.83km, 4차로	L=7.83km, 4차로/교량4개소/터널4개소	1단계: L=4.17km, 4차로/교량3개소/터널1개소 2단계: L=3.66km, 4차로/교량1개소/터널3개소	L=4.17km, 4차로/교량3개소/터널1개소	L=4.17km, 2차로/교량3개소/터널1개소
총사업비(억원)	2,820.45	2,976.08	2,990.51	1,787.89	1,159.29
사업기간	2013 ~ 2021년	2013 ~ 2021년	2013 ~ 2021년 2022 ~ 2026년	2013 ~ 2021년	2013 ~ 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대전광역시				
B/C	-	0.43	0.41	0.29	0.36
AHP	-	0.293	-	-	-

주: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1420(2013.08.13)의 대안별 검토 요청에 의거한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 과-422(2013.08.16) 공문을 통해 대안 검토가 통보됨.

2) 기본안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노선(L=7.83km, 2013~2021년)이며, 대안 1은 노선의 단계별 시행으로 1단계(L=4.17km, 2013~2021년) 후 2단계(L=3.66km, 2022~2026년) 시행, 대안 2는 1단계만(L=4.17km, 왕복 4차로) 시행, 대안 3은 1단계만(L=4.17km, 왕복 2차로) 시행하는 분석대안임.

21.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8.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구석모 - 외부 연구진: 김대관(경희대), 권혁찬(이산)
주요 논의사항	- 본 사업의 통행량 산정을 위한 레고랜드 관광수요의 추정 - 경제성 분석시 미시행 대안 처리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 (Steel Box)	대안 2 (PSC Box)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일대 (하중도 ↔ 근화동)		
사업규모	L=800m	L=1,055m (교량 900m, 토공 155m)	
총사업비(억원)	680	954.4	1,029.0
사업기간	2013 ~ 201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 국고 50%, 지방비 50%		
B/C	-	1.54	1.44
AHP	-	0.672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대안 1: 교량형식이 Steel Box Girder교임.

3) 대안 2: 교량형식이 PSC Box Girder교임.

22.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이성모(서울대), 박효기(우주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주변 도로의 교통량-지체함수(VDF) 결정 - 도로의 성격 및 위계에 따른 기하구조 결정 - 최근 배포된 자료로 보정한 광주시 내부통행량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상무지구)~광산구 산월동(첨단산단)	
사업규모	L=4.94km 6차로 신설	L=4.94km(4.59km) 6차로 신설(B=27m)
총사업비(억원)	1,956.0	1,645.3
사업기간	2015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 국고(조사·설계비 100% 및 공사비 50%) 지자체(용지비 100% 및 공사비 50%)	
B/C	-	1.10
AHP	-	0.567

주: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3.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백윤주 - 외부 연구진: 최재성(시립대), 노희찬(도화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시종점부와 주변도로 접속구간 등 접속방안 및 교차로 형식 결정 및 비용 반영 필요 - 사업노선의 방수제 기능 수행구간 선정, 방수제 예산 중복 조정 및 공사시기 조정 - 수요추정시 MP상 내부개발계획 반영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사업위치	전북 부안군 하서면(동서3축) ~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동서1축)			
사업규모	신설 26.7km(1단계 26.7km, 2단계 0km)			
총사업비(억원)	10,777.40	11,356.49	9,190.38	
사업기간	2014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새만금개발청 / 국고100%			
B/C	-	0.13	0.92	1.06
AHP	-	-	0.586	-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시나리오1: 개발계획이 모두 미실시되는 경우(신항만 및 산업단지 제외)
 3) 시나리오2: 「새만금 종합계획(Master Plan)」상 1단계 계획만 추진되는 경우
 4) 시나리오3: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임.

24. 서울외곽순환도로(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3.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장준경, 박재민 - 외부 연구진: 김태완(중앙대), 설영만(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부천시와 인천시의 도로건설비용분담 협의 - 장수IC를 폐쇄하고 서창~장수 고속도로를 유료화로 계획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영동선 서창JCT~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3.7km) 및 장수~서운 하부도로 개설(5.8km)	
사업규모	- 고속도로: 3.7km, 4차로 신설 - 하부도로: 5.8km, 4차로 신설(지하도로 포함)	
총사업비(억원)	6,176(재원분담 별도협의)	6,612
사업기간	2016 ~ 2022년(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국고 및 시비 분할협의 필요	
B/C	-	0.80
AHP	-	0.335

25.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정진혁(연세대), 김정찬(도화)
주요 논의사항	- 안산~북수원 구간 확장의 필요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영동고속도로 안산JCT~북수원IC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사업규모	L=12.8km, 6→8차로 확장	L=13.84km, 6→8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3,283.56	3,264.45
사업기간	2014 ~ 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 국가(국토교통부): 공사비 50% + 용지비(부대비) 100% - 한국도로공사: 공사비 50%	
B/C	-	1.30
AHP	-	0.605

주: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6.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3. 12.
연구진	- KDI 연구진: PIMAC - 외부 연구진: 이승재(서울시립대), 이창수(동부)
주요 논의사항	- 산업단지 통행 특성에 따른 원단위 산출 - 합활동을 고려한 통행패턴 고려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¹⁾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 고촌읍 풍곡리 간 연장 L=2.9km 연결도로 범위		
사업규모	- 고속도로: 3.7km, 4차로 신설 - 하부도로: 5.8km, 4차로 신설(지하도로 포함)		
총사업비(억원)	746.31		710.10
사업기간	2013 ~ 2016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김포시 / 국고 100%		
B/C	1.62	0.83	0.94
AHP	-	0.405	0.463

주: 1) 김포 향산지구 개발계획을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시나리오 2에 김포 향산지구를 반영하였음.

27. 광양(I)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3.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희영 - 외부 연구진: 정은성(과기대), 이영대(이원이엔지)
주요 논의사항	- 갯생공법 선정 및 갯생등급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복선화구간의 공급능력 기준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연장 61.76km · 노후관 갯생 43.56km · 복선화(대체관로) 18.2km 	
총사업비(억원)	2,031	1,684.82
사업기간	2013 ~ 2018년(6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시행청: 한국수자원공사) / 국고 30%, 수공 70%	
B/C	15.61	0.70
AHP	-	0.354

28.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이세환 - 외부 연구진: 최석준(서울시립대), 한능수((주) 선진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범위 설정에 따른 비용, 수요, 편익 구분의 필요성 - 기업입주수요의 타당성 검토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사업위치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647,048㎡ (기업집적단지 포함) - 연면적(물산업진흥시설): 38,036㎡	- 부지면적: 649,079㎡ (기업집적단지 포함) - 연면적(물산업진흥시설): 42,046㎡
총사업비(억원)	2,757(상용제외)	2,522(상용제외)
사업기간	2014 ~ 2016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환경부 / 국고 및 지방비	
B/C	-	1.28
AHP	-	0.579

29.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Tetra)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조숙진 - 외부 연구진: 박찬규(동국대), 박덕규(목원대)
주요 논의사항	- 기술별(WiBro, TETRA)구축 가능성 - 기술별 기술성숙도 검증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전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 무선통신 장비(교환기·기지국 포함) 및 통신망 회선 구성 · 재난대응 공통분야(8대 분야*) 321개 필수기관				
총사업비(억원)	TETRA 구축시: 7,301(6,694)	TETRA	A(원안): 7.402.40 B(검토안): 7.402.40		
사업기간	2013 ~ 2016 (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안전행정부				
B/C	-	대안구분		시나리오1 (단말기5년)	시나리오2 (단말기9년)
		TETRA	B	0.77	0.84
AHP	-	TETRA	B	0.295	-

30.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Wibro)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조숙진 - 외부 연구진: 박찬규(동국대), 박덕규(목원대)
주요 논의사항	- 기술별(WiBro, TETRA)구축 가능성 - 기술별 기술성숙도 검증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전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 무선통신 장비(교환기·기지국 포함) 및 통신망 회선 구성 · 재난대응 공통분야(8대 분야*) 321개 필수기관				
총사업비(억원)	WiBro 구축시: 6,590(6,060)	WiBro	B(검토안): 6,224.89 C(실외고려): 7,290.47		
사업기간	2013 ~ 2016(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안전행정부				
B/C	-	대안구분		시나리오1 (단말기5년)	시나리오2 (단말기9년)
		WiBro	C	0.54	0.57
AHP	-	WiBro	C	0.230	-

3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백윤주 - 외부 연구진: 정진혁(연세대), 라정균(동명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비용추정을 위한 단가 검토 필요 - 차량구입비 반영 여부 확인 - 주변 철도노선 반영 여부 확인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 대한 별도 분석 여부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신경의선 수색역(서울 은평구 수색동)~경원선~중앙선 서원주역 (강원도 원주시)		
사업규모	- 신경의선: 전차선, 신호 - 경원선: 전차선, 신호 - 중앙선: 궤도, 전차선, 신호	- 신경의선: 전차선, 신호, 통신 - 경원선: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 중앙선: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 신경의선: 신호 - 경원선: 전차선, 신호 - 중앙선: 궤도, 전차선, 신호
총사업비(억원)	1,431	2,152	1,539
사업기간	2014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1.08	1.42
AHP	-	-	0.639

3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PIMAC - 외부 연구진: 김연규(KOTI), 유제남((주)도화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주변지역 개발계획(신서혁신지구 등) 관련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¹⁾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경산시 하양읍 하양역		
사업규모	L=8.77km 정거장 3개소(신설1, 개량2)	L=8.75km 정거장 3개소(신설1, 개량2)	
총사업비(억원)	2,277.9	2,789.0	
사업기간	2014 ~ 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대구광역시(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 국고 60%, 대구광역시 10%, 경상북도 10%, 경산시 20%		
B/C	1.17	0.82	0.95
AHP	-	0.451	0.505

주: 1)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시나리오 2에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하였음.

3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1. 12.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흥구, 박상준, 양인석 - 외부 연구진: 손의영(시립대), 김성수(서울대), 한종수(삼보)
주요 논의사항	- GTX의 광역철도 지정 적합성 검토 - KTX 공용구간 운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산정 관련 -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당초	변경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업위치	킨텍스~수서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킨텍스~삼성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킨텍스~삼성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사업규모	- 총연장: 140.7km - 정거장: 25개소 - 차량기지: 3개소	- 총연장: 131.0km - 정거장: 19개소 - 차량기지: 3개소	- 총연장: 131.0km - 정거장: 19개소 - 차량기지: 3개소	
총사업비(억원)	130,638	-	115,840	S 2-1: 118,525 S 2-2(A노선): 30,639 S 2-2(B노선): 46,038 S 2-2(C노선): 41,155
사업기간	2011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해양부 / 국고, 지방, 민자, 광역교통개선비(화성 동탄(2) 등)			
B/C	1.17	-	0.47	S 2-1(통합): 0.84 S 2-2(A노선): 1.33 S 2-2(B노선): 0.33 S 2-2(C노선): 0.66
AHP	-	-	-	S 2-1(통합): 0.431 S 2-2(A노선): 0.595 S 2-2(B노선): 0.307 S 2-2(C노선): 0.374

- 주: 1) 시나리오 1: 독립요금제(1800원+40원/km)/타수단 환승할인 불가/통합건설/ A+B+C 동시개통.
 2) 시나리오 2-1: 통합요금제(2,150원+20/km)/타수단 환승할인 가능/통합건설/ A+B+C 동시개통.
 3) 시나리오 2-2(A노선): 통합요금제(2,150원+20/km)/타수단 환승할인 가능/개별 건설/A노선 단독개통.
 4) 시나리오 2-2(B노선): 통합요금제(2,150원+20/km)/타수단 환승할인 가능/개별 건설/B노선 단독개통.
 5) 시나리오 2-2(C노선): 통합요금제(2,150원+20/km)/타수단 환승할인 가능/개별 건설/C노선 단독개통.

34. 원주~강릉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김세환 - 외부 연구진: 노정현(한양대), 이이중(태조)
주요 논의사항	- 사업 미시행시 네트워크 설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강원도 강릉시(남강릉~강릉)	
사업규모	- 연장: 9km862(신설) · 본선: 7km962 · 삼각선: 1km900 · 일부 영동선 활용 - 정거장: 1개소 (현 강릉역 반 지하화)	- 연장: 9km862(신설) · 본선: 7km962 · 삼각선: 1km900 · 일부 영동선 활용 - 정거장: 1개소 (현 강릉역 반 지하화)
총사업비(억원)	2,997.86	4,625.94
사업기간	2013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고 100%	
B/C	-	0.11
AHP	-	0.413

주: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35.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석영, 이경배 - 외부 연구진: 최창호(전남대), 구본수(건화(주))
주요 논의사항	- 보상비 등 사업비 항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해양안전에 대한 편익 추정 방안 - 정책적인 본 사업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제3항로와 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전라남도 광양항 항계선 내 여천항로(묘도수도) 및 항계선 밖의 특정해역				
사업규모	- 총 준설량: 7,485천m ³ · 토사준설 4,931천m ³ · 암준설 2,408천m ³ · 표토제거 32천m ³ · 암석절취 114천m ³	- 총 준설량: 7,103천m ³ · 토사준설 4,514천m ³ · 암준설 2,443천m ³ · 표토제거 32천m ³ · 암석절취 114천m ³	- 총 준설량: 6,698천m ³ · 토사준설 5,602천m ³ · 암준설 950천m ³ · 표토제거 32천m ³ · 암석절취 114천m ³		
총사업비(억원)	5,264	5,450.53	3,352.40		
사업기간	2014 ~ 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전액 국고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B/C	-	시나리오 I-1 0.12	시나리오 II-1 0.12	시나리오 I-2 0.08	시나리오 II-2 0.07
AHP	-	-	-	0.354	-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검토안은 사업계획의 항로폭을 준용한 안이며, 대안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라 항로폭을 축소 한 안임.
 3) 시나리오 I-1은 대형유류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검토안 시행 시의 경제성 분석을 의미함.
 4) 시나리오II-1은 대형유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토안 시행 시의 경제성 분석을 의미함.
 5) 시나리오 I-2은 대형유류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안 시행 시의 경제성 분석을 의미함.
 6) 시나리오II-2은 대형유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 시행 시의 경제성 분석을 의미함.

**36.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손경원 - 외부 연구진: 고용기(영남대), 이육한(건일)
주요 논의사항	- 준설토 발생 수요 및 발생시기의 불확실성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수도(水島) 동남측 해역 일원	
사업규모	투기장 호안 1.6km	투기장 호안 1.58km
총사업비(억원)	834.00	1,038.95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B/C	-	1.07
AHP	-	0.568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홍구, 백윤주 - 외부 연구진: 박효기(천마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에 제시된 사업 연장 및 시종점 확인 필요 - 본 사업은 국도III등급으로 입체 교차로 계획이 도로 기능 상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 안
사업위치	충남 공주시 송선동 장기면(송선교차로)~쌍신동(공주IC)		
사업규모	연장 L=3.14km, 6차로	연장 L=3.12km, 6차로	
총사업비(억원)	689.00	797.46	717.53
사업기간	2014 ~ 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전액국고		
B/C	-	-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검토안은 사업계획을 준용한 안임.
3) 대안은 자전거 도로를 제외한 안임.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김선경 - 외부 연구진: 최재성(서울시립대), 권혁찬(이산)
주요 논의사항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요 반영방법 - 장래 수요추정을 위한 존 세분화 및 추가 교통존 구성 - 환승주차장 운영계획, 올림픽 전용도로의 네트워크 반영 - 구간별 보행자 도로 고려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일대	
사업규모	① 지방도 456호선(월정삼거리~차항) L=7.2km(2→4차로)	좌동
	② 군도 12호선(유천~용산) L=3.0km(2차로 확포장)	좌동
	③ 진부IC~호명교 L=2.7km(2→4차로)	좌동
	④ 차항~횡계(대관령면 우회도로) L=3.5km(2차로 신설)	좌동
	⑤ 선수촌(미디어촌)~경기장 L=2.4km(4차로 신설·확장)	신설구간 2차로 신설, 기존구간 4차로 확장
	⑥ 국도 7호선(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L=1.5km(2→4차로)	좌동
	⑦ 강릉역~경기장 L=1.0km(4차로 신설)	신설구간 보행자도로, 기존구간 확장
총사업비 (억원)	2,585	2,056
사업기간	- 기본 및 실시 설계: 2015. 1. ~2015. 8. - 공사 발주 및 시행: 2015. 9. ~2017. 12.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국고보조(재원분담: 국고 70%(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30%)	

3. 주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시설 안전성 확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오규창(동부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공사 후 기존터널 조치계획 검토 필요 - 전액국비 추진의 타당성 검토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안 (전구간 NATM)	2안 (TBM+NATM)
사업위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공리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사업규모	- 취수시설 (취수탑 54만m ³ /일, 수문) - 터널(D=3.2m, 11.5km) - 사갱(3개소) - 가물막이(2개소) 등	- 취수시설 (취수탑 54만m ³ /일, 수문) - 터널(D=3.2m, 11.5km) - 사갱(3개소) - 가물막이(2개소) 등	- 취수시설 (취수탑 54만m ³ /일, 수문) - 터널(D=3.2m, 11.5km) - 사갱(1개소) - 가물막이(2개소) 등
총사업비(억원)	1,764.88	1,687.88	1,641.10
사업기간	2015 ~ 2019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국가(현물출자)		
B/C	-	-	-

주: 1)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1안은 터널시공시 전구간 NATM공법 적용.
 3) 2안은 터널시공시 TBM+NATM공법 병행적용.

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유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유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융, 박보영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기준 및 방법론 검토 -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나리오 처리방안 - 행정부 대기 공간 등에 대한 순증분 또는 증가분 반영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국회 현 후생관 및 후생관 인근 주차장 부지에 신축		
사업규모	43,438㎡	24,096㎡	33,098㎡
총사업비(억원) (용지비 포함)	959.51	632.27 (954.82)	863.40 (2,016.37)
사업기간	2014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회사무처 /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B/C	-	-	-

5.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9호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박미수 - 외부 연구진: 황현명(투에이치엠건축)
주요 논의사항	-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 검토 필요 - 사업예정지 무상사용가능성 검토 -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기준에 대한 논의 · 규모확대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용산 가족공원 부지		
사업규모	- 연면적: 43,800m ² - 야외전시: 9,717m ²	- 연면적: 33,869m ²	
총사업비(억원)	3,385.01	3,193.12 (2,337.85)	2,045.32 (1,798.74)
사업기간	2014 ~ 2020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 100%		
B/C	-	-	-

주: 괄호안의 사업비는 부지 무상 이용 시 총사업비임.

6.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유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한금용, 박미수 - 외부 연구진: 박태성(이가건축사사무소(주))
주요 논의사항	- 지방합동청사의 적정규모 산정 기준 - 추가부지확보에 대한 계획 미비 - 특수시설 규모 산정 기준 검토 필요 - 변경된 특수시설 요구안 내용 검토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현황	요구(2014. 4) ⁴⁾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북항재개발 지구			
사업규모	- 9개 기관 - 정원: 359명	- 9개 기관 - 정원: 359명	- 9개 기관 - 정원: 359명	- 9개 기관 - 정원: 359명
	- 연면적: 7,670㎡	- 대지: 24,963㎡ - 연면적: 43,480㎡	- 대지: 24,963㎡ - 연면적: 28,995㎡	- 대지: 24,963㎡ - 연면적: 23,670㎡
총사업비(억원)	967.06		813.97	604.81
사업기간	2014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안전행정부 /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B/C	-		-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2)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3) 지방합동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 통보(타당성 심사과-303(2014.4.30))

4) 검토안: 지하주차장 ○/ 대안: 지하주차장 X

7.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유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석영, 이정배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사사무소(주))
주요 논의사항	- 이전대상기관의 불확실성 존재 - 지방합동청사의 적정규모 산정 기준 - 특수시설 규모 산정 기준 검토 필요 - 변경된 특수시설 요구안 내용 검토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현황	요구안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도청 신도시 지구 내			
사업규모	- 5개 기관 - 정원: 142명	- 5개 기관 - 정원: 142명	- 5개 기관 - 정원: 141명	- 4개 기관 - 정원: 107명
	- 연면적: 9,016㎡	- 대지: 10,000㎡ - 연면적: 21,100㎡	- 대지: 10,000㎡ - 연면적: 12,811㎡	- 대지: 8,000㎡ - 연면적: 8,501㎡
총사업비(억원)	473.71		330.01	220.88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안전행정부 /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B/C	-		-	-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2)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3) 지방합동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 통보(타당성 심사과-303(2014.4.30))
 4) 보상비는 총사업비 합계에서 제외함.

8.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유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석영, 이경배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사사무소(주))
주요 논의사항	- 이전대상기관의 불확실성 존재 - 지방합동청사의 적정규모 산정 기준 - 특수시설 규모 산정 기준 검토 필요 -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도화지구 개발계획 및 용지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 변경된 특수시설 요구안 내용 검토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현황	요구안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지역 내			
사업규모	- 6개 기관 - 정원: 280명 - 연면적: 14,992㎡	- 6개 기관 - 정원: 280명 - 대지: 20,000㎡ - 연면적: 34,500㎡	- 6개 기관 - 정원: 277명 - 대지: 12,000㎡ - 연면적: 23,267㎡	- 4개 기관 - 정원: 234명 - 대지: 10,000㎡ - 연면적: 18,498㎡
총사업비(억원)	767.18		593.40	473.53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안전행정부 /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B/C	-		-	-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2)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3) 지방합동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 통보(타당성 심사과-303(2014.4.30))
 4) 보상비는 총사업비 합계에서 제외함.

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유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7호 법령(「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정완교(한림대학교), 오창식(삼우건축)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진료권 설정을 통한 적정 병상수 추정 - 비용추정: 사업계획 및 수요추정에 따른 비용 추정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사업규모	- 부지 69,575㎡, (당초 950병상)700병상 - 국가중앙의상센터, 감염병센터, 일반병상, 외래전문진료센터, 연구 및 지원시설 등	연면적 115,555㎡, 700병상	연면적 88,495㎡, 536병상	연면적 99,053㎡, 600병상
총사업비(억원)	4,662.23	5,010.79	4,001.12	4,395.23
사업기간	2014 ~ 2018년(5년간)			
사업주체/ 재원조달	보건복지부 / 전액국고			
B/C	-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이세환 - 외부 연구진: 이홍재(삼우건축)
주요 논의사항	- 비용추정: 시설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목천동		
사업규모(m ²)	93,093	83,309	77,088
총사업비(억원)	922.26	914.73 (1,017.92)	841.28 (944.47)
사업기간	2015 ~ 2017년		
사업주체/ 재원조달	농촌진흥청 / 국고100%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3) ()안의 수치는 용지보상비 포함 시 금액으로 본 사업부지는 국공유지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추정된 비용임. 이에 사유지와 달리 국공유지 지가의 변동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산정 시에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지 않음.

제2절 타당성재조사

< 타당성재조사 >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2. 10.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최영은, 최명호 - 외부 연구진: 이승재(서울시립대), 정의하(수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신분당선 연장선 병행구간 건설계획 검토 - 신갈단층대 보강공사 검토 - 수요추정을 위한 기본자료 선정 - 수서~동탄, 동탄신교통수단 1, 2호선 반영 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노선대안 추가 반영 및 야구장 수요 반영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인덕원~의왕~광교~영통~동탄~서동탄		
사업규모	L=35.6km(복선 29.7km, 단선 5.9km)		
총사업비(억원)	24,474 (25,329)*	25,220	
사업기간	2012 ~ 2019년(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해양부 / 국고 100%		
B/C	0.95	0.84	0.95
AHP	0.515	0.458	0.507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조중래(명지대), 이현상(이산)
주요 논의사항	- 사업 미시행/시행 시 자유속도 적용 관련 검토 - 기 추진 중인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고려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당초	변경	
사업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 상림~군위군 군위IC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 상림~상림마을, 남실마을~군위군 군위IC(수서교)	
사업규모	L=9.5km (4차 확장)	L=5.54km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억원)	1,400.00 (1,400.00)*	560.00 (560.00)*	591.59
사업기간	2013 ~ 2019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0.61
AHP	-	-	0.389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3.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최영은 - 외부 연구진: 정성봉(과기대), 김석희(진우eng)
주요 논의사항	- 사업노선의 정확한 시종점에 대한 확인 - 해상교량의 공사비 및 운영비 산정 방법 - 주변지역 선박 운행현황을 고려한 해상교량의 경간 계획 - 신안조선타운 개발계획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전남 신안군 태면 도창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전남 신안군 태면 수곡리 ~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사업규모	연장 10.1km 교량(해상) 7,560m/ 1개소	연장 11.56km 교량(해상) 5,000m/ 1개소 교량(육상) 150m/ 5개소 터널 380m/ 1개소	연장 11.40km 교량(해상) 5,000m/ 1개소 교량(육상) 150m/ 5개소 -
총사업비(억원)	4,201.58 (4,736.51)*	4,205.03	4,170.49
사업기간	2013 ~ 2020년(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0.40	0.40
AHP	-	-	0.416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최영은 - 외부 연구진: 정성봉(과기대), 신병관(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해저터널 및 해상교량의 공사비 및 운영비 산정 방법 - 사업노선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반영 - 신안조선타운 개발계획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사업규모	연장 11.8km 4차로 신설	연장 13.4km 2~4차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3,408.37	4,265.21 (4,410.77)*	4,267.59
사업기간	2013 ~ 2020년(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0.28
AHP	-	-	0.354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5.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중태 - 외부 연구진: 김성수(서울대), 이창수(동부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국도의 구간 국고지원의 적정성 - 신안조선타운 개발계획은 미반영 - 관광수요 및 유발수요 반영여부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리 ~ 현경면 송정리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 해제면 양매리	
사업규모	- 연장 18.02km · 4차로: - km · 2차로: 18.02km(개량)	- 연장 6.02km · 4차로: 6.02km(확장) · 2차로: - km	
총사업비(억원)	921.14	504.16	402.32
사업기간	2009 ~ 2016년(8년간)	2013 ~ 2018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0.67
AHP	-	-	0.424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6.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양인석 - 외부 연구진: 이청원(서울대), 권재혁(케이탑이앤씨)
주요 논의사항	- 당초 추진했던 사업노선과 위치가 크게 달라 동일사업인지 여부 - 당초 사업과 본 재조사사업과의 경제성(B/C) 우위 비교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청평면 하천리	
사업규모	- 연장 7.54km(2차로 신설) - 터널 3개소/5,855m - 교량 4개소/495m	- 연장 7.403km(2차로 신설) - 터널 4개소/4,520m - 교량 4개소/820m
총사업비(억원)	1,707.00 (1,707.00)*	1,685.07
사업기간	2013 ~ 2019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0.40
AHP	-	0.38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7. 국도45호선(팔당대교~외부)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이세환 - 외부 연구진: 이청원(서울대), 최동식(한맥기술)
주요 논의사항	- 사업구간에 도로위계상 3개등급(Ⅱ,Ⅲ,Ⅳ)이 복합되어 설계기준 적용에 차이를 보임. - 기존 팔당대교 진출입시설과 급변 확장교량의 진출입시설간의 중첩으로 이용자 경로선택 혼란 우려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최초요구안	추가요구안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사업규모	- 도로 L = 6.90km · 팔당대교구간 0.90km · 국도6호선 확장3.40km · 연결도로(2차도) 2.60km - 교량 L=1.780km/9개소 · PSC BOX 595m · ST BOX 130m · 기타 1,055m	- 도로 L = 7.441km · 팔당대교구간 1.441km · 국도6호선 확장3.440km · 연결도로(2차도) 2.060km - 교량 L=1.545km/10개소 · PSC BOX 395m · ST BOX 920m · 기타 230m	- 도로 L = 7.249km · 팔당대교구간 1.749km · 국도6호선 확장3.440km · 연결도로(2차도) 2.060km - 교량 L=1.905km/8개소 · PSC BOX 595m · ST BOX 1,200m · 기타 110m	- 도로 L = 6.945km · 팔당대교구간 1.445km · 국도6호선 확장3.440km · 연결도로(2차도) 2.060km - 교량 L=1.830km/11개소 · PSC BOX 246m · ST BOX 1,144m · 기타 440m
총사업비(억원)	1,382.00 (1,382.00)*	1,272.72 (1,272.72)*	1,460.36	1,046.09
사업기간	2014 ~ 2020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도교통부 / 국고 100%			
B/C	-	-	0.76	1.06
AHP	-	-	-	0.507

주: * 팔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8.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흥구, 백운주 - 외부 연구진: 최재성(시립대), 조동안(삼안)
주요 논의사항	- 선형불량구간의 터널화 타당성 여부 - 위험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사업규모	연장 2.6km (4차로 신설)	연장 2.68km (4차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1,050.00	989.45
사업기간	2013 ~ 2018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0.52
AHP	-	0.40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9.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박미수 - 외부 연구진: 손영태(명지대), 노정훈(동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입체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버스전용차로의 적정성 검토 - 주무부처 제시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1-1	대안 1-2	대안 2-1	대안 2-2
사업위치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사업규모	5.0km (4→6차로 확장)	5.4km (4→8차로 확장)	5.4km	5.0km	5.4km	5.0km
총사업비(억원)	589.20	1,338.00	1,333.01	1,052.96	1,128.81	1,037.41
사업기간	2012 ~ 2017년(6년간)		2012 ~ 2018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고 100%					
B/C	1.03	0.63	0.63	0.74	0.73	0.75
AHP	0.602	-	-	-	-	0.38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0. 광주~완도1단계(광주~해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5.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최영은 - 외부 연구진: 최기주(아주대), 김성호(동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노선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적절한 반영 검토 - 요구안의 연장과 총사업비의 명확한 기준 확인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광주~해남	광주~강진 (성진)	대안1 (광주~해남)	대안2 (광주~강진 (성진))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 전라남도 강진군 성진면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 전라남도 강진군 성진면
사업규모	89.25km 4차로 신설	68.69km 4차로 신설	51.75km 4차로 신설	68.69km 4차로 신설	51.75km 4차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21,921.61	14,564.66 (16,358.78)*	-	17,991.07	14,246.59
사업기간	2003~2018년	2015 ~ 2021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국고(공사비50%, 용지비100%), 도공(공사비50%)				
B/C	0.72	-	-	0.78	0.87
AHP	0.497	-	-	0.474	0.509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1. 인천신항 항로중심 준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이세환 - 외부 연구진: 백종실(평택대), 박종일(테크컨설팅트)
주요 논의사항	- 가격탄력도 적용 방법의 적정성 검토 - 호퍼준설선 수입관세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인천항 접근항로(동서수도) 및 인천신항 진입항로	
사업규모	항로준설: 21,420m ³	
총사업비(억원)	2,294.00	1,816.48
사업기간	2013 ~ 2018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B/C	-	1.16
AHP	-	0.569

주: * 팔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덕천동~아시아드) 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7.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정진혁(연세대), 정병권(유신)
주요 논의사항	- 노선 선정 및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 식만~사상간 도로 및 제2백양터널의 시나리오 반영 방법 검토 - 동김해IC~식만JCT 타당성재조사와의 일관성 확보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연제구 거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사업규모	연장 4.4km(터널 2,800m)		
총사업비(억원)	1,383.00 (1,713.00)*	1,682.09	1,685.53
사업기간	2014 ~ 2018년(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 국고(공사비50%, 설계비100%), 지자체(공사비50%, 용지비100%)		
B/C	-	0.85	시나리오 1: 0.85 시나리오 2: 1.13
AHP	-	-	시나리오 1: 0.356 시나리오 2: 0.51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3.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8.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최기주(아주대), 이진웅(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2012년 수요예측재조사 수행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수행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사업규모	연장 6.2km(확장 4차로) B=20.0m		연장 6.2km (확장 4차로) B=19.5m	연장 5.6km (확장 4차로) B=19.5m
총사업비(억원)	679.00 (887.81)*	904.53	850.78	475.39
사업기간	2005-2010년(6년간)	2013-2020년(8년간)	2014 ~ 2021년(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시나리오1: 0.30 시나리오2: 0.52	시나리오1: 0.40 시나리오2: 0.67
AHP	-	-	시나리오2: 0.481	-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4. 장고항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1호 (총사업비 예타 대상규모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7.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김희영 - 외부 연구진: 정태원(성결대), 이육한(건일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어항사업의 검토 범위 및 추진 근거 - 어항수요 추정 대상의 선정 및 추정방법론 - 어항사업의 편익 항목 설정 및 방법론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당초	변경	
사업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일원			
사업규모	- 외곽시설 1,390m - 접안시설 490m - 부잔교 1기 - 부지조성 58,300m ² - 기타	- 외곽시설 1,214m - 접안시설 553m - 부잔교 4기 - 진입 및 연결도로 319m - 부지조성 82,100m ² - 기타	- 외곽시설 1,214m - 접안시설 553m - 부잔교 2기 - 진입 및 연결도로 319m - 부지조성 82,100m ² - 기타	
총사업비(억원)	476.60	861.46	785.38	782.21
사업기간	2012~2017년(6년간)	2013~2018년(6년간)		2014~2019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B/C	-	-	-	0.91
AHP	-	-	-	0.519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흥구,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최기주(아주대), 이승조(대한)
주요 논의사항	-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구간의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 검토 - 한강 통과 구간 형식(교량/터널)의 효율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1	대안2	대안3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사업규모	L= 25.52km (4차로) 교량: 31개소 (5,215m) 터널: 2개소 (1,460m)	L= 24.80km (4차로) 교량: 24개소 (2,515m) 터널: 2개소 (9,860m)	L= 24.80km (4차로) 교량: 24개소 (2,555m) 터널: 2개소 (9,860m)	L= 24.80km (4차로) 교량: 26개소 (2,885m) 터널: 2개소 (7,500m)	L= 25.52km (4차로) 교량: 31개소 (5,225m) 터널: 2개소 (1,460m)
총사업비(억원)	12,675.65	17,422.73 (1,715.46)*	17,540.78	15,586.26	15,036.03
사업기간	2009 ~ 2020년(12년간)		2014 ~ 2020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공사비 40%, 용지비 100%), 도로공사(공사비 60%)				
B/C	-	-	1.11	1.25	1.36
AHP	-	-	-	0.580	0.595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6.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이영인(서울대), 김성호(동성)
주요 논의사항	- 2013년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수행 - 대안 설정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1안	2안	3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	이천시 증포동~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홍천면 계신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여주시 홍천면 계신리
사업규모	L=16.03km B=11.5-20m	L=14.07km B=10.5-18.5m	L=10.50km B=10.5-18.5m	L=8.60km B=10.5-18.5m	L=14.07km B=10.5-18.5m	L=10.50km B=10.5-18.5m	L=8.90km B=10.5-18.5m
총사업비(억원)	2,250.77	2,021.93	1,036.30	795.40	2,297.43	1,041.40	884.01
사업기간	2009-2017년	2014 ~ 2019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 국고(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100%), 도비(용지비100%)						
B/C	-	-	-	-	0.43	0.75	0.84
AHP	-	-	-	-	-	-	0.41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7.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6. ~ 2014. 10.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홍구, 유재광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학교), 권재혁(K-TOP)
주요 논의사항	- 2013년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수행 - 4차로 확장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사업규모	6.94km (2→4차로 확장)	7.04km (2→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841.17	866.48 (886.90)*	850.87
사업기간	2006 ~ 2010년(5년간)	2011 ~ 2016년(6년간)	2015 ~ 2018년(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 국고(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100%), 도비(용지비100%)		
B/C	1.12	1.05	0.20
AHP	-	-	0.382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김희영 - 외부 연구진: 박태성(이가종합건축), 이석준(건국대)
주요 논의사항	- 특별법 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 미비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대상 범위 확정 -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국고, 지자체 비율)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당초	변경(최종)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일원 및 인근 시·군 (문경시,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사업규모	- 경기장 시설 개보수 · 경기장 시설 물 설치 등 · 개보수 · 환경개선	- 경기장 시설 개보수 · 군사종목 경기장: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 고공강하, 독도법 · 지자체 경기시설 개보수 · 주경기장 진입도로, 간선도로, 안내표지판 등 정비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회운영종합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구축 등			
총사업비(억원)	71.22	678.91	376.23	294.51	238.49
사업기간	-	2012 ~ 2015년(4년간)		2013 ~ 2015년(3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방부(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국고 50%, 지방비 30%, 자체수입 2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4.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조숙진 - 외부 연구진: 박태성(이가종합건축)
주요 논의사항	- 적정 부지면적 산정을 위한 시설 배치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차	2차	최종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631,975㎡			631,975㎡	588,339㎡	457,567㎡
총사업비(억원)	5,216.37	5,173.10	5,216.37	4,870.83	4,672.52	4,130.76
사업기간	2009 ~ 2014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 국고 24%(정률지원)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3. 강남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7.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동준, 이지연 - 외부 연구진: 김승(업&이종합건축)
주요 논의사항	- 연증가 인원을 고려한 시설면적의 적정성 검토 -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건축 및 미관 심의, 연약지반 관련 공사비용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8번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6,718㎡ 연면적 16,641㎡	부지면적 6,718㎡ 연면적 23,734㎡	부지면적 6,718㎡ 연면적 23,734㎡	부지면적 6,718㎡ 연면적 20,664.95㎡
총사업비(억원)	329.48	572.73	510.15	449.82
사업기간	2012 ~ 2015년(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경찰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4. 광진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7. ~ 2014. 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동준, 이지연 - 외부 연구진: 김승(업&이종합건축)
주요 논의사항	- 연증가 인원을 고려한 시설면적의 적정성 검토 -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임시청사 기본 공사비 및 연면적 증가 증액 비용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32			
사업규모	부지면적 4,706㎡ 연면적 15,739㎡	부지면적 4,706㎡ 연면적 20,219㎡	부지면적 4,706㎡ 연면적 20,219㎡	부지면적 4,706㎡ 연면적 17,706.29㎡
총사업비(억원)	299.39	491.57	475.48	425.99
사업기간	2012 ~ 2016년(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경찰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학습모듈 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이현정 - 외부 연구진: 김주섭(노동연), 허영숙(생산성본부)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목표의 정당성, 지원방식 및 추진시기의 적절성 -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 분야(모듈)별 단가 검토: 학습모듈의 용도(교과서 또는 교과과정의 가이드 등)에 따른 단가 수준 고려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			
사업규모	NCS 777개 분야 학습모듈			
총사업비(억원)	528.36	759.40	673.76	586.60
사업기간	2013 ~ 2014년(2년간)		2013 ~ 2016년(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교육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6. 자활연수원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김희영 - 외부 연구진: 김승(업&이종합건축)
주요 논의사항	- 요구안의 공사비가 설계가와 낙찰가 혼재 - 총사업비 증감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약 30%이며, 이미 골조가 완료된 상황) - 운동장 조성비에 대한 추가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당초	변경(최종)	
사업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833-1번지 일대(구 충주소년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부지 29,801㎡, 연면적 9,996㎡ - 주요시설: 2개동(교육관·생활관), 지상 4층~지하 1층 · 교육관: 강의실(7), 대강당(300석), 분임토의실(10), 회의실(3), 실습실(3), 자료실(1), 전산교육실(1), 학습실, 사무실, 방재센터, 탁구장 등 · 생활관: 생활실(일반 132, 장애 2), 미팅룸, 휴게실, 휘트니스실, 주방 식당 			
총사업비(억원)	203.90	253.40	255.93	252.68
사업기간	2011 ~ 2014년(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7.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손경원 - 외부 연구진: 이영근(미래자원연구원), 오규창(동부)
주요 논의사항	- 댐사용권 변경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댐사용권 변경에 따른 적정 보상비 검토 - 적정규모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댐사용권 변경에 따른 영업손실	부담금 반환을 통한 댐사용권 취득
사업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좌안),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우안) 섬진강댐		
사업규모	댐사용권변경에 따른 댐사용권 취득비용		
총사업비(억원)	1,255.76	559.95	88.16
사업기간	2003 ~ 2014년(12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8.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2.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백운주 - 외부 연구진: 김제능(헤인이엔씨), 김용춘(온누리감정평가), 이광남(한국수산회)
주요 논의사항	- 준설수심 변경(13.0m⇒ 12.5m) 사유의 적정성, 투기장 면적감소 - 어업 피해범위 및 피해율, 조업가능일수, 종류별 피해 원단위 적정성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전면 부도수도 공유수면		
사업규모	항로준설 613만 ^m	항로준설 493만 ^m	
총사업비(억원)	589.62	806.06	765.89
사업기간	2007 ~ 2015년(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9.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2.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양봄이 - 외부 연구진: 황현명(투에이치엠)
주요 논의사항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내 전시 공간(전시형 수장고) 설치의 타당성 여부 - 신규 건립과의 총사업비 비교·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1 및 188-4 (청주 구 연초제조창 일대)			
사업규모	19,800㎡	23,700㎡	15,884.56㎡	19,855.70㎡
총사업비(억원)	397.75	472.32	475.61	628.21
사업기간	2012 ~ 2015년(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0. 행정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서승호 - 외부 연구진: 김석희(진우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 계획의 결과에 따라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선택 가능하도록 함. · 변경 계획 수용: 시나리오 1(주간선도로로 반영) · 변경 계획 미수용: 시나리오 2(보조간선도로로 반영)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업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행정도시 경계) ~ 부강면 금호리			
사업규모	L=1.51km(20.0m) 교량: 1개소(350m)	L=2.25km(20.0m) 교량:2개소(545m)	L=2.25km(20.0m) 교량:2개소(545m)	
총사업비(억원)	480.00	815.21	654.89	558.11
사업기간	2013~2017년(5년간)	2013 ~ 2018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1. 오송~청주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도일, 김형석, 전형준 - 외부 연구진: 이용관(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한 1구간은 제외하고, 추가 반영된 2구간(0.75km, 교량)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 - 기존 미호천교를 확장·신설하고, 확장구간은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업비를 산출함. - 현재 실시설계 중인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와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연계비용을 본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함.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미호천교 A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IC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 청주시 흥덕구 휴암IC	
사업규모	연장 3.76km (1구간)	총연장 L=4.51km (1구간 L=3.76km, 2구간 L=0.75km)	
총사업비(억원)	779.63	1,468.93	1,425.62
사업기간	2007~2017년(11년간)	2007 ~ 2020년(1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 수요예측재조사 >

1. 국도79호선(군북~가야)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2. 11.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최영은 - 외부 연구진: 강승모(고려대)
주요 논의사항	- 사업노선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이전 군부대 및 산업단지 수요의 반영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제2차 국도 5개년(2006~2020) 계획(안) 검증사업)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가야읍 도항리	
	사업규모	연장 7.3km (2→4차로 확장)	연장 8.3km (2→4차로 확장)
	개통연도	2011년	2021년
수요추정 결과	교통량 (대/일)	- 2021년 : 30,434 - 2031년 : 35,811	- 2021년 : 11,554 - 2031년 : 11,420
	증감분 (대/일)	-	- 2021년 : -18,880(-62.04%) - 2031년 : -24,391(-68.11%)

주: 1) 수요예측 기준연도는 요구한 2003년 말, 수요예측재조사 2011년 말임.
 2) 수요예측재조사의 교통량은 최초 예측치와의 비교를 위해 거리가중평균한 값임.
 3) 수요예측재조사의 교통량 및 증감분은 입·퇴소 반영 기준임.
 4) 증감분의 괄호 안은 증감률을 의미함.

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이지연, 김희영 - 외부 연구진: 이청원(서울대)
주요 논의사항	-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시기 및 단계별 교통계획 반영상의 쟁점 - 본 사업구간 교통량 패턴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여부와 단계, 개통시점 반영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사업규모	9.1km (4차로 신설)	
개통연도	2010년	2021년
수요추정 결과	교통량 (대/일)	- 2021년: 37,060 - 2026년: 42,823 - 2029년: 46,775
	증감분 (대/일)	- 2021년: -12,519(-33.78%) - 2026년: -16,569(-38.69%) - 2029년: -20,104(-42.98%)

- 주: 1) 2021년은 수요예측재조사의 분석 개통연도임.
 2) 2026년은 수요예측재조사의 중간 분석연도임.
 3) 2029년은 최초 예측치의 마지막 분석연도임.
 4) 괄호 안은 증감률임.

3.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박용덕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
주요 논의사항	- 주말 교통량 자료를 조사하여 주말관광수요 반영여부 검토 - MTA 5-2차 수도권자료와 2010년 KTDB 전국권자료 간의 수요예측 기초자료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신산리	
사업규모	4.53km (2→4차로 확장)	
개통연도	2009년	2019년
수요추정 결과	교통량 (대/일)	- 2019년: 34,327 - 2023년: 36,459 - 2028년: 38,472
	증감분 (대/일)	- 2019년: -16,671(-48.6%) - 2023년: -17,891(-49.1%) - 2028년: -18,978(-49.3%)

주: 1) 수요예측 기준연도는 요구안 2004년 말, 수요예측재조사 2012년 말임.
 2) 2019년은 수요예측재조사의 분석 개통연도임.
 3) 2023년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예측교통량 연도임..
 4) 2028년은 최초 예측치의 마지막 분석연도임.
 5) 괄호 안은 증감률임.

4. 국지도70호선(이천~홍천)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양분이 - 외부 연구진: 이영인(서울대)
주요 논의사항	- 수요예측재조사의 교통량 비교 기준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울촌리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 여주시 천서리
사업규모	16.03km (4차로 확장)	16.19km (4차로 확장)
개통연도	2008년	2018년
수요추정 결과	교통량 (대/일)	- 2018년: 23,452 - 2027년: 27,946
	증감분 (대/일)	- 2018년: 14,884 - 2027년: 15,237
		- 2018년: -8,568(-36.53%) - 2027년: -12,709(-45.48%)

- 주: 1) 수요예측 기준연도는 요구안 2001년 말, 수요예측재조사 2012년 말임.
 2) 2018년은 수요예측재조사의 개통연도임.
 3) 2027년은 2003년 실시설계의 최종분석연도임.
 4) 수요예측재조사의 교통량은 비교를 위해 거리가중평균한 값이며, 목표연도 2026년과 2031년 교통수요를 보간하여 2027년 교통수요를 산정하였음.
 5) 타당성재조사 의뢰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실시설계의 2027년 기준 거리가중평균 교통량은 27,946대/일이나 연구진이 재계산한 결과 27,780대/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 실시설계 이후 노선 연장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5.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동준, 이세환 - 외부 연구진: 노정현(한양대)
주요 논의사항	- 직접영향권의 존재분화 검토 - 관광수요반영 여부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 음봉면 삼거리		
사업규모	연장 5.18km 폭원 20.0m(4차로), 23.0m(4차로, 보도포함)		
개통연도	2010년	2020년	
수요추정 결과	교통량 (대/일)	- 2020년: 21,549 - 2029년: 28,004	- 2020년: 15,088 - 2029년: 11,679
	증감분 (대/일)	-	- 2020년: -6,461(-30.0%) - 2029년: -16,325(-58.3%)

주: 1) 2020년은 수요예측재조사의 분석 개통연도임.
 2) 2029년은 최초 예측치의 마지막 분석연도임.
 3) 괄호 안은 증감률임.

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3.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양봄이 - 외부 연구진: 김경석(공주대)
주요 논의사항	- 국가교통DB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의 O/D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2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는 별도로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축이 필요함.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상에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교통량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사업규모		4.22km (4차로 신설)	
교통수요 예측치 ¹⁾	개통연도	2008년	2019년
	평균교통량 (대/일)	23,315	18,105
	교통량 증감분 (대/일)	-	-5,209
	교통량 증감률 (%)	-	-22.34%

주: 1) 수요추정 결과비교는 2019~2027년 연평균 거리가중 평균교통량 기준임.

7. 국도21호선(인계~쌍치)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수요예측재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채수복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
주요 논의사항	- 본 사업의 이전 수요예측치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2007년 실시설계가 있음. 2개의 준거기준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재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 사업 미시행시/시행시 자유속도 적용 관련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최초 예측치	요구안	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예비타당성조사 (KDI, 2003.06)	기본설계 (건설교통부, 2007.12)			
사업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 순창군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 전쌍치면			
사업규모	45.0km(시행 35.283km) (2→4차로 확장)	24.0km (2차로 개량)			
교통수요 예측치 ¹⁾	개통연도	2012년	2015년	2021년	
	평균교통량 (대/일)	13,983	2,838	1,394	
	교통량증감분 (대/일)	-	-	예타 대비	기본설계 대비
				-12,590	-1,444 ²⁾
교통량증감률 (%)	-	-	-90.9%	-50.9%	

주: 1) 수요추정 결과비교는 2021~2031년 연평균 거리가중 평균교통량 기준임.

2)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주무부처에서 시행한 2007년 기본설계를 최초 예측치로 하여 교통수요 증감분 및 증감률을 산정하였음.

제II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 BTO (타당성분석 검토) >

1.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변혜리
쟁점	- 신분당선 전체구간에 대한 통합환승요금제 반영여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성로, 금곡앞들, 호매실지구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4 ~ 2019년(5년) - 운영기간: 2020 ~ 2049년(30년)
사업규모	- L=10.1km - 정거장 4개소 - 설계속도: 120km/h - 열차운행: 수도권 전동차(6량/편성, 4편성)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정부고시 BTO

3) 조사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없음

2. K-POP 공연장(전용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8.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추정수
쟁점	- 공동 주무관청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각 기관별 계약서 상 역할분담과 의무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 감독 주체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 -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명칭사용권에 대한 신규 편익 인정 여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일산 한류월드 내 테마파크 T1 부지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14 ~ 2017년 (총3년) - 운영기간: 2017. 7. 1. ~ 2047. 6. 30.(30년)
사업규모	- 공연 전용 아레나: 59,889㎡(전체면적의 88.3%), 좌석 수 18,000석 - 대공연장: 3,351㎡(전체면적의 4.9%), 좌석수 1,100석 - 대중음악 전시체험·지원시설: 4,579㎡(전체면적의 6.8%)
주무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방식	- BTO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어려움.

< BTO (적격성조사) >

1.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1.~ 2014.11.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수진, 구석모
쟁점	- 주무관청의 제안내용과 다른 대안 제출(G대안 분석)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일부를 미군에 임대 가능성 - 일부 BOO 방식 적용 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군 일원(1읍, 9면)
사업기간	- 건설기간: BOO- 2014. 7. 1. ~ 2018. 6. 30.(48개월) BTO- 2014. 7. 1. ~ 2019. 6. 30.(60개월) - 운영기간: BOO- 2018. 7. 1. ~ 2049. 6. 30.(31년) BTO- 2019. 7. 1. ~ 2049. 6. 30.(30년)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이 2,743,000㎡(연면적 541,753㎡) -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합유원시설, 교육연구실 등이 입지 【BOO - 1,935(70.5%)/BTO - 808(29.5%)】
주무관청	- 평택시
사업방식	- BTO/BO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평택호관광단지 주식회사(에스케이건설(주), (주)호텔인터불고대구, (주)지케이홀딩스, 한국투자증권(주) 등)

3) 조사결과

주무관청의 G대안 추진 가능

2.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임영빈, 정세나
쟁점	- 단계적 건설 및 운영기간의 적정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상위계획 변경가능 여부 - 제안노선의 적정성 및 노선지역 민원가능성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기간	- 공사기간: 1단계(2018 ~ 2022년), 2단계(2028 ~ 2032년) - 운영기간: 2023 ~ 2062년
사업규모	- 총연장: 139.2km - 차로수: 왕복4차로 (포승JCT ~ 현덕JCT, 안중IC ~ 현덕JCT) 왕복6차로 (현덕JCT ~ 인주JCT) 왕복4차로 (인주JCT ~ 익산JCT) - 구조물: 교량(170개소/13,068m), 터널(8개소/4,406m) - 출입시설: 분기점 5개소, 나들목 7개소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TO 방식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주)포스코 건설), (가칭)서부내륙사 모특별자산투자신탁)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BTO (민간제안서검토) >

1.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2.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노승범, 정세나
쟁점	- 시설 규모 적정성 -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규모, 위치의 적정성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14. 10. ~ 2017. 3. - 운영기간: 시설준공 후 15년간
사업규모	- 소각시설: 시설용량 200톤/일(24시간/일, 330일/년 운전) - 주민 편익시설: 연면적 1,784.54㎡ - 환경자원시설: 용량 20톤/일(6시간/일, 300일/년 운전) - 환경순환시설: 처리량: 굴착기폐기물량 853,548㎡(제조성용량 644,600㎡)
주무관청	- 군산시
사업방식	- BTO 방식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 드림에너지주식회사((주)한화건설, (주)금도건설, (주)창성토건, 흥국생명보험(주), 하나대투증권(주))

3) 조사결과

대안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2. 안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6.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정세나
쟁점	-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과 확충시설의 운영주체 상이 - 사업부지 보상문제 - 개발계획 수요 반영 여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 외 4개소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14. 1. ~ 2015. 12. - 운영기간: 2016. 1. ~ 2035. 12.
사업규모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6,000m ³ /일 - 불당하수처리시설: 6,000m ³ /일 - 그 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
주무관청	- 안성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 안성맑은물주식회사((가칭)우리크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지에스건설(주), 대보건설(주))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3. 거가대교 관광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8.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김정아, 이동훈
쟁점	- BOO방식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 특수성 - 관광진흥법과 민간투자법의 적용, 주무관청, 부지확보, 공공성 확보 등 사업내용에 관련된 쟁점 - 수요추정 방법과 초과 및 이전 수요의 처리, 편익인정비율 등 수요 및 편익 추정의 적절성 관련 쟁점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4. 7. ~ 2016. 12.(30개월) - 운영기간: 2017. 1. ~ 2036. 12.(20년)
사업규모	- 사업면적: 112,030.00m ² /시설부지면적: 44,322.00m ² /건축면적: 24,521.47m ² - 연면적 계: 113,973.88m ² (지상층: 47,160.80m ² , 지하층: 66,813.08m ²) - 지하 6층, 지상 17층
주무관청	- 거제시
사업방식	- BOO (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거제블루씨티리조트주식회사

3) 조사결과

추진 가능성 낮음.

4. 포항시 남구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수진, 이광희
쟁점	- 정수장부문 법정필수시설 여부 - 본 사업의 용수공급 시설규모가 90,000m ³ /일 이지만 약 52,000m ³ /일은 기존 공급의 대체수요이므로 신규용수공급 편익으로 산정치 아니하고 대체편익을 계상함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 산 68번지 일대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4. 12. ~ 2018. 5.(42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2018. 6. ~ 2043. 5.(시설 준공 후 25년간)
사업규모	- 정수시설: 90,000m ³ /일, - 취수시설: 76,000m ³ /일(신설), 14,000m ³ /일(개량) - 관로시설: 도수관로 2.7Km, 배수관로 9.4Km - 기 타: 기존시설(제2수원지 정수장 등) 철거
주무관청	- 포항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 포항블루워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5. 중랑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1.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탁경, 최명호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화시설의 신설로 인한 주변 대규모 주거시설의 민원발생 예상 · 자원화시설 주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예상 · 특히 혐기성 소화 시설물의 탈취능력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정리 및 법정필수시설 여부 등에 대한 관련 근거 · 본건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성격 정의 ·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법정필수시설인 경우의 산출된 B/C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0-2 일원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2015. 1 ~ 2017. 4.(28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2017. 5 ~ 2037. 4.(20년간)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732.76억원 - 면 적: 4,483㎡ - 시설용량: 220톤/일 - 가동일수: 333일/년 (반입·전처리설비 8시간/일, 혐기성 소화설비 등 기타 24시간/일)
주무관청	- 서울시 중랑구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중랑에코베이스(주)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어려움.

6. 김해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2.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고유은
쟁점	- 계획처리인구 산정의 적정성 계획수요의 적정성 -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 고려 및 계획 신규시설 수요의 적정성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923 일원(화목하수처리장 내)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4. 7. ~ 2016. 6.(24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2016. 7. ~ 2036. 6.(20년)
사업규모	- 면적: 4,848㎡ - 시설용량: 100톤/일(건조 전 함수율 82±4%) - 처리방식: 전기탈수+직접건조방식(가동시간 24시간/일) - 주요시설: 슬러지저장조 투입문, 전기 탈수기, 슬러지 건조기, 열풍로 버너, 건조기 열풍로, LPG 공급설비
주무관청	- 김해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김해에코주식회사(주)엔바이오컨스, (주)도원이엔씨, 경남기업(주), 씨에스종합건설(주), KIAMCO 녹색금융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3) 조사결과

대안에 따라 추진 가능

< BTL (타당성 분석 검토) >

1. 김포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추정수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처리구역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1. 1. ~ 2019. 12. 31.(총 36개월) - 운영기간: 2020. 1. 1. ~ 2039. 12. 31.(총 20년)					
사업규모	시군명	처리 구역	처리분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m ³ /일)	사업량 (km)	배수설비 (개소)
	김포시	김포	결포,북면사우, 풍무운양,풍곡	80,000	29.3	1,799
		통진	통진,구래대꽃, 하성	40,000	74.4	1,717
	합 계			120,000	103.7	3,516
주무관청	- 김포시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66,455백만원	66,345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76,305백만원	76,179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17%)	적격성 있음 (7.54%)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2. 시흥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정세나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시흥시 방산처리구역의 신천, 신천2지구, 은행, 은행지구 처리분구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1. 1. ~ 2019. 12. 31.(총 36개월) - 운영기간: 2020. 1. 1. ~ 2039. 12. 31.(총 20년)				
사업규모	처리 구역	처리분구	하수처리장시설 용량(m ³ /일)	사업량 (km)	배수설비 (개소)
	방산	신천, 신천2지구, 은행, 은행지구	68,000	61.235	5,347
주무관청	- 시흥시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51,641백만원	51,567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59,294백만원	59,194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7.46%)	적격성 있음 (6.79%)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3. 부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지혜, 오승연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수영처리구역 사진·장전분구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1. 1. ~ 2019. 12. 31.(총 36개월) - 운영기간: 2020. 1. 1. ~ 2039. 12. 31.(총 20년)				
사업규모	처리구역	처리분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천m ³ /일)	사업량 (km)	배수설비 (개소)
	수영	사직·장전	452	89.055	10,087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80,623백만원	80,555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92,549백만원	92,472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8.10%)	적격성 있음 (7.42%)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4. 국방부 관사(양주, 파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6.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임영빈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00번지 일원 등 3개 지역				
사업기간	- 공사기간(21개월), 운영기간(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양주 A지역	13,178	1,724	400	3동
	양주 B지역	2,935	-	-	1동
	파주 C지역	6,837	755	66	3동
	계	22,950	2,479	466	7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50,872백만원	52,084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57,592백만원	58,963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5.88%)	적격성 있음 (5.87%)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5. 국방부 관사(여주, 원주, 성남)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6. ~ 2014. 7.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임영빈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00번지 일원 등 3개 지역				
사업기간	- 공사기간(19개월), 운영기간(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원주 A지역	9,964	962	199	3동
	여주 B지역	2,991	371	66	3동
	성남 C지역	4,752	570	66	3동
계	17,707	1,903	331	9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40,052백만원	41,038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45,191백만원	46,303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5.28%)	적격성 있음 (5.33%)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6. 국립대학교 기숙사(강원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임영빈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18,000	1,00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34,548백만원	32,391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8,220백만원	35,850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39%)	적격성 있음 (7.91%)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7. 국립대학교 기숙사(교통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임영빈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18,000	1,00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34,046백만원	32,458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7,674백만원	35,923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55%)	적격성 있음 (7.53%)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8. 국립대학교 기숙사(목포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추정수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11,700	65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22,742백만원	21,377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25,157백만원	23,662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96%)	적격성 있음 (7.68%)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9. 국립대학교 기숙사(제주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추정수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18,000	1,00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31,080백만원	29,154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4,385백만원	32,270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29%)	적격성 있음 (6.60%)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0. 국립대학교 기숙사(부산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오승연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24,840	1,38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47,367백만원	44,255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52,402백만원	49,982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25%)	적격성 있음 (6.70%)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1. 국립대학교 기숙사(한밭대 외 1)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김혜영, 오승연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천안시 서북구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사업규모	대 학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한밭대(본교)	12,600	700
	공주대(천안)	5,400	300
	소계	18,000	1,00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4. 01. 01. 불변가)	34,506백만원	32,358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8,181백만원	35,812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56%)	적격성 있음 (9.20%)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8.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오승연, 임영빈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간)	
사업규모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18,000	900 ¹⁶⁾
주무관청	-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검토1안 (1인당 20m ²)	검토1안 (1인당 18m ²)
총사업비 (2013. 01. 01. 불변가)	34,449백만원	32,351백만원	29,367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8,112백만원	35,805백만원	32,504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8.35%)	적격성 있음 (7.04%)	적격성 있음 (7.19%)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6) 제시안상 1,000명과 900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문의한 결과 900명으로 확인됨.

< 수요예측재조사 >

1.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백운주
쟁점	- 신분당선 요금 체계 및 운행시격 - 주변 철도 노선망의 반영 여부 - 용산개발업무지구의 O/D 수정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사업기간	- (협약기준) 2011~2017, 2018년 개통
사업규모	- 연장 7.79km, 정거장 4개소(환승 4개소, 일반 2개소)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2. 수도권북부(파주)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구석모
쟁점	- 분석방법론상 관련 지침 - 수요예측재조사의 비교 기준 - 남북한간 물동량 반영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 설정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39만㎡)
사업기간	- 2007 ~ 2015년
사업규모	- 주요시설: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 CY(컨테이너 야드) 7만㎡ - 처리능력: 일반화물 170만톤/년, 컨테이너 23만TEU/년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OO
사업제안자 (출자자)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3) 조사결과

30% 이상 차이 발생

< 적격성재조사 >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최명호
쟁점	- 사업범위 관련(서부간선 상부도로의 일반도로화에 따라 시나리오 처리) - PSC 요금 설정 기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서울시 금천구 독산동(금천IC)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3. 7. ~ 2018.6.(60개월) - 운영기간: 2018. 7. ~ 2048.6.(30년)
사업규모	- 총연장: 10.33km (양방향 4차로, 소형차전용, 병렬터널)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2.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3.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유재광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거사업의 설정(제3자제한(상계역 미반영) 및 제3자제한 수정(상계역 반영)) -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노선 반영 여부 - 비용 및 수요 추정의 기준시점 - 동북선 요금 및 운행시각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왕십리역~제기역~고려대역~미아삼거리역~월계역~하계역~중계동 은행사거리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2012. 1. ~ 2016. 12.(60개월) - 운영기간: 2017. 1. ~ 2046. 12.(30년)
사업규모	- 총연장: 12.60km (본선 및 차량기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6.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대학교 소유부지(구체적으로는 미제시)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5. 7. 1. ~ 2016. 12. 30.(18개월) - 운영기간: 20년간				
사업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순천대학교	순천시 중앙로 255	3,000이하	5,400이상	300이상
	인천대학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12-1	63,213 이하	20,340 이상	1,130 이상
	계		66,213이하	25,740 이상	1,430 이상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2.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하성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북대학교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5. 10. 17. ~ 2017. 10. 6.(60개월) - 운영기간: 20년간				
사업규모	학교(대학)명	예 정 지	부지면적 (㎡)	학급수 (수용인원)	연면적 (㎡)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현재 과수원 부지내)	10,000	1,210명	21,780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부산광역시(수민분구)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8.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조영희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수영처리구역 수민분구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예정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포함) - 운영기간: 20년		
사업규모	구 분	금회정비지역 (신설, 교체, 보수 면적)	사 업 규 모 (기본계획 보고서)
	수민분구	A=6.4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L=87,332m, 교체 L=4,236m • 배수설비 8,855개소
	하수관거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사업방식	- BTL		

4.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8.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도일,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로 123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1개월 이내(착공 예정일: 2015년 06월) - 운영기간: 20년	
사업규모	구 분	규모
	부지면적(m ²)	73,842.76m ²
	연면적(m ²)	63,700m ²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주무관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방식	- BTL	

**5.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이전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9. ~ 2014. 1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유진석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번지 일대(14,589㎡)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예정일로부터 30개월(2016. 5. 1. ~ 2018. 10. 31.) - 운영기간: 20년간	
사업규모	구 분	내용
	병상수	총 299병상 규모
	병동부문	4,951.00
	외래진료부문	2,129.00
	중앙진료부문	2,148.00
	서비스부문	4,788.00
	관리부문	1,403.00
	병원 순면적 계	15,419.00
	G/N 비	1.51
	병원 연면적 계 (A)	23,282.69
	(병상당 면적)	77.87
	지하주차장 (B)	6,611.57
총 면 적 (A+B)	29,894.26	
주무관청	- 이천시	
사업방식	- BTL	

6.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9. ~ 2014. 10.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처리구역(남제, 옥천 처리분구)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포함) - 운영기간: 20년간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금회정비지역 (사업대상면적)	사 업 규 모 (기본계획보고서)
	남산처리구역	A=249.4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L=63,972m, 교체L=10,267m • 보수L=2,061m • 배수설비 5,602개소
	하수관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 식
주무관청	- 순천시		
사업방식	- BTL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1.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이지현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산14 및 21번지 일원(고덕국제신도시내)		
사업기간	- 건설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규모	폐기물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300톤/일	물리적 선별공정
	재활용 선별시설	100톤/일	수선별 및 자동선별
	RDF 열병합발전시설	200톤/일	BFBC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250톤/일	혐기성소화
	슬러지 처리시설	184톤/일	건조 후 소각공법
	하수처리장	33,000m ³ /일	
	문화교육공간, 실내체육시설 등		
주무관청	- 평택시		
사업방식	- BTO		

2.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2.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서은혜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평택시 죽백동~진위면
사업기간	- 건설기간: 48개월 이내 - 운영기간: 30년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 설계속도: 본선구간은 90km/h - 설계하중: 1등교(DB24, DL24)
주무관청	- 평택시
사업방식	- BTO

3.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수진,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4개월(120일) - 운영기간: 20년을 상한으로 자율 제시
사업규모	- 규모: 지상 3층 - 주차대수: 55~60대
주무관청	- 동대문구
사업방식	- BTO

4.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0. ~ 2014.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유진석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000m ² - 환경에너지시설(소각시설 및 여열회수시설): 시설용량 200톤/일(24시간/일, 300일/년 운전) - 환경자원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 20톤/일(6시간/일, 300일/년 운전) - 환경순환시설(기 매립구역의 굴착·선별·재매립하기 위한 시설): 순환형 매립시설 재조성 용량 644,600m ³) - 주민 편의시설: 연면적 1,784.54m ²
주무관청	- 군산시
사업방식	- BTO

5.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안)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사업기간	- 공사기간: 사업시행단계별 착공 후 60개월 이하 - 운영기간: 1단계(평택~부여) 10년(2023 ~ 2032년), 2단계(전 구간, 평택~익산) 30년(2033 ~ 2062년)
사업규모	- 시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연결지선: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 종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도로의 구분: 고속국도 - 설계속도: 본선구간은 100~120km/hr, 연결로는 40~60km/hr(형식별 차등적용)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TO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1) 조사 개요

공문접수일~완료일	2010. 6.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최지은

2) 사업 개요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사업규모	총연장: 10.33km (양방향 4차로, 소형차전용, 병렬터널)
사업위치	시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종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금천IC)
공사기간/운영기간	공사기간: 2014. 9. ~ 2018. 12.(60개월) 운영기간: 2019. 1. ~ 2048. 12.(30년)
출자자구성	(가칭)한국도로인프라 사모특별자산집합투자신탁,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두산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일신건설(주), 영일건설(주)

2.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1) 조사 개요

공문접수일~완료일	2013. 1.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김선경

2) 사업 개요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사업규모	연장: 31.34km 차로: 왕복4차로(B=23.4m) 터널: 7,710m/10개소 교량: 2,850m/25개소 영업소: 본선 2개소(중리, 노곡), JCT/IC 6개소(2개소/4개소) 유출입시설: 8개소(JCT 4개소, IC 4개소)
사업위치	시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경부고속도로) 종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중부고속도로)
공사기간/운영기간	공사기간: 2016. 1. ~ 2020. 12.(60개월) 운영기간: 2021 ~ 2050년(30년)
출자자구성	금호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풍산건설, KB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KDB생명보험

3. 부산항 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1) 조사 개요

공문접수일~완료일	2010. 4.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강동석, 유재광

2) 사업 개요

주무관청	해양수산부
사업규모	컨테이너 부두 9선석 (1-1단계: 6선석, 1-2단계: 3선석)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원
공사기간/운영기간	건설기간: 2001. 5. ~ 2009. 5. - 1-1단계: 2001. 5. ~ 2007. 11. - 1-2단계: 2004. 11. ~ 2009. 5.
사업시행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1단계 준공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부산신항만(주)

3) 변경 협상 의제

구 분	내 용
1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권의 관계 정립
2	BPA 명의의 관리운영권 이전 필요
3	법인세율 인하 효과
4	기타 총사업비 등 변경 내용 반영

4.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1) 조사 개요

공문접수일~완료일	2011. 5.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강동석, 고유은

2) 사업 개요

주무관청	해양수산부
사업규모	일반잡화부두 2만톤급 3선석(700m × 180-250m)
사업위치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공사기간/운영기간	공사기간: 2005. 11. 15. ~ 2009. 5. 14. 운영기간: 2009. 5. 15. ~ 2059. 5. 14.(50년간)
사업시행자	인천북항부두운영(주) 대표 함선욱

3) 변경 협상 의제

구 분	내 용
1	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사항 반영
2	법인세 인하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사항 반영
3	하역장비 동력비 절감사항 반영

제III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3. ~ 2014. 3.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김선경, 임혜연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비스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장기간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BTL사업의 운영단계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BTL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현황을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BTL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BTL사업의 성공적인 정착화를 도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 제 II 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 III 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 IV 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 V 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 VI 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 VII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의 BTL방식이 도입되어 일반지침 및 추진단계별 세부요령에 따라 BTL 민간투자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설물의 LCC(Life Cycle Cost)는 기획·설계 및 시공단계에 비해 운영단계의 구성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장기간 운영서비스를 제공받는 BTL사업의 특성상 운영단계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불편한 점이 성과평가 점수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서비스의</p>

	<p>저품질의 제공으로 인한 불편은 모두 시설이용자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급금은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에 나타난 정도의 서비스 품질에 한하여 100% 지급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현황을 선제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며, 필요시 성과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사례조사 및 실적을 수집한다. BTL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에 대한 주무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실적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BTL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BTL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공무원 및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사업유형별(교육시설, 하수관거시설, 군인아파트, 문화시설)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의견청취 등 모니터링하고 개별 주무관청 담당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p> <p>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제도 및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서비스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성과평가 점검 및 평가와 국외의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된 서비스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한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시설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개선안은 BTL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①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②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 ③ 평가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을 위한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④ 최고 배점과 최소 배점을 제외하고 평균하는 방안 등 4가지 방안 ⑤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대폭 확충하여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⑥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성과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안, ⑦ 시공하자가 임대료 지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공하자와 관련하여 정부지급금의 지급을 개선하는 방안, ⑧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또한 시설의 특성에 따른 시설유형별 개선안에서 (a) 교육시설은 성과평가 개선, 성과평가 항목의 정량화, 성과평가 절차 개선, 성과평가 전담 부서 설치, (b) 하수관거시설은 평가항목(II)의 설정 및 평가방안 마련, 시설이용자의 평가기준 마련, 평가항목의 재설정, 시설이용자의 평가기준 마련, 전산화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시설이용 가능성 기준 적용 재정립 및 대책 우선 마련, (c) 군 관사 및 병영시설은 평가항목의 변별력 제고, 세부평가 항목 배점의 객관화, (d) 문화시설은 사업범위 및 평가 배점범위의 명료화,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정량화, 정보불평등의 해소 등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p>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3. ~ 2014. 2.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김정욱, 이호준, 박경애, 김기민, 고유은 - 외부 연구진: Darrin Grimsey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PPP) 선진국인 호주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호주는 project finance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역사가 깊고, 한국보다 선행하여 PPP 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한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측면에서 PPP 개혁을 이룸. -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적용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일관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호주의 PPP 제도 및 최근 개정사항</p> <p>제1절 인프라 사업에 있어 기회와 당면과제</p> <p>제2절 제도 전반: 연혁, 관련주체 중심</p> <p>제3절 PPP 사업평가 및 추진: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자금조달 등</p> <p>제4절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p> <p>제5절 여타 선진국 제도의 영향</p> <p>제 II 장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개괄</p> <p>제1절 개요: 제도의 연혁과 변천과정, 대상시설과 추진절차</p> <p>제2절 사업추진 방식별 적격성조사</p> <p>제3절 분야별 현황 분석</p> <p>제4절 관련기관 소개</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한국은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제도개선과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각종 지침의 개발과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등의 표준화 작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일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현재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조달방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내 민자 시장과 글로벌 금융환경에 따라 민간투자제도 또한 지속적인 진화와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하며, 1994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이 그</p>

	<p>러한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p> <p>본 연구는 민간투자(PPP) 선진국인 호주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시작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와 호주의 사례를 제도, 사업추진현황, 역할분담,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p>
연구 (평가) 방법	<p>국내외 문헌조사,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이 시도되었고, 특히 호주사례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p>
연구내용 및 결론	<p>호주의 PPP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p> <p>첫째, PPP 모형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와 같이 종합서비스 모형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둘째,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불 시기 조정, 신디케이트 보증, 자금조달 확인 유예 등 호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 더불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p> <p>끝으로, 적절한 할인율 설정, 지적재산권 분쟁 해소, 수혜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사업 추진 및 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민과 관이 공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p>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7. ~ 2014. 6.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이상훈, 김혜영, 박경애, 구석모, 이동훈 - 외부 연구진: 김·장 법률사무소(조영균, 선용승, 김건호, 구봉석 변호사) - 외부 자문: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r. Cameron Smith 변호사(Ashurst LLP, 영국로펌), 장경환 회계사(KDB인프라자산운용), 강울리,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으로의 일원화 논리의 문제점 파악, 바람직한 규제방안 제시 -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관련 법 운용 실태(규제차익)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 운용 및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펀드관련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충돌 여부, 감독권 조정 문제 검토 - 자본시장법에 기반한 펀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법리를 소개하여 실무자에게 매뉴얼 기능 - 펀드 중심 투자구조(특히 자금재조달 관련)에 대한 정책대응 시사점 도출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 II 장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요</p> <p>제 III 장 인프라펀드의 이용 현황</p> <p>제 IV 장 인프라펀드 관련 규제 분석</p> <p>제 V 장 해외 인프라펀드 규제 현황</p> <p>제 VI 장 인프라펀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p> <p>제 VII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현재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모두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상 펀드와 자본시장법만이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p> <p>그러나 민간투자법상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지고, 투자자는 펀드 설립시 규제 쇼핑을 통해 규제차익을 누림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T/F 팀 등으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 중심의 규제일원화 내지 규제개선 방향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근 들어</p>

	<p>민간투자사업에서 펀드의 활용도가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비중으로 민간투자법상 펀드보다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사용하는 이유 등을 고찰하여, 펀드 중심으로의 투자구조 변화에 대응한 민간투자법 체계의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상 펀드가 활용됨에 따른 민간투자법 체계와의 충돌가능성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p> <p>이에 본 연구는 먼저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한 펀드 제도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개관한 다음,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인프라펀드 이용현황을 제도변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부록), 투자자 입장(자금조달 과정 등)에서의 펀드활용 이유, 실제 설립·운영되고 있는 펀드의 현황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상 규정들을 펀드 유형별로 일별하여, 규제의 차이점과 이용자 입장에서의 규제차익 등의 실무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금융위 TF의 논의 내용과 자본시장법 중심으로의 규제일원화, 자본시장법 중심의 규제 개선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료 또는 국회입법자료 등 기초 문헌조사를 토대로 인프라펀드의 규제 현황 및 민간투자법상 펀드제도의 변천을 정리하고, 펀드의 투자구조(내부약정 등을 포함)와 인터넷에 공시된 펀드 현황 자료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인프라펀드를 활용하는 이유 및 펀드의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본 후, 당 센터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와 실무 전문가들의 용역연구 및 자문을 통해 실무 경향과 법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자본시장법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면서 펀드관련 규정 및 특례규정의 확인과 각 펀드유형별 규제상의 차이점,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충돌여부 등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영국, 호주, 일본, 필리핀)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자본시장법상 보호목적의 강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의 펀드 구조를 강조할 경우 민간투자법의 법목적, 현행 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규정 해석 및 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p> <p>구체적으로, 펀드의 활용으로 인해 특히 민간투자법상 출자자중심 규제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기초로, 출자자변경승인제도, 자금조달 이익공유제도, 주주차입금제도, 기획재정부의 펀드에 대한 검사·감독권의 제약 등에 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체적인 규정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펀드가 보편적인 출자구조로 자리 잡는 추세를 고려하여, 펀드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 대주주로서의 운영책임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p> <p>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펀드의 등장 및 활용 빈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자금(재)조달 분야의 개선과 맞물려 종합적·입체적인 검토와 관리 및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당한 규제차익을 누리기 위해 펀드가 자본시장법으로의 도피를 위한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기존의 규제체계나 민간투자제도가 무력화되거나 불합리해지지 않도록 인프라펀드의 추세에 대해 면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p> <p>이와 동시에, 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인프라펀드가 유익한 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정책적 노력과 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실무 방향에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바란다.</p>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7. ~ 2014. 7.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박경애, 이상훈, 김선경 - 외부 연구진: 삼우회계법인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사업 제안서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나 검토에 필요한 관련 기준 및 사례가 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 전과 후에 제안된 모든 부대사업의 검토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p>제 II 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 <p>제 III 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p> <p>제 IV 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p> <p>제 V 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p> <p>제 VI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나 부대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례 및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p> <p>본 연구의 목적은 부대사업 제안서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운영단계를 포함하여 부대사업이 다양한 사업 단계에서 제안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p> <p>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와 검토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p>
연구 (평가) 방법	<p>본 연구는 민간투자법령, 다양한 조사지침을 포함한 국·내외 문헌 조사와 민자사업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p>
연구내용 및 결론	<p>부대사업의 문제점은 부대사업에 대한 제한 규정, 짧은 고시 및 공고기간으로 인한 준비기간의 부족 등으로 부대사업의 발굴이 어려우며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실효성이 낮은 인허가 의제 처리, 주무관청의 지원 부</p>

족 등으로 부대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에 대한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부대사업의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대사업 제안 인센티브를 높이고 해지 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설정하여 부대사업 추진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대사업 검토 방법으로 적극적 검토를 선택하였다.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법령 및 규정상에 제시된 요건의 검토로 12가지 항목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부대사업의 수익성 검토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검토한다. 재무안전성 검토는 사업시행자와 그 출자자의 재무건전성 검토, 투자비 조달 가능성 검토, 주무관청의 지원 가능성 검토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대사업의 검토 기준은 제안 단계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정 전에 부대사업이 제안된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대한 검토는 본 사업과 같이 평가 단계 및 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평가 단계에서는 서류에 의존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세부조건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협상 단계에서 부대사업의 세부 조건 조정과 이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익 공유 방식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부대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는 대가는 사업 위험에 비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 추진 시 당면하는 자원조달 위험, 수익 확보 위험, 사업추진 위험 등을 완화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수익률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본 사업의 운영 중에 시행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이익 공유 조항을 모든 부대사업에 확대하는 것이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부대사업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 의제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또한 부대사업은 본 사업과 같이 비용과 수입의 사전 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협약 체결 시점에 부대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의 순이익의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을 먼저 확인한 후 그 이익을 본 사업에 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전입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협상단계에서 부대사업 이익을 본 사업에 사전 공제하기보다는 이익 규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공유 비율을 설정한 후 사후적인 이익 규모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부대사업의 위험을 본 사업과 절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본 사업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본 사업의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대사업과 섞어서는 안 되며 부대사업은 독자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3.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박지혜, 김기민 - 외부 연구진: 박 현(서울시립대), 유정훈(아주대), 이현상((주)이산), 김정희(삼우회계법인)
연구의 목적	- 초기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조항과 기존 재정사업과의 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도입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사후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기존문헌 검토 제 III 장 대상사업 및 주요쟁점 사항 제 IV 장 분석 방법 제 V 장 사업의 주요성과 분석 제 VI 장 비용추정 제 VII 장 교통수요추정 및 경제성분석 제 VIII 장 정량적 VFM 및 사후적 재무성 분석 제 IX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기존 재정사업과의 요금 격차 발생은 사회적 비판의 큰 원인이 되어 왔다. 초기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해 도입하였던 제도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수정·폐지되었으나, 이들 사업은 MRG 조항으로 인해 VFM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도입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사후적 VFM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로 행해진 사업이 생애주기 동안 VFM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운영중이나, 현행 적격성조사제도 등이 도입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초기의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

	<p>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판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과거 협약체결된 교통량이 현재 개통 후 이용되는 교통량 대비 과다하다는 점이므로, 협약체결 교통량이 아닌 개통 후 이용되는 교통량과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적격성을 살펴보되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분석결과 초기 민자사업은 당시의 여건 하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수요의 과다예측과 MRG 조항의 도입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MRG는 VFM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IMF 여파로 인해서 정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고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낙관적인 교통수요 예측은 초기 건설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p> <p>VFM은 재무적 할인율과 국고채 금리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그 특성상 장기에 걸쳐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사회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고 가정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p> <p>한편 PPP 방식과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요금 불균형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자금조달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요금부과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4.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강동석, 박지혜, 최지은 - 외부 연구진: 정건호, 박형권, 이영욱, 김정진, 이민아(공공투자연구소),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강임호(한양대학교 교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금융 환경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에 대한 적정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판단기준을 통해 수익률 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p>제 II 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p> <p>제 III 장 해외사례 분석</p> <p>제 IV 장 BTO 사업의 수익률 모형 구축</p> <p>제 V 장 수익률 모형의 적용 방안</p> <p>제 VI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사업수익률 결정방법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적정”수준의 범주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익률 설정을 위한 기준과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와의 수익률 협상에서 과거 유사사업의 수익률 이외에 별 다른 주장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p> <p>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 환경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에 대한 적정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고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방법을 법과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수익률을 제안하고 협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를 살펴보았다.</p> <p>둘째, 영국, 호주, 인도, 남아공을 대상으로 각국의 민자사업 추진 현황과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의 수익률 수준과 대출 이자율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국에서 수익률이 사업추진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파악하였다.</p>

	<p>셋째,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구축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자기자본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27개 업종에 대한 산업 베타를 산정하였으며, 적정 무위험이자율을 검토하였고, 시장위험프리미엄도 추정하였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본구조 등을 가중평균자본비용 방식에 적용하여 민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을 산정하였다.</p> <p>넷째, 실제 사업수익률 산정 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내외 전문가 면담 조사, 해당국 전문가들의 참여 연구(In-depth Study), 모형 구축 등을 이용하였다. 국내 및 해외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수익률 결정 과정 및 수익률 결정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연구 논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으며, 수익률 결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장위험프리미엄, 베타 등 투입변수를 산정하였고 정합성 검증에 위해 미국 데이터와의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본 연구에서 추정된 시장위험 프리미엄 등의 값은 최대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한 수치이나 계량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익률 수준은 절대적인 값이라기보다는 주무관청 협상안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p> <p>본 연구의 수익률 산정 기준은 정부 입장에서 사업 수익률을 자본비용의 원가 개념에서 추정해 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p>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3.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장준경, 박상준, 김재영, 양인석, 김세환, 최영은 - 외부 연구진: 한양대 김익기 교수, 연세대 정진혁 교수, 중앙대 손기민 교수
연구의 목적	- 새롭게 배포된 국가교통DB는 기존에 배포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였을 때 DB구축 방법론과 구성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쟁점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서론 제 II 장 국가교통DB 구축현황 제 III 장 신규 KTDB의 기초 통계자료 적정성 검토 제 IV 장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방안 제 V 장 종합결론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새롭게 배포된 국가교통DB는 기존에 배포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였을 때 DB구축 방법론과 구성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축·배포된 국가교통DB와 기존 국가교통DB와 총량 지표 및 데이터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평가) 방법	새롭게 배포된 국가교통DB에 대해 기존 국가교통DB와의 비교를 통해 전국권, 수도권, 광역권별로 전수화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방법론하에서 새롭게 배포된 국가교통DB의 권역별(전국권, 수도권, 광역권)별 데이터 구조의 적용 가능성과 기존 수요예측방법론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다.
연구내용 및 결론	신규 배포된 국가교통DB의 경우 기존에 배포된 국가교통DB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론이 함께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DB를 활용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국가교통DB 예비타당성조사 등 실무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검토 결과 신규 배포자료를 활용한 통행배정시 현황 교통량과의 차

이가 크게 검토되었으며, 특히 도로등급별 통행속도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편익이 과다 추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및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장래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수단별 통행량 및 수단분담비율 변화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래 수단별 통행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세부 교통존별 발생 도착량 원단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과 KTDB 센터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른 분석방법론 보완이 필요하다.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교통수요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행발생단계부터 통행배정단계까지 변화된 KTDB의 데이터 구조하에서 분석방법론 및 분석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KTDB센터는 기초 통계자료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중평균통행량(AAWDT)를 연평균일교통량(AADT)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복합수단(버스-지하철) 통행량을 정산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상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망 체계하에서 신규 SOC 사업의 평가를 위해 장래 도로·철도망 계획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 네트워크의 경우 신규 배포된 자료의 수단분담과정을 개별 평가사업에서 연구진이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교통DB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3.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한금융, 최지은, 서승호, 김형석
연구의 목적	- 공공투자관리 업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하여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행실적, 주요 결과 등의 내용은 단편적이며 부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들의 동향분석 보고서, 정책브리프 자료 등을 살펴보고, 공공투자와 관련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로 가공, 제공하고, 주요 동향 및 현안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 취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초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주요 동향분석 사례 조사 제 III 장 주요 공공투자 지표 조사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사업과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또한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관련 자료들을 가공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크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여러 주요기관들의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주요 동향과 통계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취합하여 동향분석 보고서 혹은 정책브리프 형식의 자료를 발간해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들의 동향분석 보고서, 정책브리프 자료 등을 살펴보고, 공공투자와 관련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로 가공, 제공하고, 주요 동향 및 현안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 취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초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평가)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본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주요 동향분석 사례 업무가 있다.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 제공되고 있는 주요 동향 및 전망 분석 사례를 조사하고, 각 자료의 형태 및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둘째, 재정 및 민간투자 지표를 분석하는 업무가 있

	<p>다.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추이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의 추진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셋째, 사회, 경제지표 조사업무가 있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주요 기관들에서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한 동향, 브리프 자료 등을 발간해오고 있으나, 공공투자 추이와 관련한 동향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바, 추후 중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기관의 동향분석 보고서 및 정책브리프 자료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은 주로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전문가 컬럼, 관련 통계자료 및 소식 등이다.</p> <p>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적격성조사 수행실적 등과 같은 자료의 경우 용이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함께 진행된 연차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수록한 바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연차보고서에 수록되고 있는 재정 및 민간투자 관련 업무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대외적 확산 및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p> <p>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예타 이후의 사업추진현황, 시설유형별, 지역별 투자추이, SOC 스투추이 등과 같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지표들을 발굴하여 이를 가공하고,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p>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7. ~ 2014. 8.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이상훈, 고유은, 유진석
연구의 목적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2014년 개정사항을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반영하고, 그간 세부요령의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은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세부요령의 개정안(2014년 10월 공표)을 제시하기 위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서설 제 II 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제 III 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 IV 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 V 장 변경협약의 체결 제 VI 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연구의 배경 및 범위	과거 기본계획과 세부요령은 그 내용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된 바 있다. 요령의 개정 작업을 통해 기본계획과의 불일치 제거를 추구하였고 기본계획에서 요구한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연구 (평가) 방법	본 연구는 종전 요령의 구조와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사례를 조사하여 세부요령의 적용방법과 그 내용의 함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그간 자금재조달 사전검토를 통해 도출된 쟁점, 업계에서 제기한 쟁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진간 회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회의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금융 및 재무전문가와 회의, 외부 법률전문가의 최종 검토 등을 거쳤다. 우선 기본계획의 개정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세부요령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수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재무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다수의 자금재조달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완성하였다. 개정된 기본계획과 세부요령에 대하여는 SOC 포럼과 건설협회, 회계사

	<p>들의 자문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일부 의견은 개정 작업에 반영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세부요령 개정을 통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이를 반영한 문구의 명확화를 도모하였다. 다만 실질적 내용의 변경은 최소화하였고 가능한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관한 2014 기본계획 제27조~제3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p> <p>본 연구에서는 세부요령 개정안에 기초하여 개정안 구성 내용의 작성 배경과 그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 <p>첫째, 세부요령의 법적 근거, 기능, 적용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을 1단계인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또는 체결 전 (financing)과 2단계인 최초 금융약정 이후 단계(refinancing)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p> <p>둘째,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 및 공유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하였고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 시점 및 사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p> <p>셋째,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내용을 변경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약정 또는 금융약정의 조건이 변경실시협약과 현저히 다른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을 다시 산정하여 변경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자금재조달 이익 재산정 내용을 포함하였다.</p> <p>넷째, 자금재조달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내용을 제시하였다.</p> <p>다섯째,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을 수록하였다.</p>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4. ~ 2014. 4.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이종연, 정민용, 조민혜 - 외부 연구진: 경일대학교 김두일 교수,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 추진 시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국가 위험과 사업위험의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 II 장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이론적 고찰</p> <p>제 III 장 공공기관 해외발전사업 사례조사</p> <p>제 IV 장 공공기관 해외발전사업 위험요인 도출</p> <p>제 V 장 공공기관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평가체계</p> <p>제 VI 장 해외사업(발전)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방안</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는 해외사업의 평가는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구분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적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p> <p>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해외사업의 위험도를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국가 위험과 사업 자체가 가지는 정성적 위험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p> <p>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p>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며 해외사업(발전) 추진단계별 위험요인을 규명한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에 수행한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인 평가방법론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내·외부 연구진에 해외 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해외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험평가 적용 가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해외 및 국내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Pool을 도출한다. 둘째, 전문가 Workshop을 개최하여 Brainstorming을 통한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전문가 Brainstorming을 통하여 선별된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중요도를 평가한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위험요인별 중요도 평가결과, 상위 10개 주요 위험요인을 뽑아볼 수 있는데, 국가위협에서 해당 국가 법률/규제/정책의 공정성이 가장 높은 4.462를 나타냈으며, 타인자본 공여기관의 신용도 및 외부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4.431), 계약협상, 해지, 변경 절차의 적절성(4.415), 운영수입 보장 규정 여부 및 보장 수준의 적정성(4.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10개 주요 위험요인은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위험도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전체 6개 대분류 그룹 38개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6개 대분류 그룹에 대한 AHP에 의한 중요도 산출결과(W_{ci})는 합계 1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되는 값이며, SMART에 의한 개별 위험요인별 중요도 평가결과(S_j)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SMART에 의한 개별 위험요인별 가중치를 1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배분해주고, 이를 그룹별 중요도 값과 곱하고 전체 38개 요인의 중요도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해주면 요인별 중요도 값(NW_j)을 산출할 수 있다.</p> <p>대분류 그룹별 AHP결과와 그룹 내의 SMART결과를 합산하여 산출된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분류 그룹에 대한 중요도 배분에서 국가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0.3596)을 가지기 때문에 요인별 중요도도 국가위협에 속한 위험요인들이 높게 형성되었다. 대분류 그룹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 참여자 위험, 계약위험, 재무위험 군에 속한 위험요인들의 중요도 순위가 차례차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EPC위험과 운영위험에 속한 위험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위험에 속한 9개 위험요인에 상위 9개 요인을 차지하였으며, 중요도 범위도 0.0436~0.0540의 높은 범위에서 형성되었다.</p> <p>현행 예비타당성조사 AHP평점 체계에서 사업 위험도 평가 부분은 1에서 9점까지의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통해 산정한 각 사업별 위험도 수준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배점 방식으로 변환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변환척도는 사업의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통해 위험도 수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위험도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초기단계이므로 누적된 데이터가 없어 이러한 방식의 변환척도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Proto-type) 변환척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하며,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보정해 가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p>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8. ~ 2014. 5.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김탁경,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유진에너지컨설팅 이중용 대표, 정봉진 상무, 이현주 과장, 김윤호 대리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을 따르되,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총 투자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세부요령을 마련하고, 한전 및 발전자회사, EPC업체들이 수행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과 국내외 금융기관, 보증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취급한 국내외 사업들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연구개요 제 II 장 기초자료 검토 제 III 장 해외사업 비용산정 방안 제 IV 장 해외사업 비용산정의 적용 제 V 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결론	내용 수정 및 보완 중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8. ~ 2014. 4.
연구진	- KDI 연구진: 한성민, 변혜리 - 외부 연구진: 성균관대학교 김영한 교수
연구의 목적	-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가위험에 대하여 재무적 할인율에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완화에 대한 고려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대비(hedging)할 수 있다면, 재무적 할인율에 포함된 해당 위험 감소분을 측정하여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가능할 경우 재무적 할인율 산정을 위해 해외 사업 위험에 대한 정량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안)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해외투자보험 개황 및 보험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 제 III 장 해외투자보험 관련 이론적 고찰 제 IV 장 결론
연구내용 및 결론	내용 수정 및 보완 중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기간	2014. 4. 11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 B홀
참석대상	-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등 (121명)
목적	-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주요현안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소개 및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 국장급의 이해도 제고 - 공공투자사업 관련 경험 공유의 場을 마련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
내용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동향 소개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설명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동향 소개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자체 감사 사례에 대해 설명 -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 발표
프로그램	<오전>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동향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오후>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 민자사업 사례 발표(제3경인고속도로) - 지자체 민자사업 감사 관련 - 제도전반 및 사업추진 효율화 방안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기간	2014. 5. 30
장소	- The-K 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크리스탈볼룸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기업 담당자 - 참석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담당자: 142명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73명, 금융기관 36명, 기타 33명) ·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 176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의 주요현안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여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을 통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실무담당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Private), 공공부문(Public)과의 협력관계(Partnership)로 이루어지므로 이들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민자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설명 -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 설명 후 토의 및 질의답변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을 소개 · 수요분석 방법, 자금조달 방법, IRR 산정방법, BTL 사업의 α, β 결정방법, 기업 내 절차, 컨소시엄 구성방법, 주무관청 협의방법 등을 소개 - 민간투자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로 바라는 점에 대해 발제 및 토의
프로그램	<p><오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제도 소개 및 정책방향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의 동향 <p><오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민간투자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이 주무관청에게 바라는 점 · 주무관청이 민간부문에게 바라는 점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기간	2014. 10. 6 ~ 10.8
장소	- 롯데부여리조트 (충남 부여 소재)
참석대상	- 민간투자사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123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현황·제도 등에 대한 기초 교육과 함께 각 추진단계별 심화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능력 제고 - 민간투자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무·회계의 집중화된 교육과 현업 종사자의 실무 운영 사례를 통한 실무업무 능력 증진 - 공통교육, 분반교육(BTO사업, BTL사업) 및 토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습득 기회 제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제도 현황 및 제도 소개 - 경제성 분석(B/C)과 AHP 분석 방법 설명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설명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지침),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설명 - 민간투자사업 사례, 협상의 주요 이슈, 분쟁 사례 소개 - 재무모델의 이해 및 실습 - 민간투자사업 주요 재무 이슈 발표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약정의 이해 발표 - SOC 유동화 설명
프로그램	<p><1일차: 공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제도와 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경제성 분석(B/C)과 AHP 분석 방법 -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개요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 민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p><2일차: 분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지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 이슈 - 민간투자사업 사례 - 민간투자사업의 분쟁 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분반토의 및 분반토의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이슈· 운영상의 쟁점 <p><3일차: 분반 및 공통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O 및 BTL사업 재무모델의 이해와 실습- 민간투자사업 주요 재무 이슈- 민간투자사업 주요 재무 이슈 발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약정의 이해- SOC 유동화의 이해
--	--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기간	2014. 11. 4 ~ 11.5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방문규, KDI 원장 김준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강석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강수 등 주요인사 및 발표자 53명 -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민간투자사업자 관계자 등 세미나 참석자 (334명, 2일 누적)
목적	-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과를 돌아보고,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간투자사업 20년의 회고와 전망 발표 -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으로의 민간투자사업 발표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토론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발표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논의 -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
프로그램	<p><개회사 및 환영사> <축사> <기조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간투자사업 20년의 회고와 전망 -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으로의 민간투자사업 - 토론 및 질의응답 <p><세션1: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 민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도로사업 중심) -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p><세션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 날릴뻔한 5조4천억, 재구조화로 잡다! - 부산신항만개발 1단계 사업 -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p><세션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p><세션4: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 제안- 공익과 상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p><종합 및 마무리></p>
--	---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기간	2014. 6. 3. ~ 2014. 6. 5.
장소	- 페루 리마
참석대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 중남미 국가 경제부처 장관 및 담당자 - 국제기구(IDB, IMF, OECD, World Bank 등) 및 PPP Unit(IUK, Partnerships BC 등)
목적	- IDB로부터 환영사 및 주요세션에 대한 발표자로서 참석 - 각 국의 민간투자제도와 사례 및 주요 이슈논의
내용	- 국가재정관리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각국의 민간투자사업 재정위험관리 방안 논의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경험 공유
기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IDB와 협의하여 본 컨퍼런스의 주요 아젠다 기획
프로그램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Pa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et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Fiscal sustainability and PPPs - Session 1: Planning and Budgetting for PPPs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nection between PPP programs and public investment - Session 2: Planning and Budgetting for PPPs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tegration of PPPs into the budgetary process - Session 3: Oversight of the fiscal implications of PPPs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use of PPPs and budget rigidity - Session 4: Oversight of the fiscal implications of PPPs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treat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associated with PPPs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1: Accounting for PPPs / Funding future growth - Session 2: The transparency, control, and auditing for PPPs / The bankability and solvency of bidders - Session 3: Renegot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 Project preparation facilities - Session 4: The governance and challenges of the implementation of PPPs at the sub-national level / The use of PPPs in new sectors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기간	2014. 11. 27. ~ 2014. 11. 28.
장소	- OECD Conference Centre, CC16
참석대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 이종연 부연구위원, 한성민 부연구위원 - (외부) Frank Littwin(EPEC-Networke), Joseph Lowe(HM Treasury), Michael Lionais(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목적	- OECD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해외 예비타당성조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함. · 국제기구와의 공동 세미나, 워크샵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연구 성과 홍보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성과 및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공공투자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투자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성과 및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개선방안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조정을 통한 개선 방안 - 해외 사례와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점 도출
프로그램	<오전> - Session 1: Main Survey Results ·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PIM in Korea - Session 2: Case studies · A new approach to creat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 · Cost benefit analysi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context · Cost-benefit-analysis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of investments <오후> - Session 3: Case Studies continued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alysis through simulation · The challenge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using Green Book Better Business Cases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간	2014. 10. 30. ~ 2014. 10. 31.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참석대상	- 국제기구(IMF, WB, OECD), 해외 11개국 재정정책담당자(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캄보디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학계(듀크대, 도쿄대), 이탈리아 중앙은행 등에서 해외참석자 약 40여명 및 국내 학계(연세대, 중앙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 국내 참석자 150여명 등 총 200여명 참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개혁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함. - 국제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투자관리의 개혁 이니셔티브의 주요 이슈와 도전과제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의 공유를 목표로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를 전파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함. - 대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범 사례로 정립 - 대내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방법론 개선 방안 도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준경 원장(대독: 김동석 부원장)은 예산제약아래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제조사 제도도입과 같은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함. -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 및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개혁사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첫째 날은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의 연관성 및 유럽, 일본, 필리핀, 남아공 등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사례를 검토하였음. - 둘째 날은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관련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함.

<p>프로그램</p>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1: Why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Mat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Investment Trends and Fiscal Policy · Public Investment Indicator Framework for Capital Spending ·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 the Asian Region: Longer Term Prospects and Public Investment Needs - Session 2: PIM Policy and Reform: Korean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n PIM Policy in Fifteen Years · Strong Project Appraisal Schem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FS)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its Contributions to the Public Inquiry Process · Quantitative Performances of PFSs · Macroeconomic Effect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 Session 3: PIM Policy and Reform: International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s: An Overview and an Agenda · Current Issues in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in Europe and Italy · Role of Public Investment in Japan's Fiscal Policy · Budget Reform and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 Recent PIM Policy and Reform in South Africa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4-1: Selected Key PIM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ward More Efficient Public Investment · PIM and the Linkages to Fiscal Risks and Transparency - Session 4-2: Selected Key PIM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ing Project Selection for Capital Budgeting · Appraisal of Public Investment in Practice -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Decision Rules in Advanced Systems · Measur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Procurement - Session 4-3: Selected Key PIM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ag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Monitoring Capital Budget Execution: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 Session 5: The Way Forward in Korean P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ture of Korean PIM: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Schemes · Future of PFS - Concluding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Way Forward in PIM · Round Table Discussions
-------------	--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기간	2014. 12. 9 ~ 2015. 12. 10
장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대상	- 국제기구(OECD, WB, ADB, IDB, UNESCAP, GGGI), 해외 각국 PPP 정책 담당자(영국, 중국, 캐나다, 독일,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학계(조지메이슨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해외참석자 약 40여명 및 국내(건설기업, 연구소 등) 참석자 80여명 등 총 120여명 참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간투자사업 2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 성과, 과오를 돌아보고, 민간투자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 - 민자사업 조달에 관한 국제적 이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투자 거버넌스 구축 - 개도국의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국제협력 방안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및 관리”를 주제로 한 본 행사에 김준경 KDI 원장 개회,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환영인사함으로 개최식을 진행함. - 기조연설 주제는 “인프라 자금조달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도구로서의 PPP”로, WB의 로렌스 카터 PPP 그룹 본부장, ADB의 류이치 카가 PPP 국장, OECD의 루이즈 데 멜로 부국장이 연설함. - 첫날 제1세션은 클라이브 해리스 WB PPP 부장을 좌장으로 지속가능한 PPP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논의함. - 한국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 심의관,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조나단 기포드 교수, 인도의 샤밀라 샤발리 PPP 담당관(영상회의로 진행), 캐나다의 존 맥브라이드 PPP센터 소장, 독일의 베른하르트 물러前 재무부 PPP 정책과장, 중국의 핑 푸 기획재정부 과장이 각국 PPP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함. - UNESCAP의 메튜 베로그스트레테 경제담당관이 PPP 제도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에 대해 발표함. - 둘째 날 제2세션은 PPP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류이치 카가 ADB PPP 국장이 좌장을 맡음. - 이호준 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이 한국 지방자치단체 PPP 재정이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제임스 발링걸 영국 인프라스트럭처유케이 국장이 PPP 사업평가 개선을 위한 영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함.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후 적격성조사의 결론 및 함의에 대해 발표함. - 발표내용에 관해 좌장 및 WB 루이 몬테이로와 PPP 캐나다의 존

	<p>맥브라이드가 지정토론을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날 제3세션은 지속가능한 PPP의 운영관리를 주제로 하였으며, 좌장은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맡음. · 영국의 제임스 발링걸 국장이 PPP의 자금재조달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조나단 기포드 교수는 미국 교통 PPP 사업의 분쟁조정 및 재협상에 관해 발표함. · 발표내용에 관해 좌장 및 OECD 안상훈, ADB 트레버 루이스, IADB 헤라르도 라이에스타글레, GGGI 이승연이 지정토론을 진행함. - 둘째 날 제4세션의 좌장은 박현 교수로, PPP 실행의 도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극복방안을 아시아국가 PPP 정책담당자들과 KDI 및 국제기구 담당자들의 주제로의로 진행함. · 김정욱 KDI 분석평가실장, 루이 몬테이로 WB 선임 PPP 전문관, 트레버 루이스 ADB 선임 PPP 전문관, 헤라르도 라이에스타글레 IADB 선임 재정경제관 · 압둘 바샤르 방글라데시 총리실 산하 PPP 오피스 담당관, 트롱 쎌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부국장, 와하유 우토모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보, 신디아 로즐리 인도네시아 인프라 보증기금 CEO, 갈림벵 맘라예프 카자흐스탄 PPP 센터 부소장, 아호멧 후스니 빈 후세인 말레이시아 총리실 PPP 국장, 크리스틴 발라스코 안토니오 필리핀 PPP 센터 실장
<p>프로그램</p>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Ceremony: PPP as a Sustainable Policy Tool for Infrastructure Funding - Session 1: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s for Sustainable PPP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2: Better Value-for-Money and Better Fiscal Management for Sustainable PPP - Session 3: Sustainable Ex-post Management of PPPs - Session 4: Towards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Governanc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 Roundtable Discussion Part 1: Challenges in PPP Implementation and Suggestions for Viable International Cooperation · Roundtable Discussion Part 2: Initiatives for Global Cooperation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기간	2014. 11. 1. ~2014. 11. 6.
장소	- 카자흐스탄 행정 아카데미
참석대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과섭 전문위원, 이원석 전문위원, 유진석 전문 연구원 - 카자흐스탄 민자사업 관련 중앙 및 지방 공무원 50여명
목적	-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위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정책 교육 및 세미나
내용	- 카자흐스탄 PPP 센터는 그간 해외 민자 세미나 등으로 구축한 PIMAC과의 교류를 통해 PIMAC의 민간투자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한국 민자제도 전수를 통해 자국의 PPP 및 Concession 사업 제도 및 평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자 PIMAC에 한국 민자제도 교육을 요청하였음. - 본 교육은 카자흐스탄 공무원 연수기관인 대통령 직속 행정아카데미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의 교육의뢰 및 초청으로 진행되었음.
프로그램	<Day 1> - Session 1: Introduction of PIMAC - Session 2: Overview of Legal Framework of Korean PPP - Session 3: Institutional Framework of PPP in Korea - Session 4: Value for Money Test in Korea - Session 5: PPP Project Finance - Session 6: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Day 2> - Session 7-1: Risk Allocation in PPP Law and Basic Plan - Session 7-2: Risk Allocation in RFP and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 Session 8: Process of PPP Project Implementation - Session 9: RFP Preparation - Session 10: Project Proposal Evaluation - Session 11: Negotiations in PPP Project - Session 12: PPP Example (Guri-Pochoen Road PPP Project)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기간	2014. 2. 16.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이종연 부연구위원, 한성민 부연구위원,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 (예멘) AMIN ABDULGABAR AL-MOHAMMADI 예산국장 외 재무부, 기획국제협력부 공무원 등 14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 대표단은 재정운영 및 관리제도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자국 재정운영 체도를 개선하고자 재무부 국장급을 대상으로 한 한국 study visit을 계획하여 한국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함. · 이에 기획재정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투자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금번 한국 방문을 통해 예멘 정부는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제도 및 정책, 운영 및 사업관리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 한국의 재정관리제도 개괄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소개 -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소개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현황 논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1: Introduction of PIMAC - Session 2: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in Korea - Session 3: In-Depth Evaluation of Budgetary Programs (IEBP) in Korea - Session 4: Korean PPP System and KDI-PIMAC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기간	2014. 11. 18.
장소	- KDI 301 세미나실
참석대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이경희 전문연구원, 김수정 전문연구원 - (중국) 중국 재무부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China PPP Center, MOF) 등 7명
목적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 한국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의 공공투자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
내용	- 한국의 공공투자 및 민자사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민자제도 및 사업추진 전략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특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및 민간투자사업 수행에 있어 정부의 전반적인 역할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음.
기타	- 향후 양기관의 협력을 위해 China PPP Center와의 MoU 체결 예정
프로그램	- Session 1: Funding Infrastructure through PPP - Session 2: Pre-feasibility Study and VfM in PPP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2010.
-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2.
-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11
-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3.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2012.11.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2.
-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백서』, 2012.
- 한국개발연구원,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 한국개발연구원, 『20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4.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1999.
-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KDI PIMAC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